

연구보고서 2015-05

##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책임자 :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발간사

최근 해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은 전국적으로 여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성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동시에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11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본 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여성들은 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서비스 기관이나 여성폭력 관련법·제도를 잘 모르거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의 필요성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여성폭력 발생 시 위기대응 체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가해자 교정·치료, 예방교육에 이르기까지 여성폭력 대응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방안을 포함한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연구자분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폭력 피해자분들을 지원해주시는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여러분들의 조언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피해자 여러분의 용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현황 파악을 위해 기꺼이 관련 자료를 챙겨주시고 연구에 협조해 주신 제주지방경찰청, 법원, 검찰청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과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외부의 연구평가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여성 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 10.

**현혜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폭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기대응, 피해자지원 및 보호, 가해자 교정·치료에 이르기까지 폭력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 여성폭력 위기 대응 시스템에 관한 현황 파악 및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점검을 통하여 피해자 연계 및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방안을 모색함
- 제주도내 여성폭력 지원기관과 보호시설의 피해자 지원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 여성폭력 가해자 사법처리 및 교정·치료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
-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을 비롯하여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함
-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기대응, 피해자지원 및 보호, 가해자 교정·치료, 예방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력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3. 연구절차 및 연구방법

#### 가. 연구절차

- 본 연구는 2월에서 10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연구진행과정은 아래 표와 같음

## 연구수행 절차

2월	· 착수보고	⇒	· 착수보고 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세부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등
3월	· 타당성· 적절성 검토	⇒	· TF팀 회의 · 문헌고찰 및 현황자료 수집 · 분석
4월	· 연구방향설정	⇒	· 1차 자문회의 · 공무원 면담
5월	· 설문지 개발 및 현황자료 수집	⇒	· 여성인권연대 · 시설협의회 간담회 개최 · 기관방문을 통한 현황자료 수집 · 예방교육 현황자료 수집
6월	·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	⇒	· 예방교육 현황자료 수집 · 통합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 현장방문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7월	·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 · 중간보고	⇒	· 예방교육 인식조사 설문지 개발 · 통합시스템 욕구조사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예방교육 인식조사 : 설문조사
8월	· 전문가 간담회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집필	⇒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 분석 · 보고서 집필 ·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9월	· 연구결과 분석 및 의견수렴	⇒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집필 · 2차 자문회의 개최
10월	· 보고서 완성	⇒	·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보고서 평가 및 수정 · 최종보고서 제출

### 나. 연구방법

- 관련자료 분석 및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조사
- 설문조사

- 통합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 설문지 233부 회수 (피해자 79(성폭30, 가폭49), 종사자 85, 경찰49, 행위자 20), 223부 분석
- 예방교육 인식조사 : 총 377명 조사 (초등생 61, 중학생 42, 고등학생 49, 교직원 85, 공무원 140)
- 심층면접
  - 폭력 기관 종사자, 피해자, 관련기관 담당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현황

### 1. 여성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호)
- 가정 구성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2호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
-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함'
- 성폭력의 개념정의와 제도적 개선방향은 피해자(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2. 여성정책 동향

- 중앙정부의 여성폭력 관련정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성폭력·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미약한 점을 이유로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지원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여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방안으로 폭력관련시설 운영 지원과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3.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현황

#### 가. 여성폭력 대응시스템의 정의

- 여성폭력 대응시스템은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인 예방(교육 및 홍보), 보호(피해자 지원), 집행(가해자 교정 · 치료)의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됨.
- 여성가족부 정책의 세가지 영역에 폭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여성폭력 위기대응을 한 부분으로 떼어내어 위기대응,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교정 · 치료, 예방교육의 4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음

#### 나. 위기대응 체계

- 여성폭력에 관한 위기개입은 폭력 피해자의 현재 지원과 대처기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원조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이인숙. 2004)
- 여성폭력 관련 위기대응은 경찰의 초기대응을 포함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성폭력 통합지원센터(원스톱,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 피해자 지원체계

-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인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원스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상담소, 보호시설의 사업추진 및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등의 시설이 있음

#### 라. 가해자 교정·치료 체계

- 여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행위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를 위하여 2006년부터 가정폭력 상담소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집행지침을 시달하 고 시·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실시 이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종합결산을 시행함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의 사업추진체계는 가정폭력과 동일하나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법무부 및 교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함

#### 마. 예방교육 체계

- 2008년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함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규정은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음
- 2012년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실 적 제출이 의무화 됨. 2015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가정폭력·성매 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
- 2014년부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이 연 2,500회에서 3,500회로 확대 실시됨

## 제3장 제주지역 여성폭력 현황 및 대응 시스템

### 1. 여성폭력 현황

#### 가. 제주지역 성폭력 현황

- 제주지역 성폭력 발생현황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 증가세가 약간 주춤했으나 여전히 발생건수가 높음. 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제주지역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자료에 의하면 20세 미만(15.2%)과 30세 미만(36.4%)이 절반 이상(51.6%)을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주로 젊은 여성임을 알 수 있음
- 제주지역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보면 2014년, 2015년 현재 기소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제주지역 가정폭력 현황

- 제주지역의 가정폭력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함. 특히 2015년은 상반기에(5월현재) 이미 269건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증가가 예상됨. 전국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2015년 기준, 전국 1.8%, 제주 2.1%)
- 가정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내학대가 대부분(2015년 기준, 77.3%)이고 기타 (7.4%)와 노인학대(6.3%), 자녀학대(3.7%) 순으로 나타남
- 2015년을 기준으로 제주지역 가정폭력 사건의 처분현황은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44.2%, 불기소가 41.7%, 기소율이 11.3%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국과 비교해 볼 때 기소율과 가정보호 사건 송치율이 약간 높아 가해자 처벌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가정보호사건 송치에 대한 증가율은 전국수치(7.8%)와 비슷하나, 기소율은 전년도 대비 10% 가량 감소했고, 기소유예 처분이 4.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 위기대응 관련 현황

### 가. 경찰의 위기대응 관련업무 현황

-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는 첫째, 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내용을 고지하고 둘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계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받도록 안내하며 셋째, 신체적 혹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음
-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확인한 건수가 2014년 1,613건으로 가장 많고 상담소나 보호시설 연계 건수가 259건, 의료기관 인도 건수가 126건으로 조사됨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연계는 주로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상담소와의 연계건수가 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신청 집행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3. 피해자 지원 현황

###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범죄피해자보호센터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제주시청 내부자료 2015)
  - 의료지원(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대상, 2014년 39명 지원 (서귀포시 20명, 제주시 19명))
  - 생계비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소득·재산 등 기준초과로 보장시설 수급 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자 대상, 1인당 월 226,260원 지원, 2014년 45명 지원)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심리정서지원, 수사법률지원, 의료, 시설연계, 기타)
  - 자립지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500만원 지급 2014년, 45명 지원)

## 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제주시청, 서귀포 시청 내부자료 2015)
  - 의료지원(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104명 지원)
  - 생계비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소득·재산 등 기준초과로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자 대상, 1인당 월 226,260원 지원, 2014년 48명 지원)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심리정서 지원, 수사법률지원, 의료, 시설연계, 기타)
  - 피해자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원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에게 그룹홈 형태로 저가에 임대
  - 자립지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350만원 지급 2014년, 4개소 8세대 지급, 총 7명에게 직업훈련비 지급)
-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 강화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솔루션 팀 운영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4. 가해자 교정치료 현황

- ###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관련 자체 지원 (제주시청 내부자료 2015)
-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처분자,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기타 상담소의 경찰 등 유관기관 의뢰, 상담과정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
  - 내용 :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 정신과 치료 등
  - 참여인원 (2014) : 상담소 3개소 150명

## 5. 예방교육 현황

- 제주지역 폭력 예방교육 현황
  -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 기관은 총 816 기관으로 국가기관이 86개 기관, 각급 학교 192, 어린이집이 538개 기관이고 모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였음 (여성가족부 2013)
- 제주지역 폭력 예방교육 유형별 연간 평균실시 횟수는 전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1.93회, 성매매 예방교육 1.53회, 성폭력 예방교육 2.41회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가장 적게 실시(1.59회) 하였고 각급 학교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가장 적게(1.45회) 실시했음
- 교육방법은 전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 58.6%로 가장 많았고 시청각교육 (33.2%), 사이버 교육(5.0%)은 극히 낮은 비율을 나타냄

## 제4장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1.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 가.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 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집단인 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폭력행위자 등 4개 집단 총 216명으로 구성하였음
- 응답자의 유형은 폭력피해자 70명(32.4%), 기관종사자 84명(38.9%), 경찰 44명 (20.4%), 폭력행위자 18명(8.3%)순으로 나타남

#### 나. 조사내용

##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영역과 내용

대상	영역	세부영역
공통	위기대응 및 기관연계방안	폭력발생시 초기대응, 연계활성화 방안
	피해자지원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피해자 지원 수요, 치료회복방안
	정책	폭력대응방안, 안전을 위한 방안, 예방 정책 등
기관종사자	기관서비스내용 및 연계현황	타 기관과의 연계현황, 연계방법 및 기관, 피해자 연계시 어려움 등
피해자	경찰조사경험	경찰신고주체, 시기, 경찰조치내용
		사건처리여부, 수사과정경험, 수사결과, 경찰조치 만족여부 등
	공공서비스 경험	지원내용, 서비스만족도, 연계 경험, 연계서비스 내용, 서비스 만족도
경찰	업무현황	담당사건 건수, 유형, 체포건수
	여성폭력 인식 및 사건처리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인식
		현장 출동시 어려움, 응급조치·임시조치 인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여부 등
	연계 및 협력	지역내 협력기관 인지, 피해자 연계정도, 연계시 어려움, 효율적 조사방법 등

### 다. 위기대응

- 성·가정폭력 발생 시 필요한 초기 대응
  - 성·가정 폭력 발생시 필요한 초기대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응급조치 강화 (39.1%), 경찰의 신속한 출동 (20.9%), 경찰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수사 착수 (20.0%) 순으로 나타남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80% 이상(86.0%)이 까다롭거나 부담스럽게 인식(88.4%)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81.4%)하다는 의견임
-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44.2%) 나타나 담당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의 인식개선이 필요함
-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까다롭다'(71.4%), '부담스럽다'(64.2%)라고 인식하며, 가정폭력 사건보다 성폭력 사건을 더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50%),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59.5%)는 의견이 절반정도로 나타나는가 하면 부부폭력 사건은 가정내 해결이 우선이다(54.7%)라는 의견도 보이고 있어 초기대응에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할 우려가 있음

○ 경찰이 타기관과의 여성폭력 업무 연계가 어려운 이유

- 음주 및 정신이상자의 경우 보낼 곳이 없어서(44.2%), 한밤중에 연계할 곳이 없는 경우(30.2%)로 나타나 초기대응에서 피해자의 연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피해자가 공공서비스 시설에서 도움 받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긴급보호나 보호시설 안내(22.3%)로 가장 많고, 경찰에 연결(20.7%), 전문상담기관 연결(18.1%) 순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1366센터에서는 긴급보호나 보호시설 안내(31.3%)가 가장 많고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경찰에 연결(34.6%),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는 긴급보호나 시설안내(23.2%)가 많았음
-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면상담(84.1%), 심리치료(76.6%)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그밖에 전화상담(52.2%), 의료서비스(51.3%), 법률상담연계(48.8%), 집단상담(46.2%) 및 가족상담(43.2%) 순으로 나타남. 이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나 해바라기센터 이용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으로 추측됨
-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분야는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13.3%)과 가족면담 및 상담(13.3%) 부분, 그리고 온라인 상담(12.5%)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의 외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만족도
  - 기관 종사자의 피해자 지원 업무의 외부기관과의 연계 관련 만족도는 보호시설(93.9%)과 상담소(92.7%)와의 연계업무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반면 해바라기센터(67.6%)와의 연계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행정기관 담당자(79.3%), 전담의료기관(81.5%) 순으로 나타남

### ○ 외부기관과의 연계에서 겪는 어려움

- 연계를 위한 소속기관의 인력(67.1%)과 예산(61.7%)부족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해 줄 조정체계 부족(42.0%), 피해여성을 위한 연계기관 부족(39.7%), 체계적인 협력방법이 부족(39.5%)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반면, 법적으로 연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거나(1.2%), 소속기관의 의지 및 노력이 부족(11.0%), 연계기관이 여성폭력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13.6%)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음

## 마. 정책욕구

###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것은 전체적으로는 여성폭력에 관한 경찰의 대응강화(23.6%), 여성폭력통합 상담기관의 확대 설치(18.9%), 피해자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강화(18.0%)순으로 나타남

### ○ 여성폭력 지원체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개선 사항

- 여성폭력 지원체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의료·수사·법률 분야 종사자들의 여성폭력 이해증진(37.7%), 여성폭력 등 상담소 및 쉼터의 연계 활성화(25.1%),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증진(19.5%)순으로 나타남

### ○ 여성폭력 위험도, 폭력의 효과적 대응 및 폭력예방 방안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관련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조사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가정폭력(90.9%)이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83.8%), 성매매(79.7%) 순으로 나타나 관련업무 종사자 및 피해자들이 여성폭력이 위험도가 높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음
- 여성폭력의 효과적 대응방안으로는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팀 마련과 운영의 활성화(19.0%), 성·가정폭력 전담경찰체계 마련과 효율적 운영(18.1%), 가해자 처벌 및 상담 의무화(15.7%) 순으로 나타남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예방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26.1%), 지역사회 위험요소 파악 및 시설보완(22.2%), 다양한 통로의 주민 참여

및 유대 강화(11.6%)의 순으로 나타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남

## 2. 예방교육 인식조사 결과

### 가. 조사 개요

- 예방교육 인식조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즉석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설문지는 모두 377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7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음
- 집단별로는 초등학생 61명(16.4%), 중·고등학생 91명(24.4%), 공무원 및 교직원 221명(59.2%)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연령별로는 10대가 가장 많은 40.8%를 차지하였고 40대(22.5%), 30대(18.8%), 50대(8.6%) 순으로 나타남
  -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예방교육 인식조사 영역과 내용

영역	세부영역
교육경험	폭력예방교육 경험(횟수 및 방식)
교육내용	폭력예방교육 내용(이해도, 인식변화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
강의구성	폭력예방교육 강의 방식 및 규모의 적절성 여부
인식변화	폭력예방교육 이후 상황별 가치 판단과 행동의향

### 나 예방교육 인식조사 결과

- 조사 대상자의 연간 폭력예방교육 실시횟수는 평균 2.4회이고 중·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횟수 2.82회로 조사됨
- 이는 201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 예방교육 실시횟수가 대부분 2.0회를 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예방교육 방식은 가정폭력을 제외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함께 수강하는 경우(42.3%)가 가장 많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만 수강(22.5%)하거나 통합방식으로 수강(20.2%)하는 경우가 많았음
- 네가지 유형의 예방교육을 각각 따로 수강한다(14.0%)는 비율은 적었음
-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과 공무원 및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3.9를 넘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는 의견을 보임
- 폭력예방교육이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4.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어 예방교육이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교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21.1%), 폭력의 유형 및 실태(18.7%), 인식변화(14.8%)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폭력과 소통관계(4.3%), 폭력관련법(4.6%),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6.1%)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 제5장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 1. 조사개요

- 심층면접은 여성폭력 피해자 11명 및 관련기관 종사자 17명으로 구성함
-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은 피해경험 이후 경찰신고 및 상담소나 보호시설 이용경험과 관련된 의견으로 구성됨
- 심층면접에는 경찰(여성청소년과의 담당직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사법기관인 보호관찰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담당자 등이 참여하였음.

## 2 주요 결과

### 가. 위기대응

-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
  - 피해자의 의견으로 경찰에 신고 했을 때, 부부싸움으로 인식하여 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피해사실이 접수가 되어 조사를 할 때도 경찰의 태도에 불편함이 있었음을 호소하기도 함. 특히 진술서 작성 시 경찰의 태도가 고압적이어서 거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었음
- 피해자 보호 및 연계 과정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음
- 피해자 권리고지 및 사건처리 과정 관련 의견
  - 피해자 권리고지를 비롯,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적 절차나 내용 등에 관해서 경찰의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
  - 피해당시에 경찰이 피해자 권리고지를 설명하지만 숙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음. 진정이 된 후에 알려주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경찰과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수행 이외에 심충적인 피해자 보호와 상습적으로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피해자 보호 및 폭력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서귀포 지역의 여성폭력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위기대응의 어려움 있음
  - 위기대응 기관인 1366, 해바라기센터, 전담병원의 부재 등으로 제주시까지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어려움
  -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시설입소 관련 규정정비를 포함하여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기관간의 연계

- 보호시설의 입장에서 경찰에서 직접 연계를 피하고, 상담소나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받는 이유는 폭력 피해 사실이나 입소희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함

○ 보호시설 운영상 어려운 점

- 입소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아,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음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함
- 폭력 피해자(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자립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가장 큰 문제는 주거지원의 부족으로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범위 확대 필요성

- 장애인의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피해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호시설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 피해자의 의견으로는 개인마다 심리적 상처나 회복속도 등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음

○ 관련기관 간 협력의 문제점

- 보호시설과 상담소간의 협력은 잘 유지되고 있으나 경찰과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찰의 인식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피해자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때 피해자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피해자에 대한 부분적인 서비스만 지원할 것인지, 혹은 아예 피해자를 인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있음

○ 여성폭력 지원시설의 중복기능 점검과 특화방안

- 여성폭력 관련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강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여 중복된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당 기

관 고유의 특화된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각 기관의 특화된 기능과 역할을 정하는 것은 기관간의 협의로 가능할 것이고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음

#### 다. 가해자 교정 · 치료

##### ○ 경찰의 역할

-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상담권유가 필요함
- 법적인 처벌을 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폭력 초기 대응 단계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상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좀 더 체계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함

##### ○ 가해자 교정 · 치료 제도 운영의 어려움

-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으로 상담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가해자의 수도 늘어남에 따라 행정적 처리절차가 연기되는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가해자들의 불평이 있음
-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 ·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소규모(10명 내외)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기간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하는 규정 때문에 수십명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므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 가해자를 위한 협력방안

- 보호시설 종사자는 법적 처벌절차를 거친 가해자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과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와의 협력으로 폭력예방 효과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주장함

## 제6장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 1. 제주지역 여성폭력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결과 조정기구 활성화

#### 가. 제주지역 여성폭력 관련 협의체 활성화 필요

- 여성폭력 관련 협의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지역의 솔루션 팀, 보호관찰소와 법원 그리고 가해자 상담을 위탁받은 상담소가 참여하는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업무 협의체 등이 있음
- 이러한 협의체는 피해자 보호와 위기대응, 가해자 교정·치료 등 부분적인 협력을 위한 협의체이고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이고 활발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과 행정 공무원, 의료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는 것이 중요함

#### 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2008년 4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의 핵심추진과제로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여성폭력관련시설, 1366, 상담소·보호시설, 의료기관, 경찰·사법기관, 아동 청소년관련 시설 등으로 구성된 기구(도, 23개시군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서 협의체 구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2015. 8월 개정)
- 협의회 위원 23명(여성폭력기관8, 아동보호관련기관1, 의료기관3, 교육기관1, 경찰·사법기관6, 자활기관1, 긴급구조1, 행정2)으로 구성 정기적(년2회 정도) 회의 개최

- 지역연대의 활성화와 여성폭력 관련 기관 및 협의체 간의 협력을 위한 연계조정기구로서의 역할 정비 필요

## 2. 위기대응 관련 개선점

- 여성폭력 담당 경찰관의 성평등 의식 개선
  - 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여성가족연구원)과의 협력
- 폭력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연계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의 협력강화
  - 피해자 보호 및 위기대응을 위한 상담소·보호시설과의 초기대응매뉴얼 점검 및 협력
  - 알코올 중독 혹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혹은 가해자)에게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이를 위한 도내 전문기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
- 가해자 상담을 위한 상담소와의 협력 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 및 긴급임시조치 실행 제고
  - 법적처벌을 받지 않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권유 및 상담소와의 정보공유

## 3. 피해자 지원체계 확충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간의 중복기능을 조절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찰과 피해자 지원시설간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 보호시설 입소율 감소에 따른 원인분석 및 시설 규정 보완
  - 여성폭력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여성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함
  -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내 규정 정비와 보완이 필요함
-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분야는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13.3%)과 가족면담 및 상담(13.3%) 부분, 그리고 온라인 상담(12.5%) 순으로 나타남
- 서귀포 지역 여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기관 확충이 필요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정병원,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고 위기대응 기관인 1366센터와 해바라기 센터가 없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관련기관 종사자, 그리고 담당업무를 맡은 경찰까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인구는 적으나 관할지역은 넓어, 읍면 지역에 거점기관 혹은 분소를 마련하거나 유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초기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하여야 함

#### **4.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업무 협력 강화**

- 경찰중심으로 정보공유와 가해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확대방안 필요
  - 특히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대상,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알콜중독 혹은 정신질환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와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 및 교육 실시필요
  - 기관간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소재파악 및 신속한 검거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 필요
  - 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상담명령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보호관찰소 및 관련 기관의 인력부족으로 대상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인원확충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육·상담 인력 및 시설확대 방안을 마련이 필요함
  -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보호관찰소, 경찰, 상담소간의 협력강화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차원의 지원이 필요

#### **5. 예방교육의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예방교육이 중대되고 있음
- 그동안 국가기관 및 학교 등 공공기관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국한되었던 폭력 예방교육이 2015년부터 일반인에게로 확대되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그러나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일반인 대상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음. 이에 대한 일반인의 교육참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함. 특히 읍면동 지역의 자생단체들의 참여확대와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

### 할 필요가 있음

-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 폭력예방교육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 기관 혹은 기구를 통한 전문강사의 역량강화와 예방교육의 효과성 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 연구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5
가. 연구절차 .....	5
나. 연구방법 .....	8
다.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11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현황 .....	13
1. 여성폭력의 개념 .....	15
가. 여성폭력의 개념 .....	15
나. 가정폭력 개념 .....	16
다. 성폭력 개념 .....	16
2. 여성 폭력 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	17
가. 국외 정책동향 .....	17
나. 국내 정책동향 .....	19
다. 제주지역 정책동향 .....	24
3.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현황 .....	25
가. 여성폭력 대응시스템의 정의 .....	25
나. 위기대응 체계 .....	26
다. 피해자 지원체계 .....	27

라. 여성폭력 가해자 관련 정책	30
마. 예방교육 체계	37
제 3 장 제주지역 여성폭력 현황 및 대응 시스템	39
1. 여성폭력 현황	41
가. 성폭력 현황	41
나. 가정폭력 현황	48
2. 위기대응 관련 현황	52
가. 경찰의 위기대응 관련 업무 현황	52
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 및 위기 지원기관	55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56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56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57
4. 가해자 교정·치료 현황	59
가. 여성폭력 가해자 현황	59
나. 성폭력 가해자 지원 현황	63
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현황	63
5. 예방교육 현황	63
가. 기본계획 수립	63
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및 횟수	64
다. 폭력예방교육 방법 및 직원참여율	66

제 4 장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 조사결과 .....	73
1.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	75
가. 조사개요 .....	75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76
다. 위기대응 .....	77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92
마. 정책욕구 .....	105
2. 예방교육 인식조사 결과 .....	111
가. 조사개요 .....	111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13
다. 예방교육 인식조사 결과 .....	114
 제 5장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	135
1. 조사개요 .....	137
가. 여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개요 .....	137
나. 관련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개요 .....	139
2. 심층면접 결과 .....	141
가. 위기대응 .....	141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52
다. 가해자 교정치료 .....	171
 제 6 장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	179
1.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181

가. 제주지역 여성폭력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결과 조정기구 활성화	181
나. 위기대응 시스템	182
다.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184
라.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업무 협력 강화	185
마. 예방교육의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186
2.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187
가. 가정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187
나. 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190
다. 제주지역 여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시스템	192
 참고문헌	194
 부록	196

## 표 목 차

<표 1-1> 통합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영역과 내용 .....	9
<표 1-2> 조사 영역과 내용 .....	01
<표 2-1> 여성폭력 시설 및 상담소 현황 .....	03
<표 2-2> 성폭력 범죄가해자 교정·치료 관련 규정 .....	53
<표 3-1> 전국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건수 추이 .....	14
<표 3-2> 전국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13세 미만) .....	24
<표 3-3> 전국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34
<표 3-4> 성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	34
<표 3-5> 지역별 성범죄 발생률 .....	44
<표 3-6>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	44
<표 3-7> 성폭력범죄 가해자 수사 및 처리현황 .....	54
<표 3-8>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	64
<표 3-9>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	64
<표 3-10> 성폭력범죄 피해장소별 현황 .....	74
<표 3-11> 가정폭력사범 접수 현황 .....	84
<표 3-12>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 .....	94
<표 3-13> 가정폭력사범 접수 현황 .....	94
<표 3-14>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 .....	05
<표 3-15> 가정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	05
<표 3-16> 경찰의 성폭력피해자 연계 현황 .....	25

<표 3-17> 성폭력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활용현황	35
<표 3-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현황	35
<표 3-19>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집행/긴급임시조치 처분·결정건수	45
<표 3-20> 제주지역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지원시설 현황	65
<표 3-21> 솔루션-팀 위원 구성 현황(15년 5월말 현재)	8·5
<표 3-22> 솔루션-팀 운영 현황	95
<표 3-23>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전약방 운영현황	95
<표 3-24>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대별 현황	106
<표 3-25> 가정폭력 피해자 폭행 동기별	106
<표 3-26> 가정폭력 피해자 재범 현황	116
<표 3-27> 제주보호관찰소 성폭력·가정폭력 수강자 현황	126
<표 3-28> 제주 여성폭력 피해자 수강 명령 기관	126
<표 3-29>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수립	146
<표 3-30>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156
<표 3-31>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횟수	166
<표 3-32> 유형별 교육방법	166
<표 3-33>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방법 – 전문가 교육	176
<표 3-34>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방법 – 시청각 교육	186
<표 3-35>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방법 – 사이버 교육	196
<표 3-36>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방법 – 내부직원강의	207
<표 3-37> 유형별 직원전체 참여율	217
<표 4-1>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영역과 내용	267
<표 4-2> 조사표본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77

<표 4-3> 여성폭력 관련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도 전체 비교	87
<표 4-4> 제주지역 성폭력에 대한 위험도 – 성폭력	97
<표 4-5> 여성폭력 관련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도 – 가정폭력	08
<표 4-6> 경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18
<표 4-7> 경찰의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28
<표 4-8> 성가정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38
<표 4-9> 여성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어려운 점	48
<표 4-10>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청 할 수 있는 응급조치	48
<표 4-11>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청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인식	58
<표 4-12>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타 기관 연계 정도	68
<표 4-13> 여성폭력 사건 대응 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	68
<표 4-14> 폭력사건에 대한 신고 주체	78
<표 4-15> 폭력 신고 시기	78
<표 4-16> 신고 후 경찰 조치	88
<표 4-17> 사건 처리 거부 이유	88
<표 4-18>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불편을 느낀 경우	98
<표 4-19> 경찰의 수사 결과	09
<표 4-20>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이유	09
<표 4-21> 경찰 조치 만족 여부	19
<표 4-22> 여성폭력 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책	19
<표 4-23> 공공 서비스 시설을 알게 된 경위	29
<표 4-24>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39
<표 4-25> 공공서비스 시설에서 도움 받은 내용	49

<표 4-26>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따른 만족도	59
<표 4-27> 기관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69
<표 4-28> 연계서비스에 대한 평가	79
<표 4-29>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89
<표 4-30> 외부기관과의 연계에서 겪는 어려움	99
<표 4-31> 여성폭력 지원체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0
<표 4-32> 피해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①
<표 4-33>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개선할 점	❸
<표 4-34> 여성폭력 피해자 효과적 지원	❹
<표 4-35> 여성폭력의 효과적 대응 방안	❻
<표 4-36> 여성폭력 관련 정책 중 문제점	❽
<표 4-37> 폭력차단을 위한 방안	❾
<표 4-38>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❿
<표 4-39> 예방교육 인식조사 내용	❶
<표 4-40> 예방교육 인식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
<표 4-41> 연간 폭력예방교육 실시 횟수	❻
<표 4-42> 폭력예방교육 방식	❽
<표 4-43> 폭력예방교육 전반적 이해도	❻
<표 4-44> 폭력예방교육의 인식변화에 대한 도움 정도	❻
<표 4-45> 수강한 성교육 효과(평가)	❷
<표 4-46> 성교육 내용 중 가장 좋았던 점	❸
<표 4-47> 성교육 수강 시간	❹
<표 4-48>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합한 교육 방식	❹

<표 4-49> 성폭력 예방교육 적정 학생 수	❶
<표 4-50>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❷
<표 4-51>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중 가장 좋았던 점	❸
<표 4-52>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시간	❹
<표 4-53>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양)	❺
<표 4-54>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합한 방법	❻
<표 4-55> 성폭력 예방교육 적정 학생수	❼
<표 4-56>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❽
<표 4-57> 성별, 연령별 년간 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	❾
<표 4-58> 폭력예방교육 전반적 이해도(난이도)	❿
<표 4-59> 가장 도움이 되는 폭력 예방교육 내용	⓫
<표 4-60> 폭력예방교육의 적합한 방법	⓬
<표 4-61> 폭력예방교육의 적정규모	⓭
<표 4-62>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⓮
<표 4-63>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성폭력 피해자 책임귀인)	⓯
<표 4-64>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가정폭력은 집에서 해결)	⓰
<표 4-65>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가정폭력은 범죄 : 신고 및 피해자 보호)	⓱
<표 4-66>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성매매)	⓲
<표 5-1> 여성폭력 피해자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⓳
<표 5-2>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내용	⓴
<표 5-3>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⓵
<표 5-4> 기관 종사자의 심층면접 조사내용	⓶

##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	7
<그림 2-1> 성폭력 법적 처리절차 .....	12
<그림 2-2> 가정폭력 법적 처리절차 .....	32
<그림 2-3> 가정폭력加害자 관련 검사의 치분 .....	42
<그림 2-4> 여성폭력 정책 목표 및 추진체계 .....	62
<그림 2-5>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의 수직적 전달체계 .....	82
<그림 2-6>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	92
<그림 2-7> 가정폭력加害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체계 .....	43
<그림 2-8> 가정폭력加害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신청 및 사업비 배정절차 .....	53
<그림 2-9> 성폭력加害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신청 및 사업비 배정절차 .....	73
<그림 3-1> 전국 성폭력 발생 추이 .....	24
<그림 3-2> 성폭력범죄 현황(발생건수) .....	54
<그림 3-3> 2015년 기준 연령별 분포 그래프 .....	74
<그림 3-4> 2015년 5월 현재 가정폭력 유형별 현황 .....	15
<그림 3-5> 제주지역 년도별 아내학대 추이 .....	15
<그림 3-6>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집행/긴급임시조치 처분결정건수 .....	45
<그림 3-7> 가정폭력加害자 폭행 동기별 .....	16
<그림 4-1> 여성폭력 관련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도 전체 비교 .....	87
<그림 4-2> 피해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	10
<그림 4-3>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개선할 점 .....	10

<그림 4-4> 여성폭력의 효과적 대응 방안	¶
<그림 4-5> 여성폭력 관련 정책 중 문제점	§
<그림 4-6> 폭력차단을 위한 방안	¶
<그림 6-1> 제주지역 가정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모형	§
<그림 6-2> 제주지역 성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모형	¶
<그림 6-3> 가해자 교정치료 시스템	§

# 제 1 장

---

##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폭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성폭력·가정폭력 등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범죄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드러남
  - 2013년 제주지역 성범죄는 총 511건이고 인구비례 발생비율이 타지역보다 높음
  - 2013년 제주지역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총 320건으로 전년도 대비(2012, 56건) 대폭 증가했고, 그 중 260건(81.3%)이 아내학대로 나타남(제주지방경찰청 내부 자료 2014)
  - 제주여성의 67.4%가 범죄위험에 불안을 느끼고(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절반 정도(47.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4)는 밤늦게 귀가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도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이나 공공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신고율(8.8%)과 상담소 등 공공서비스 이용률(8.8%)이 낮음(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4)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찰신고율(19.4%), 긴급전화 이용률(13.9%)도 낮은 편임
- 제주도에서는 2011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비롯한 폭력 위기대응 시스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영역별 여성폭력 관련 정책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 폭력 위기대응 지원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에서 가정폭력 부분을,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부분을 주로 담당하며,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음

- 여성폭력 발생 시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에서 상담원(2인 1조)이 현장 출동하여 보호시설 연계 및 파출소 동행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함(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2014)
- 여성긴급전화1366 · 제주해바라기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점검하고 상담소를 비롯한 경찰, 검찰 등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함
-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에 있어서도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15개소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운영되며, 피해자 주거지원 · 피해자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이 지원됨
  - 여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장기간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충분한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4)
  -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 및 자립지원이 부족함
  - 피해자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적 · 심리적 · 법률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전무하고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통한 사업의 적절성 검토와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 성폭력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은 성폭력 1개소(제주YWCA 부설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3개소 (가족사랑상담소, 희망상담소, 제주YWCA 부설 통합상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함
  - 그러나 도비 지원으로 교정 · 치료를 받은 인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9월 기준, 성폭력 가해자 21명, 가정폭력 가해자 73명이 교정 · 치료를 받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내부자료. 2014)
- 최근 여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지침에 따라 의무교육자대상(의무교육대상 기관) 교육과 찾아가는 예방교육에 관한 방안이 확대되고 제도화 되는 추세에 있음
  - 제주도 지역의 폭력 예방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이용자의 만족도, 강

사의 전문성, 교육방법 등에 관한 검토가 전무함

- 제주지역의 의무교육대상기관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태파악과 교육대상자의 만족도 및 효과성 검증이 필 요한 시점임
- 여성폭력 관련 위기대응,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예방교육 전반의 현황을 점검 및 여성폭력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성폭력 위기 대응 시스템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점 검을 통하여 피해자 연계 및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방안을 모색함
- 제주도내 여성폭력 지원기관과 보호시설의 피해자 지원 실태 및 현황을 파악 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 여성폭력 가해자 사법처리 및 교정·치료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
-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을 비롯하여 제도 적 개선안을 마련함
-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 기대응, 피해자지원 및 보호, 가해자 교정·치료, 예방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력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3. 연구방법

### 가. 연구절차

- 본 연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한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

「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성폭력 실태]와 [가정폭력 실태]에서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음

- 관련분야의 전반적인 현황파악을 위하여 본 연구원의 정책포럼 자문단 3개 분과(성인지정책, 여성정책, 아동·보육)에서 TF팀 회의를 실시하여 제주지역의 현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함
- 도내의 여성폭력 관련 현황 및 현안문제 파악을 위하여 여성폭력 관련 기관 및 시설의 협의체인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함
- 기타 도내의 각 경찰서를 비롯하여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현황자료 수집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정책적 개선점 등을 파악함
-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연구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여성폭력 분야 전문가들에게 연구 방향과 연구결과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2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함
-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전문가는 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성폭력·가정폭력 담당 경찰, 보호관찰소 등 사법기관 담당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실무자로 구성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의 발표 및 현장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함
  - 여성폭력 위기대응, 피해자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표하고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의장을 마련함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음

###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2월	· 착수보고	⇒ · 착수보고 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세부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등
3월	· 타당성·적절성 검토	⇒ · TF팀 회의 · 문헌고찰 및 현황자료 수집·분석
4월	· 연구방향설정	⇒ · 1차 자문회의 · 공무원 면담
5월	· 설문지 개발 및 현황자료 수집	⇒ · 여성인권연대·시설협의회 간담회 개최 · 기관방문을 통한 현황자료 수집 · 예방교육 현황자료 수집
6월	·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	⇒ · 예방교육 현황자료 수집 · 통합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 현장방문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7월	·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 · 중간보고	⇒ · 예방교육 인식조사 설문지 개발 · 통합시스템 욕구조사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예방교육 인식조사 : 설문조사
8월	· 전문가 간담회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집필	⇒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 분석 · 보고서 집필 ·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9월	· 연구결과 분석 및 의견수렴	⇒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집필 · 2차 자문회의 개최
10월	· 보고서 완성	⇒ ·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보고서 평가 및 수정 · 최종보고서 제출

## 나.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체계, 가해자 교정·치료 및 예방교육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정책동향 및 현황자료 분석
  - 여성폭력 관련 정책(국내·외)을 소개하고 동향을 파악함
  -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관련정책 현황(도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서귀포 시청 여성가족과)을 파악
  - 여성폭력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제시
- 여성폭력 관련 현황조사 (위기대응, 피해자보호 및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현황 조사)
  - 국내 여성폭력 대응 시스템 현황 정리(위기대응,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17개 기관 및 제주해바라기센터)을 방문하여 여성폭력 관련 시설의 피해자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자료 분석
- 사법기관의 여성폭력 관련 위기 대응 시스템 및 파악
  - 제주동부경찰서(성폭력수사팀, 여성·청소년과), 제주서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서귀포경찰서(여성·청소년과)
  - 제주지방검찰청(성폭력·가정폭력 담당실)
  - 피해자 보호현황 파악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가해자 교정·치료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보호관찰소의 여성폭력 대응 시스템 자료 수집
- 예방교육 현황
  - 제주지역의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예방교육 현황자료(2013년도 자료)를 분석함

## 2) 설문조사

### (1) 여성폭력 통합대응 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 여성폭력 관련 위기대응,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교정 · 치료 현황 파악과 의견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담당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폭력 피해자와 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배포 · 수거하였고 회수된 총 설문지는 233부[피해자 79(성폭30, 가폭49), 종사자 85, 경찰 49, 행위자 20]이고, 결측 값이 많거나 응답에 일관성이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223부를 분석함
- 조사내용은 여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현황, 기관연계 현황, 개선점 등으로 다음 <표 1-1>과 같음

<표 1-1> 통합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영역과 내용

대상	영역	세부영역
공통	위기대응 및 기관연계방안	폭력발생시 초기대응, 연계활성화 방안
	피해자지원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피해자 지원 수요, 치료회복방안
	정책	폭력대응방안, 안전을 위한 방안, 예방 정책 등
기관종사자	기관서비스내용 및 연계현황	타 기관과의 연계현황, 연계방법 및 기관, 피해자 연계시 어려움 등
피해자	경찰조사경험	경찰신고주체, 시기, 경찰조치내용
		사건처리여부, 수사과정경험, 수사결과, 경찰조치 만족여부 등
	공공서비스 경험	지원내용, 서비스만족도, 연계 경험, 연계서비스 내용, 서비스 만족도 공공서비스기관 인지, 인지경로, 이용경험
경찰	업무현황	담당사건 견수, 유형, 체포견수
	여성폭력 인식 및 사건처리	성폭력 · 가정폭력 관련 인식
		현장 출동시 어려움, 응급조치 · 임시조치 인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여부 등
	연계 및 협력	지역내 협력기관 인지, 피해자 연계정도, 연계시 어려움, 효율적 조사방법 등

## (2) 폭력 예방교육 관련 인식 조사

- 폭력 예방교육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제 예방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한 학생과 교사 및 공무원으로 선정하였음
- 조사대상 선정은 폭력 예방교육 거점 기관(제주YWCA통합상담소)과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제주시청·서귀포 시청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였음
-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총 377명이고 모두 분석하였음 (초등생 61, 중학생 42, 고등학생 49, 교직원 85, 공무원 140)
- 조사내용은 폭력관련 인식을 포함하여 예방교육 방법, 횟수, 내용 등에 관한 적절성 및 교육으로 인한 인식변화 등을 포함함
-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은 <표 1-2>와 같음

<표 1-2> 조사 영역과 내용

영역	세부영역
교육경험	폭력예방교육 경험(횟수 및 방식)
교육내용	폭력예방교육 내용(이해도, 인식변화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
강의구성	폭력예방교육 강의 방식 및 규모의 적절성 여부
인식변화	폭력예방교육 이후 상황별 가치 판단과 행동의향

## 3) 심층면접 조사

- 폭력 기관 종사자, 피해자, 관련기관 담당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조사대상은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관과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중심의 성폭력·가정폭력 담당업무 종사자, 검찰청 담당검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 담당직원, 도청과 시청의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음

- 심층면접 내용은 각 기관의 여성폭력 관련 업무의 특성과 기능, 위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간의 협력방안,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및 개선점 등으로 이루어짐

## 다.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본 연구는 여성폭력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통합적 대응 시스템 방안 마련이 목적이고 여성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처리과정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음
- 여성폭력의 종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의 항목에 관련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음
-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고 성차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가정폭력, 성폭력이 주로 신체적·정서적인 폭력을 다루고 있다면 성매매는 원인과 지원정책 등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이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여 가정폭력, 성폭력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또한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여성 인권의 보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세 부분 모두 ① 예방, ② 보호, ③ 집행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구체적으로 예방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보호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에 관련된 사업 및 정책, 집행은 가해자 재범방지와 관리, 상담이나 교육 등에 관한 정책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여성폭력의 범위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 변수가 되는 성매매를 제외한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한정함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인 예방(교육), 보호(피해자 지원), 집행(가해자 교정)에 관한 내용으로 함
- 다만 여성폭력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폭력이 사건화 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 즉각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위기대응을 따로 분리하여 서술하였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예방교육의 순으로 내용을 구성함

- 여성폭력에서 성매매를 제외함으로 인해 여성폭력의 전반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점, 여성폭력의 내용을 정책지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다각적인 맥락을 다루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겨둠

## 제 2 장

### 이론적 배경 및 정책현황

- 1. 여성폭력의 개념
- 2. 여성폭력 관련 법률 및 정책동향
- 3.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현황



## 1. 여성폭력의 개념

### 가. 여성폭력의 개념

- 여성폭력(女性暴力)의 사전적 정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함
- 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위기백과사전)을 말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의 행위를 포함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폭력은 육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포함함
- 여성폭력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인 경우가 많고 젠더(gender)폭력(양현아. 2006)이라고도 함
- 젠더폭력의 특성을 공적, 사적생활에서 발생하는 젠더와 관련된 폭력행위와 폭력에 대한 위협, 강압이나 자유의 박탈은 여성의 육체적·성적·심리적 상해와 고통을 수반<sup>1)</sup>(UN. 1993)하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인권적 시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여성폭력의 종류는 통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규정한 여성폭력의 정의는 ‘여성폭력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여성폭력에 관한 규정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적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가부장제에 기반한 폭력인 젠더폭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여성폭력의 의미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지칭하며 다만 여성폭력의 종류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중 가정폭력, 성폭력만을 연구범위에 포함함

---

1) 1993년 비엔나 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문을 채택하고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근절을 선성하고 있음.

## 나. 가정폭력 개념

-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호)
- 가정 구성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2호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
  - 가정 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사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가정 폭력의 종류는 폭력 행사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인 아동 폭력, 부부간에 발생하는 '매 맞는 남편'의 남편 폭력과 아내 폭력,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 등의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 폭력, 성인 자녀에 의한 노부모 학대로 나타나는 존속 폭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정폭력은 실제로 부부간에 특히 아내폭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 인하여 부부간에 실제적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하기도 함
- 폭력의 형태에 의해 구분하면 상대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폭력, 화를 내거나 위협 등으로 감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심리·정서적 폭력, 욕이나 비난 등 말로써 상처를 입히는 언어폭력, 강제적인 성관계나 공격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성폭력이 있으며, 또한 상대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거나, 상대에 의하여 자신의 소득을 통제당하는 경제적 폭력 등이 있음

## 다. 성폭력 개념

-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

## 로 정의함

- 구체적으로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심리적·물리적·법적으로 타인에게 성(sexuality)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임
-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몸과 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욕망, 욕구 등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한국여성연구소 1999) 전반을 말함
- 성폭력의 개념정립과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친 끝없는 논쟁이 있어 왔음
- 과거에는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에 관한 죄로 인식하였으나 1990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규정하는 차원에서 성폭력을 정의하게 됨
- 성폭력의 개념정의와 제도적 개선방향은 피해자(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2. 여성 폭력 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 가. 국외 정책동향

#### 1) 미국

- 미국은 1995년 여성에 대한 폭력 국가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Violence Against Women) 설립
-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자문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사회적 인식제고 및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법 (VAWA)이행관련 자문 역할 담당
- 이 법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광범위한 여성 폭력에 대처하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 이주여성에 대한 테러, 일반여성에 대한 신체적 안전 및 성적 폭력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연방 법률임
-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경찰, 의사, 목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2000년에 이르러서 VAWA를 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을 확장하였음. 1) 데이트 폭력의 대하여 재규정, 2) 각 주의 경계선을 넘는 가정폭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 3) 주 경계선을 넘는 스토킹 규정을 새롭게 정비, 4)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조 규정, 5) 구타여성 및 아동에 대한 피난처를 마련, 6)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 주택을 보조, 7) 전국가정폭력 전화를 재정비, 8) 폭력加害자를 체포하는 정책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9) 여성폭력을 지원하고 대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10) 여성폭력 관련 연구, 11) 강간 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들이었음(심영희 2004: 89)
-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의 제정은 여성인권을 강조하고 차별받는 소수인을 배려하는 여성주의적 사고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이러한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USDOJ)에서는 여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의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이성은. 2011)

## 2) 영국

- 영국은 여성담당청(Women's Unit)을 두고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 여성담당청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예방하고 부처간의 정책을 협의하는 역할 담당
- 정책협의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보건의료전문가, 민간기관 및 기업들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함
- 1998년 범죄 및 불법 행위 관련법(Crime and Disorder Act) 제정으로 각 지역의 범죄 감소를 위한 전략마련 및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파트너십(Local Crime and Disorder Partnership) 구축, 가정폭력도 이에 포함됨
- 이를 계기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가정폭력 관련 통계의 개선, 가정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찰조직정비 및 가정폭력피해가구의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됨
- 성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형사사법법

2000(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Services Act 2000)에 의하여 관련기관 협동 공공보호협의회(MAPPA : the Multiple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를 구성(고민조, 2006)

- 형을 마치거나 가석방된 성범죄자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위험관리 계획서(risk management plan)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성범죄자의 위험성을 관리함
- 기관 간 성범죄자에 대한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소재파악 및 신속한 검거를 용이하게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함

## 나. 국내 정책동향

### 1) 여성폭력 정책 동향

- 중앙정부의 여성폭력 관련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잘 나타나 있음.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7개의 정책과제 중 세 번째 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인권보장'을 설정함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내용은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여성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의 실효성 제고 등으로 구성됨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미약한 점을 이유로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함
- 폭력 예방교육 확대 방안 마련,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함
-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방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강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방법을 다양화 함

-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협의하여 마련
- 관련업무 담당자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여성성폭력 관련 사건의 수사와 단속과정에서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여성경찰 배치를 확대함

## 2) 성폭력 관련법과 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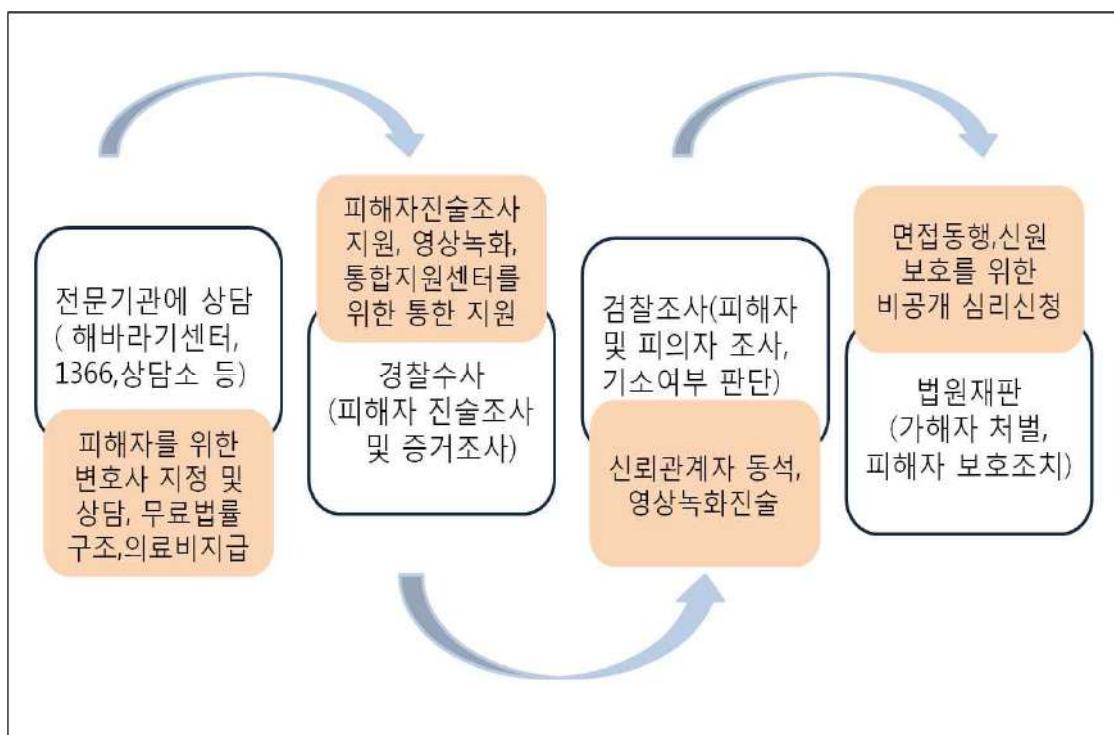
- 성폭력 관련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음
- 2013년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음
- 친고죄를 폐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사나 가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었음
-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의 보호대상이 여성 만이 아님을 명시하여 남성 혹은 동성 간의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고<sup>2)</sup>, 이와 더불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여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대처하게 됨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친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며 생계와 주거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을 확대함
- 최근(2014년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 및 심리치료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성폭력 친고죄 폐지에 따른 법률지원을 강화함
- 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과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양성 및 운영체계를 내실화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2)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6. 19.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일제히 시행”

- 가해자 재범방지를 강화하고 있음.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원화된 신상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및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을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기관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함

<그림 2-1> 성폭력 법적 처리절차



-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성폭력 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하여 여성긴급 전화 1366이나 상담소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상담을 하게됨
- 신체적 외상 정도에 따라 의료 기관에 치료를 의뢰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무료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지원을 의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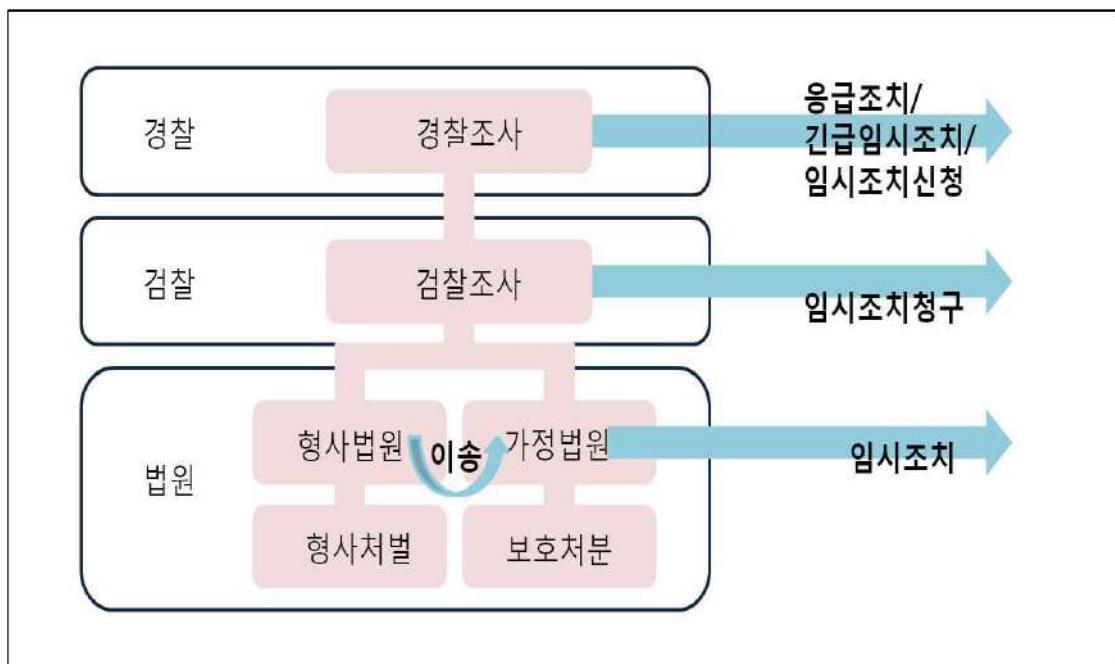
-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권리를 고지하며 필요하면 응급치료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고 진술조력인이나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함

### 3) 가정폭력 관련법과 정책

-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199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와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의 예방교육과 피해자의 보호시설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 가정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 가정폭력특별법에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및 사실혼관계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준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관계, 적모와 서자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이 모두 포함됨
- 가정폭력 범죄는 신체상해를 포함 유기, 감금 및 체포, 협박, 강간, 모욕, 강요 및 공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관계법령정비와 정책의 구립 및 평가,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 등을 포함함
  - 최근 개정된 조항에서는 사법경찰의 현장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현장출동시 여성긴급전화나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 등의 현장동행요청 등 협력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수사진행 등의 조치를 함
- 만일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의 직권으로 강제로 진입하여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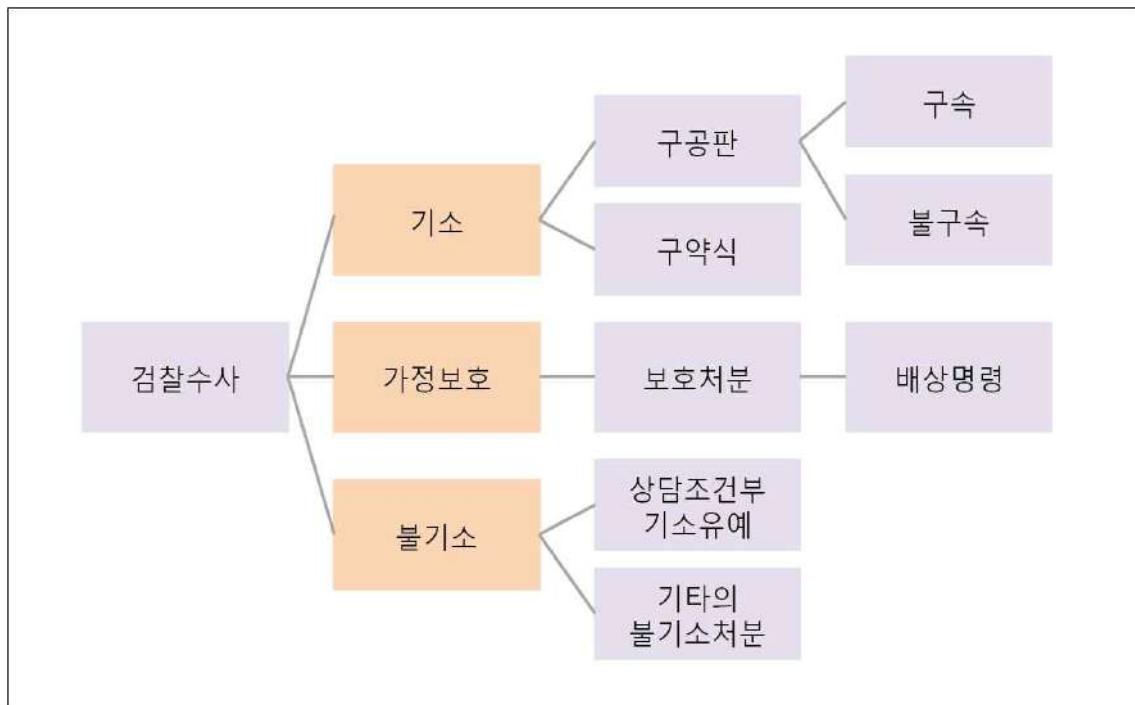
-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한 권리고지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뒤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하고 임시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통보함
  -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가정폭력加害자를 48시간 동안 격리하고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는 조치임

〈그림 2-2〉 가정폭력 법적 처리절차



- 검찰에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은 검사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검사는 기소, 불기소, 가정보호 사건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기소를 하여 법원으로 송치하면 재판을 통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됨
  - 보호처분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친권행사 이외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혹은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명령도 받을 수 있음
  - 만일 가해자가 보호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 또는 구류를 받게 됨

<그림 2-3> 가정폭력 가해자 관련 검사의 처분



#### 다. 제주지역 정책동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지원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여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방안으로 폭력관련시설 운영 지원과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주도내 여성폭력 관련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2014.)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보

호시설 5개소,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상담소 8개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센터 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총 15개소의 운영을 지원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201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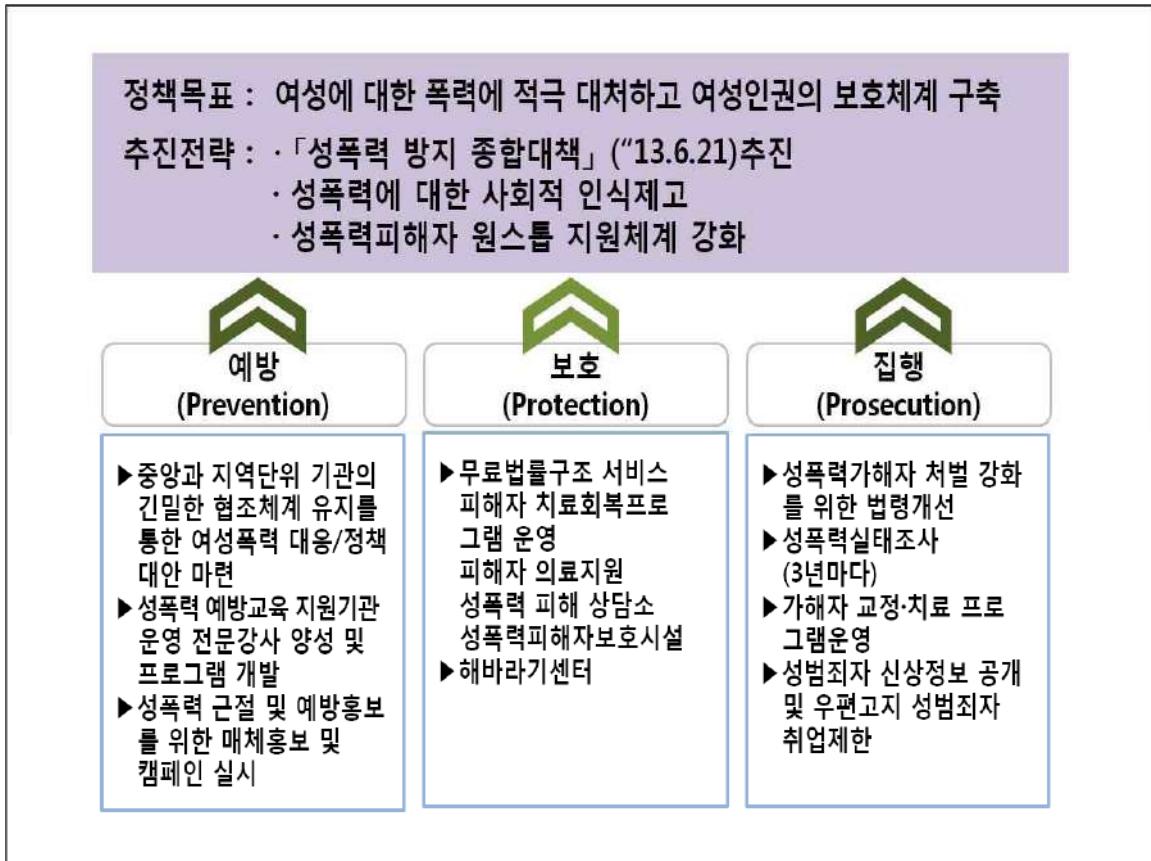
- 제주자치도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은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은 물론, 초기대응과 가해자 처벌, 예방교육의 내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현황

#### 가. 여성폭력 대응시스템의 정의

- 여성폭력 대응시스템은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의함
-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앞 장에서 밝힌 것처럼 예방(교육 및 홍보), 보호(피해자 지원), 집행(가해자 교정·치료)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세 축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내용을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대응시스템으로 지칭함
- 다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나 가해자 관리 및 교정·치료를 포함한 정책 중 폭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위기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여성폭력 위기대응을 한 부분으로 떼어내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4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음

<그림 2-4> 여성폭력 정책 목표 및 추진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나. 위기대응 체계

- 앞서 밝힌 것처럼 여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짐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
- 여성폭력의 위기개입은 주로 피해자(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의 필요성에서 논의되기 시작함
- 위기개입은 폭력 피해자의 현재 지원과 대처기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원조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이인숙, 2004)
- 최근 여성폭력 관련 위기대응의 변화 추이를 보면 경찰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의 성폭력·가정폭력 전담반에 설치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는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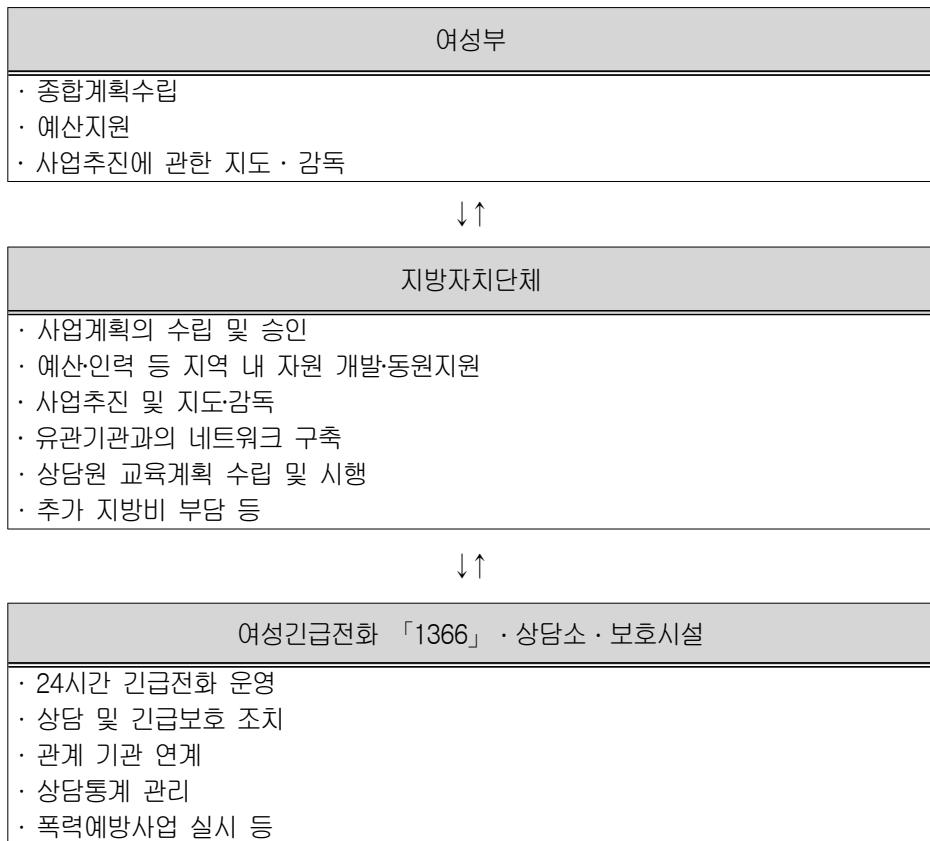
즉각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피해자 권리고지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여성폭력 관련 위기대응 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성폭력 통합지원센터(원스톱,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 피해자 지원체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여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함
-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지원체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됨
-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관련 법률이 제정·정비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함
-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인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원스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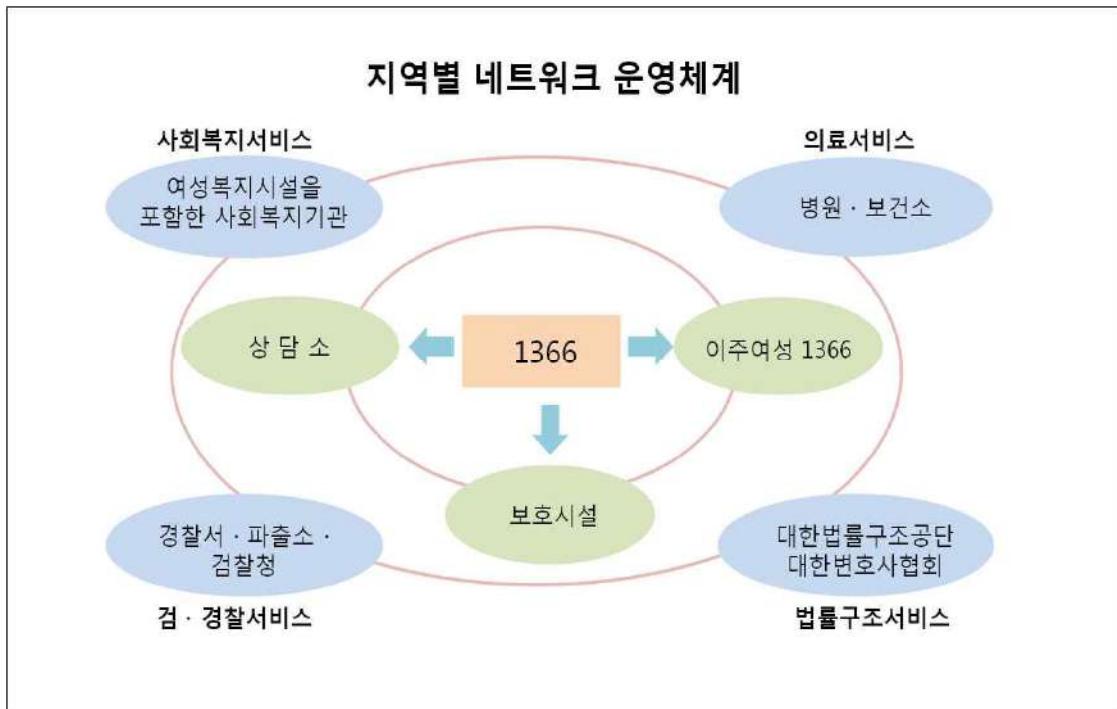
### 〈그림 2-5〉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의 수직적 전달체계



자료:김승권외.2002.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지원체계는 각각의 시설 설립과 목적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특성상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서비스의 지원체계는 <그림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2-6〉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1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2015

-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등의 시설이 있음
- 전국 여성폭력 시설 및 상담소의 현황은 <표 2-1>과 같음

〈표 2-1〉 여성폭력 시설 및 상담소 현황

번호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72	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2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29	성폭력 피해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1년+1년6월)</li> <li>· 장애인(2년+회복시)</li> <li>· 특별지원(18세+2년)</li> <li>· 자립지원(2년+2년)</li> </ul>	생활시설
3	해바라기센터	34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자		이용시설
4	이주여성 보호시설	28	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과 동반아동	2년이내	생활시설
5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201 (21)	가정폭력 피해여성 (가정 · 성폭력피해여성)		이용시설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9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3월)</li> <li>* 장기기설: 2년이내</li> </ul>	생활시설
7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 매 등 피해여성		이용시설
8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03(호)	가정 · 성폭력 피해여성	2년(+2년)	생활시설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폭력 관련 시설의 평가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라. 여성폭력 가해자 관련 정책

### 1)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관리

#### (1)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 가정폭력 가해자에 관한 처벌은 앞서 서술한 대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
-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가해자에게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 등이 취해짐
-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심리하여 기소를 하지 않거나(불기소), 법원에

임시조치 혹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법원으로 송치할 때 가정보호 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리함

- 법원에서는 기소된被告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음
-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 및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이 가정폭력被告자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장희숙. 2010)

## (2) 성폭력被告자 관리

- 성폭력被告자 처벌 및 관리제도는 크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등이 있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 재범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부착할 수 있음. 대상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被告자로 정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20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며,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함. 또한,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그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는 크게 등록, 공개, 고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정리·보관하는 제도를 말하며, 성폭법 제42조에서 제49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상정보를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20년간 관리하게 됨

- 신상정보의 공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신상정보공개대상으로 확대됨
  - 공개대상은 앞서 신상정보의 등록대상과 대동소이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제도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최장 10년간 공개함
  -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와 별도로 법원은 신상공개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고지명령)을 이행할 수 있음
  - 고지명령에 따른 집행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행하며, 해당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주민자치센터,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가정에까지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음
  - 고지명령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으나, 공개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음 (박찬걸, 2010)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되었고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취업제한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이고, 성인대상 성범죄는 2010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고 있음
  -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이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이 활동하는 시설로 한정함

## 2) 여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체계

### (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체계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음
  -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해 2007년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최대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확대하고 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행위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를 위하여 2006년부터 가정폭력 상담소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대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해자
    -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처분자
    -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 기타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하여 상담과정을 권유받은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
- 사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집행지침을 시달하고 시·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실시 이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종합결산을 시행함
  - 시·도에서는 상담소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상담소별 사업비를 배정하며 배정결과와 정산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함
  - 시·군·구에서는 상담소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시·도에서 받은 사업비를 상담소에 교부하며 시설을 점검
  - 각 상담소에서는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 수행 후에는 시·군·구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를 함

<그림 2-7>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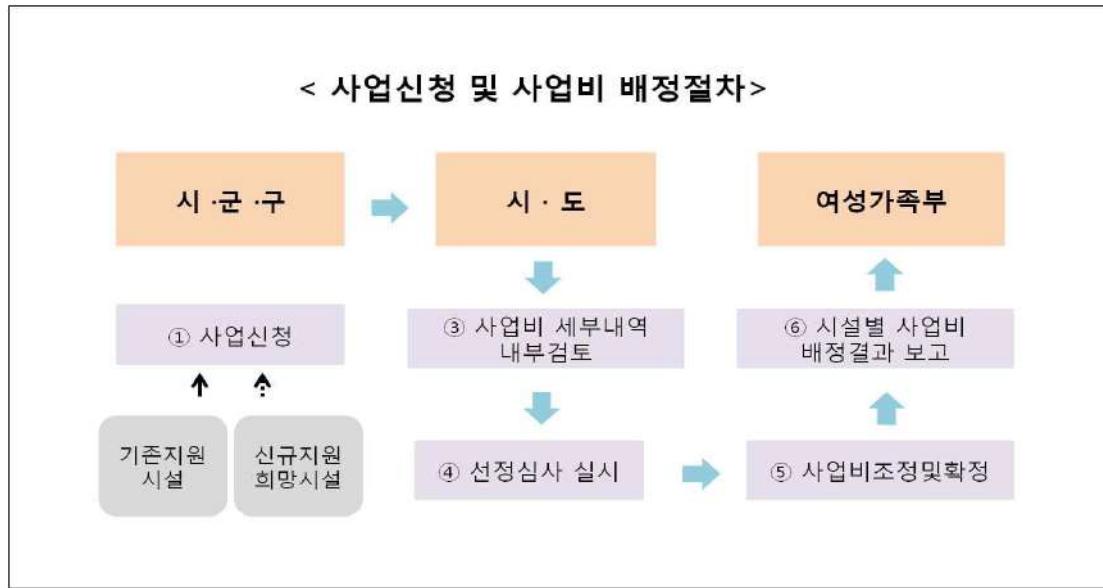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여성·아동권익증인사업운영지침

○ 사업비 배정절차는 <그림 2-8>과 같음

- 가정폭력상담소는 관할 시·군·구에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신청
- 시·군·구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함
- 시·도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 상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선정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확정
- 시·도에서는 확정한 시설별 사업비 배정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시·군·구에 사업비를 교부함
- 상담소에서는 시·군·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함

〈그림 2-8〉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신청 및 사업비 배정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여성·아동권익증인사업운영지침

## (2)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정책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음
- 범죄에 관한 형량에 따라 수강명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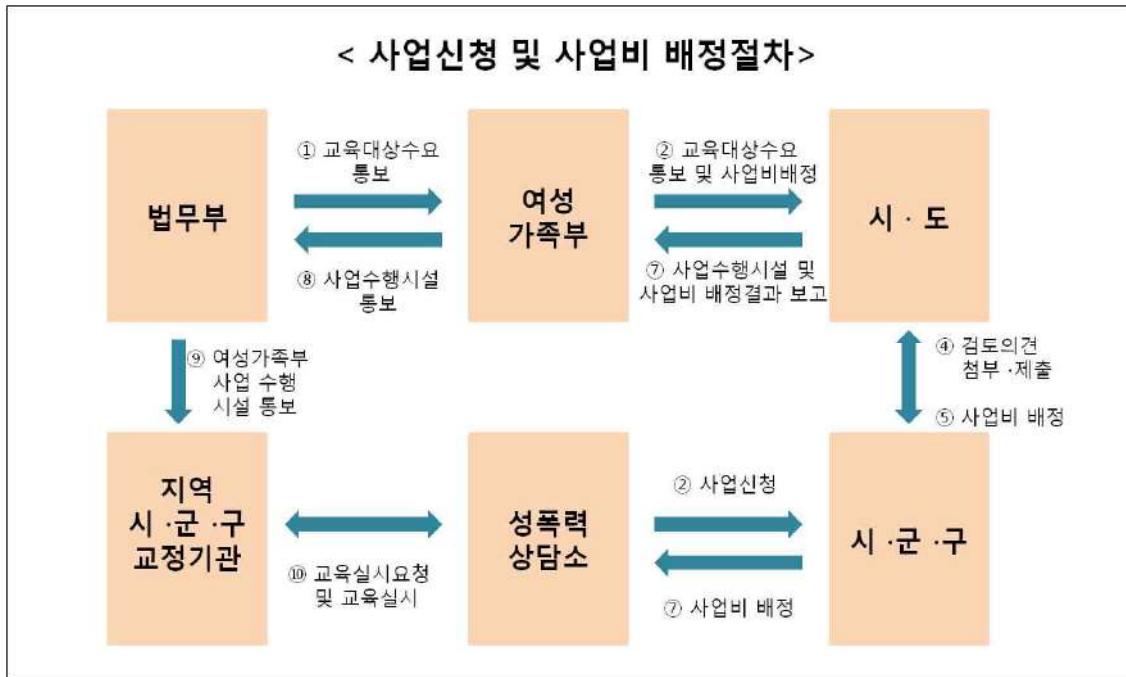
〈표 2-2〉 성폭력 범죄가해자 교정·치료 관련 규정

부과유형	근거법률 및 조항	부과대상	부과기간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법범	집행유예시 200시간이내 (임의적)
수강명령	소년법 제32조	보호소년	보호처분시 100시간이내(임의적)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호	19세이상 대상 성폭력범	유죄판결시 300시간이내 (임의적)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	19세이상 대상 성폭력범	유죄판결시 300시간이내 (임의적)
준수사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성폭력범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2012

-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폭력加害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교정·치료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자로 규정함
- 사업추진체계는 가정폭력과 동일하나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법무부 및 교정기관 등에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함
  - 이는 가정폭력加害자와는 달리 성폭력加害자가 주로 형사 처벌 대상이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여성가족부가 사업집행지침을 시달하고 시·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실시 이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종합결산을 시행함
  - 시·도에서는 상담소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상담소별 사업비를 배정하며 배정결과와 정산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함
  - 시·군·구에서는 상담소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시·도에서 받은 사업비를 상담소에 교부하며 시설을 점검
  - 각 상담소에서는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 수행 후에는 사업결과와 정산보고를 시·군·구에 함
- 사업비 배정절차는 <그림 2-9>와 같음

〈그림 2-9〉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신청 및 사업비 배정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여성·아동권익증인사업운영지침

### 마. 예방교육 체계

- 여성폭력 감소를 위해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과 관련하여 예방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폭력 예방교육을 중요시 하고 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을 처음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초·중·고교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였고 이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2008년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까지 확대함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규정은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음

- 2012년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실적제출이 의무화됨
- 최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 보수교육 (모니터링, 평가, 해촉)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4)
- 최근에는 일반국민에 대한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하여 민간 사업장에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
- 매년 각 기관에서 실시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함
  - 각 기관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교육내용, 강의방법, 교육횟수, 결과보고서 등의 교육 실적 내용 등 기관 실적을 보고함
- 2014년부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이 연 2,500회에서 3,500회로 확대 실시됨 지역도 10개 권역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예방교육이 필요하거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

## 제 3 장

### 제주지역 여성폭력 현황 및 대응 시스템

1. 여성폭력 현황
2. 위기대응관련현황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4. 가해자 교정·치료 현황
5. 예방교육 현황



## 1. 여성폭력 현황

### 가. 성폭력 현황

#### 1) 전국 성폭력 현황

- 전국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2013년 통계에 의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건수는 총 22,310 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44.4건의 성관련 범죄가 발생함
- 2009년부터 성범죄 발생추이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31.9명에서 2010년에는 37.0명, 2011년 39.2명, 2012년 39.3명, 2013년에는 44.4명으로 지속적 증가추세임
- 유형별 성범죄 발생건수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은 29.4%를 차지하였고 강간이 11.5%, 기타 강간·강제추행이 3.3%로 나타남. 즉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유사강간과 기타 강간·강제추행이 적은 분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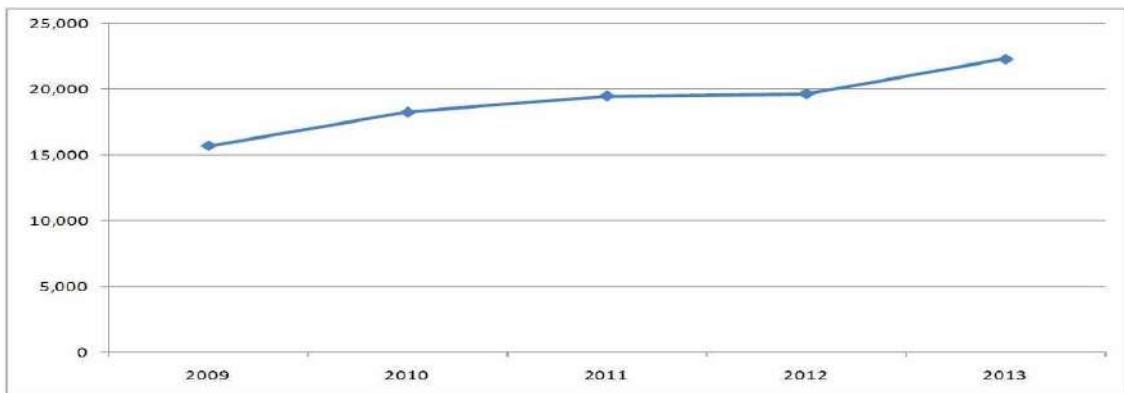
〈표 3-1〉 전국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건수 추이

(단위: 건, %)

구분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9	15,693	31.9	14,492	14,630
2010	18,259	37.0	16,125	17,141
2011	19,498	39.2	16,404	17,492
2012	19,670	39.3	16,630	18,012
2013	계	22,310	44.4	19,774
	강간	5,753	11.5	5,481
	유사강간	132	0.3	122
	강제추행	14,778	29.4	12,525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1,647	3.3	1,646

자료: 경찰청 범죄통계 2013

〈그림 3-1〉 전국 성폭력 발생 추이



자료: 경찰청 범죄통계(2013)

-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추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 볼 수 있음
-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약간 주춤, 그러나  
2015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성이 있음

〈표 3-2〉 전국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13세 미만)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인구10만명당 건수
건수	1054		1086		1123		1161		726		10.21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21
	78	976	114	972	124	999	145	1,016	103	623	

자료 : 경찰청 자료 2015, 황인자 의원실 보도자료 재인용

-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12년의 경우 53%(11,214명)이었고, 그 다음은 지인이 7%(1,458명), 이웃  
3%(612명), 친구 3%(585명), 직장동료 2%(394명), 동거친족 2%(352명), 피고용  
자 1%(207명) 순으로 나타남

〈표 3-3〉 전국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전체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2007	14,070	9	58	93	222	293	34	211	99	58	320	830	7,738	3,805
2008	15,235	8	59	102	227	268	371	223	87	66	351	976	7,997	4,500
2009	16,479	11	46	103	241	381	416	260	87	54	348	1,090	8,158	5,284
2010	19,712	11	87	140	239	479	446	331	137	105	507	1,033	9,642	6,555
2011	20,189	13	115	128	225	400	461	294	99	98	464	903	9,921	7,068
2012	21,259	7	98	207	394	585	529	352	184	122	612	1,458	11,214	5,497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 2) 제주지역 성폭력 현황

- 제주지역 성폭력 발생현황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약간 주춤했으나 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4〉 성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단위 : 건)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10년	277	240
11년	259	189
12년	285	241
13년	495	457
14년	361	328
15년(5월 현재)	184	185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5월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범죄 발생률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2013년도 기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전국평균 58.9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 83.3건을 기록하고 있음

〈표 3-5〉 지역별 성범죄 발생률

(단위 : 건, %)

지역	총인구수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2013년)
		2012년	2013년	
전국	44,805,708	20,510	26,419	58.9
제주특별자치도	593,806	285	495	83.3

자료 : 인구통계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성폭력발생건수는 경찰청 「범죄통계」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발생건수를 합한 수치

- 검찰에 집계된 유형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강간이 가장 많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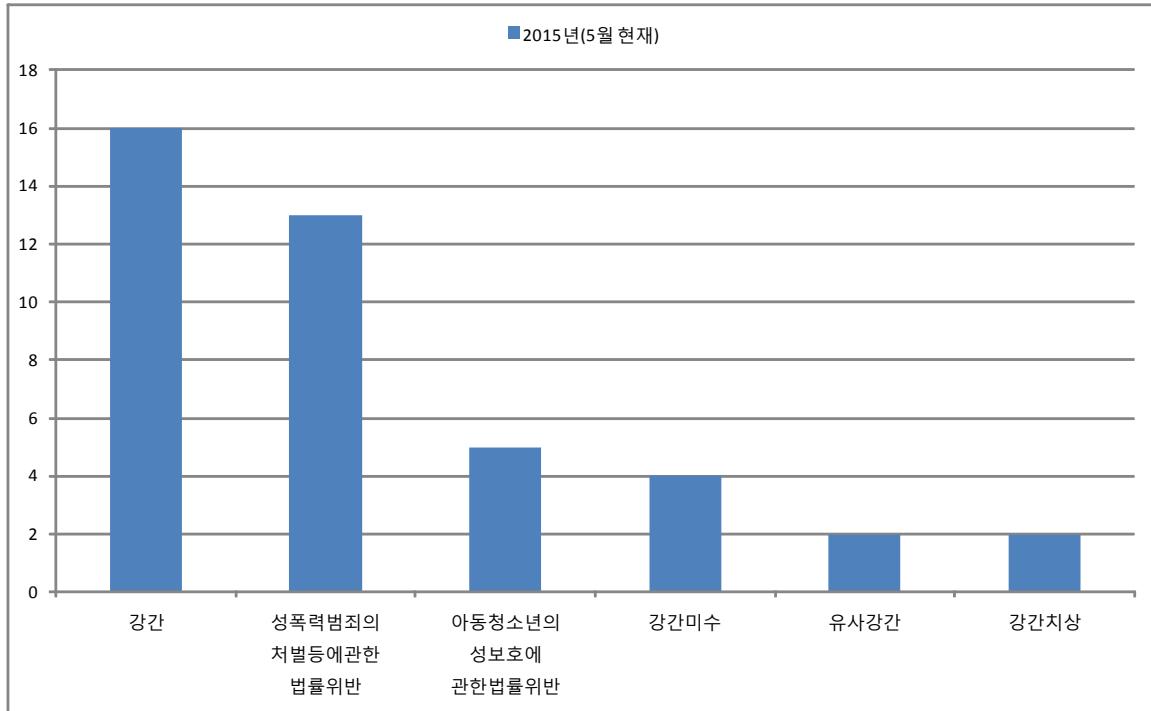
〈표 3-6〉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5월현재)
합계	241	111	43
강간	28	20	16
강간미수	11	11	4
강간상해	2	2	1
강간치상	8	4	2
강도강간	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59	48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25	5	5
유사강간	1	2	2
준강간	6	17	

자료 : 제주지방검찰청 내부자료. 2015

〈그림 3-2〉 성폭력범죄 현황(발생건수)



- 제주지역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보면 2014년 · 2015년 현재 기소율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있으나 20%가까이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것도 주목할 필요 있음

〈표 3-7〉 성폭력범죄 가해자 수사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년도별	계	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이송	기소율
		구속	불구속				
14년	313	60	193	58	-	-	81
15년(5월 현재)	99	12	69	18	-	-	82

자료 : 제주지방검찰청 내부자료. 2015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연도 별로 변화추이 없이 약 95% 이상이 여성으로 성폭력 범죄가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록 소수(5% 미만)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함

〈표 3-8〉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단위 : 명)

년도별	발생별	성별		
		여	남	미상*
10년	277(100.0)	263(94.9)	14(5.1)	(0.0)
11년	259(100.0)	248(95.8)	11(4.2)	(0.0)
12년	285(100.0)	274(96.1)	11(3.9)	(0.0)
13년	487(100.0)	472(96.9)	15(3.1)	(0.0)
14년	361(100.0)	334(92.5)	13(3.6)	14(3.9)
15년	184(100.0)	176(95.7)	7(3.8)	1(0.5)

주) \*\*연령미상 : 피해자 불상 사건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제주지역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자료에 의하면 20세 이하(15.2%)와 30세 이하(36.4%)가 절반 이상(51.6%)를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주로 젊은 여성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15세 이하(11.4%)나 중·장년 여성인 50세 이하(8.2%), 60세 이하(5.4%), 심지어는 60세 이상(2.7%)의 고령층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9〉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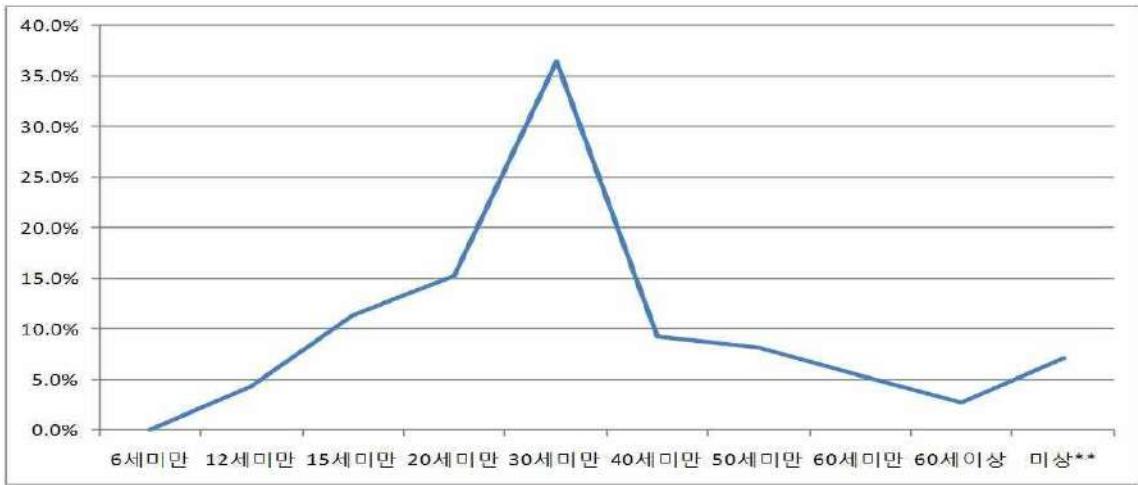
(단위 : 명)

년도별	발생별	연령별									
		6세↓	12세↓	15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0세↑	미상**
10년	277(100.0)	3(1.1)	29(10.5)	19(6.9)	73(26.4)	63(22.7)	33(11.9)	21(7.6)	16(5.8)	3(1.1)	17(6.1)
11년	259(100.0)	0(0.0)	11(4.2)	24(9.3)	57(22.0)	68(26.3)	33(12.7)	33(12.7)	20(7.7)	10(3.9)	3(1.2)
12년	285(100.0)	4(1.4)	27(9.5)	33(11.6)	72(25.3)	69(24.2)	35(12.3)	28(9.8)	11(3.9)	5(1.8)	1(0.4)
13년	487(100.0)	4(0.8)	35(7.2)	36(7.4)	105(21.6)	133(27.3)	63(12.9)	62(12.7)	33(6.8)	15(3.1)	1(0.2)
14년	361(100.0)	4(1.1)	26(7.2)	44(12.2)	71(19.7)	94(26.0)	27(7.5)	49(13.6)	21(5.8)	9(2.5)	16(4.4)
15년	184(100.0)	0(0.0)	8(4.3)	21(11.4)	28(15.2)	67(36.4)	17(9.2)	15(8.2)	10(5.4)	5(2.7)	13(7.1)

주) \* 성별 미상 : 입력 오류로 추정 \*\*연령미상 : 피해자 불상 사건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그림 3-3〉 2015년 기준 연령별 분포 그래프



-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2015년 기준으로 주택(11.4%)이나 노상(25.5%)이 가장 많지만 아파트(6.0%)나 숙박업소(4.9%), 유흥업소(5.4%), 교통수단(8.7%)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특정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성폭력범죄 피해장소별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계	아파트	주택	노상	숙박업소	유흥업소	교통수단	기타
10년	277(100.0)	19(6.9)	81(29.2)	57(20.6)	24(8.7)	15(5.4)	4(1.4)	74(26.7)
11년	259(100.0)	17(6.6)	45(17.4)	39(15.1)	22(8.5)	17(6.6)	5(1.9)	114(44.0)
12년	285(100.0)	20(7.0)	58(20.4)	39(13.7)	24(8.4)	21(7.4)	6(2.1)	117(41.1)
13년	495(100.0)	66(13.3)	88(17.8)	116(23.4)	38(7.7)	27(5.5)	18(3.6)	134(27.1)
14년	361(100.0)	23(6.4)	72(19.9)	51(14.1)	36(10.0)	26(7.2)	19(5.3)	134(37.1)
15년 (5월 현재)	184(100.0)	11(6.0)	21(11.4)	47(25.5)	9(4.9)	10(5.4)	16(8.7)	70(38.0)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나. 가정폭력 현황

### 1) 전국현황

-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 가정폭력 범죄는 2013년 약 15,000건을 넘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의 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현상은 2013년 들어 4대악 척결의 정부시책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11〉 가정폭력사범 접수 현황

(검찰통계시스템 기준, 단위: 건, %)

구분	2015년 (1월-7월)		2014년 (1월-12월)		2013년 (1월-12월)		2012년 (1월-12월)	
	전체사건	가정폭력사 범	전체사건	가정폭력사 범	전체사건	가정폭력사 범	전체사건	가정폭력 사범
대검찰청	1,152,406	20,452(1.8)	1,885,145	20,357(1.1)	1,894,012	15,167(0.8)	1,800,602	2,789(0.2)

자료 : 검찰청 내부자료 2015

-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처분 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불기소(47.1%), 가정보호사건송치(39.7%)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기소율은 약 10%에 머물고 있음
- 불기소 처분과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많은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소율은 감소한 반면,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상당부분 증가(7.7%)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늘어나는 추세임

〈표 3-12〉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

(검찰통계시스템 기준, 구수포함, 단위:건)

구분	접수	처분								미제	비고		
		기소		불기소			가정 보호 사건 송치	기소 중지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대검 찰청	2015 (1-7)	20,452 (1.8)	933 (4.6)	1,062 (5.2)	468 (2.3)	2,178 (10.6)	6,968 (34.1)	23 (0.1)	8,126 (39.7)	221 (1.1)	113 (0.5)	360 (1.8)	
	2014 (1-12)	20,357 (1.1)	1,253 (6.1)	1,781 (8.7)	427 (2.1)	2,550 (12.5)	7,345 (36.1)	32 (0.2)	6,506 (32.0)	260 (1.3)	117 (0.6)	86 (0.4)	
	대비	+0.7	-1.5	-3.5	+0.2	-1.9	-2.0	-0.1	+7.7	-0.2	-0.1	+1.4	

자료: 검찰청 내부자료 2015

## 2) 제주지역 가정폭력 현황

- 제주지역의 가정폭력 사건은 2012년 1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5년 7월 현재 이미 작년도 사건을 초과하고 있음
- 전국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2015년 기준 전국 1.8%, 제주 2.1%)

〈표 3-13〉 가정폭력사범 접수 현황

(검찰통계시스템 기준, 구수포함, 단위:건, %)

구분	2015년 (1월-7월)		2014년 (1월-12월)		2013년 (1월-12월)		2012년 (1월-12월)	
	전체사건	가정폭력 사범	전체사건	가정폭력 사범	전체사건	가정폭력 사범	전체사건	가정폭력사범
대검찰청	1,152,406	20,452(1.8)	1,885,145	20,357(1.1)	1,894,012	15,167(0.8)	1,800,602	2,789(0.2)
제주지검	19,317	398(2.1)	29,331	321(1.1)	27,607	378(1.4)	23,596	14(0.1)

자료 : 검찰청 내부자료 2015

- 2015년을 기준으로 제주지역 가정폭력 사건의 처분현황은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44.2%, 불기소가 41.7%, 기소율은 11.3%를 나타내고 있음
- 전국과 비교해 볼 때 기소율과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이 약간 높아 가해자에 처벌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가정보호사건 송치에 대한 증가율은 전국수치와 비슷 7.8%하나, 기소율

은 전년도 대비 약 10% 가량 감소했고, 기소유예 처분이 4.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4〉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

(검찰통계시스템 기준, 구수포함, 단위:건)

구분	접수	처분									미제	비고		
		기소		불기소				가정 보호 사건 송치	기소 중지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대검 찰청	2015 (1-7)	20,452 (1.8)	933 (4.6)	1,062 (5.2)	468 (2.3)	2,178 (10.6)	6,968 (34.1)	23 (0.1)	8,126 (39.7)	221 (1.1)	113 (0.5)	360 (1.8)		
	2014 (1-12)	20,357 (1.1)	1,253 (6.1)	1,781 (8.7)	427 (2.1)	2,550 (12.5)	7,345 (36.1)	32 (0.2)	6,506 (32.0)	260 (1.3)	117 (0.6)	86 (0.4)		
	대비	+0.7	-1.5	-3.5	+0.2	-1.9	-2.0	-0.1	+7.7	-0.2	-0.1	+1.4		
제주 지검	2015 (1-7)	398 (1.2)	22 (5.5)	23 (5.8)	3 (0.7)	50 (12.6)	113 (28.4)	0 (0.0)	176 (44.2)	5 (1.3)	1 (0.2)	5 (1.3)		
	2014 (1-12)	321 (1.1)	19 (5.9)	51 (15.9)	9 (2.8)	26 (8.1)	92 (28.7)	0 (0.0)	117 (36.4)	5 (1.6)	2 (0.6)	0 (0.0)		
	대비	+1.0	-0.4	-10.1	-2.1	+4.5	-0.3	0	+7.8	-0.3	-0.4	+1.3		

- 가정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내학대가 대부분(2015년 기준 77.3%)이고 기타(7.4%)와 노인학대(6.3%), 자녀학대(5.2%) 순으로 나타남
- 아내학대의 경우 검거율이 대폭 증가한 2013년 이후 매년 약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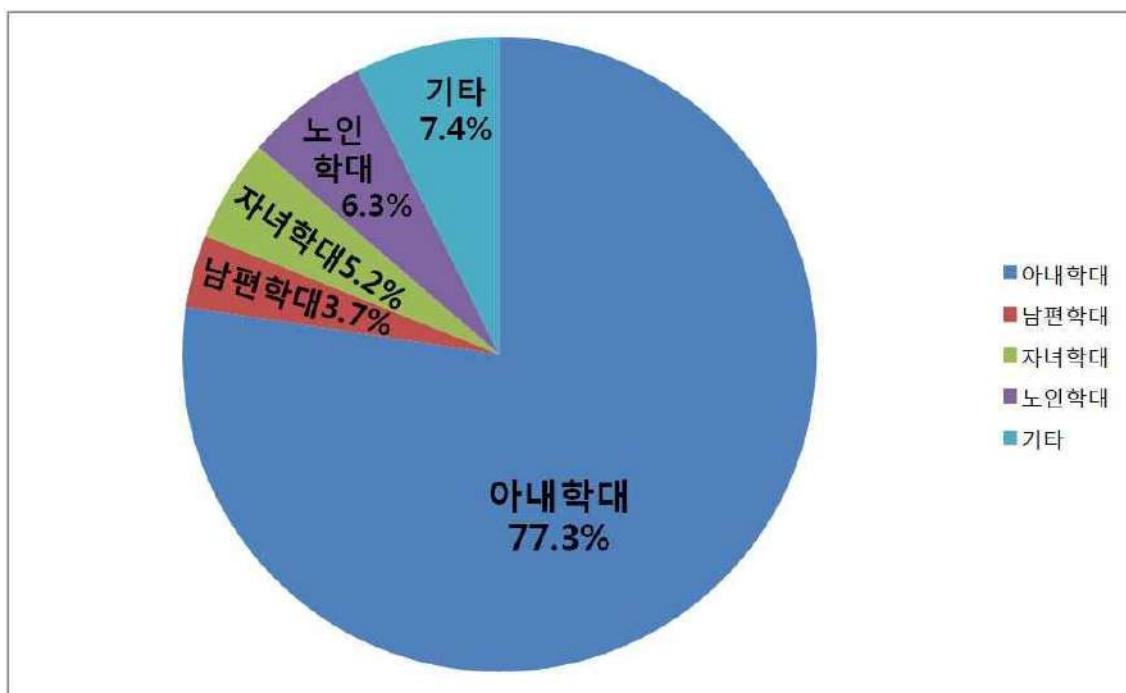
〈표 3-15〉 가정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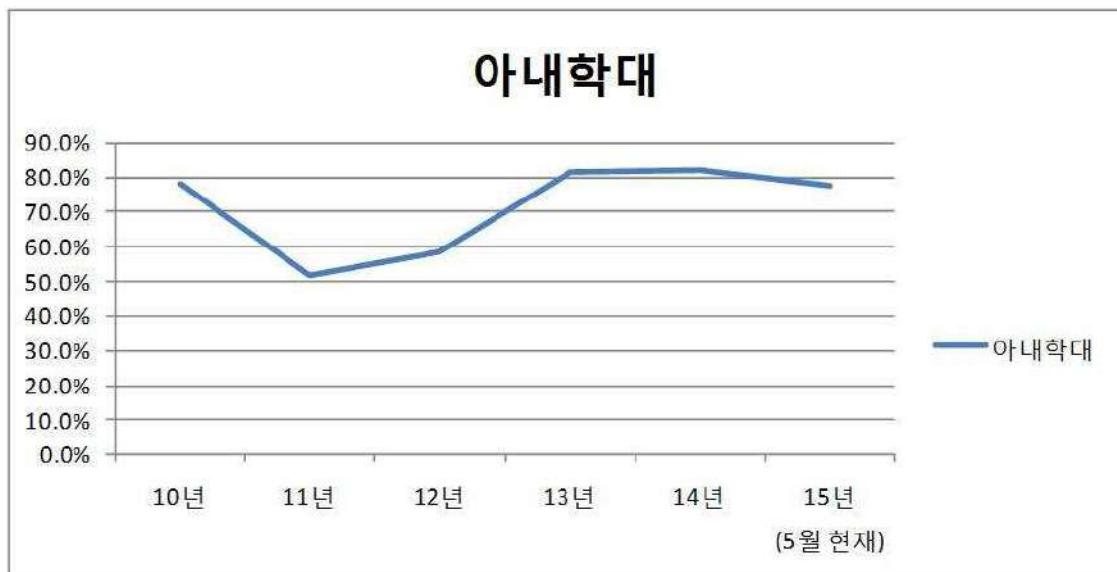
년도별	계	아내학대	남편학대	자녀학대	노인학대	기타
10년	131(100.0)	102(77.9)	6(4.6)	1(0.8)	4(3.1)	18(13.7)
11년	58(100.0)	30(51.7)	3(5.2)	0(0.0)	1(1.7)	24(41.4)
12년	96(100.0)	56(58.3)	1(1.0)	0(0.0)	12(12.5)	27(28.1)
13년	320(100.0)	260(81.3)	15(4.7)	13(4.1)	15(4.7)	17(5.3)
14년	299(100.0)	246(82.3)	9(3.0)	11(3.7)	20(6.7)	13(4.3)
15년 (5월 현재)	269(100.0)	208(77.3)	10(3.7)	14(5.2)	17(6.3)	20(7.4)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그림 3-4〉 2015년 5월 현재 가정폭력 유형별 현황



〈그림 3-5〉 제주지역 연도별 아내학대 추이



## 2. 위기대응 관련 현황

### 가. 경찰의 위기대응 관련 업무 현황

#### 1) 성폭력 관련 위기대응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주로 제주지방경찰청의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주로 24시간 위기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하여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하면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사건(녹화)진술을 포함한 조사,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대응은 주로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폭력 상담소와의 연계건수가 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상담이 가능한 시설과의 연계 필요성의 증가로 볼 수 있음

〈표 3-16〉 경찰의 성폭력피해자 연계 현황

(단위 : 건)

14년			15년		
계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계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328건	328건	-	178건	102건	76건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활용

- 2013년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이러한 상황에 따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할 때 국선변호인의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하는 진술조력인의 활용

- 건수는 거의 없음. 이는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됨
- 여성폭력 관련 기관 활동가들이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하려면 육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음

**<표 3-17> 성폭력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활용현황**

(단위 : 건)

년도별	전체 피해자수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14년	361(100.0)	182(50.4)	-
15년	184(100.0)	93(50.5)	1(0.5)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2) 가정폭력 관련 위기대응

-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는 첫째, 피해자 권리고지서 배부 및 내용을 고지하고 둘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계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받도록 안내하며 셋째, 신체적 혹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음
-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확인한 건수가 2014년 1,613건으로 가장 많고 상담소나 보호시설 연계 건수가 259건, 의료기관 인도 건수가 126건으로 조사됨

**<표 3-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피해자권리 고지서 배부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인도
14년	1,613	259	126
15년(7월현재)	1,058	160	42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신청 집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연락처
  -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이혼절차 진행 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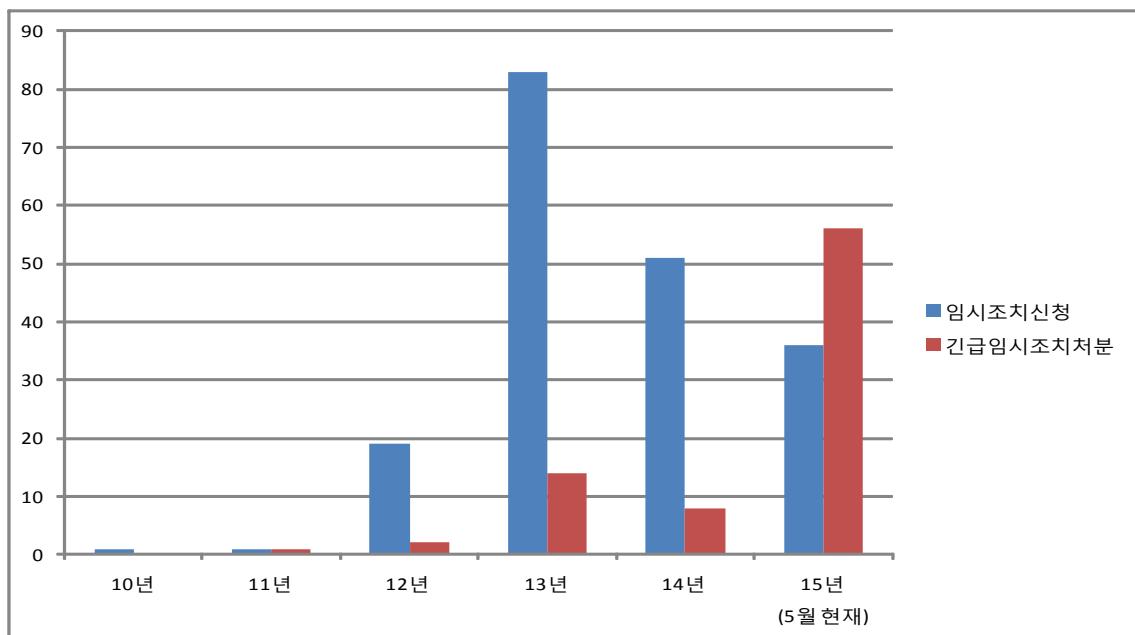
〈표 3-19〉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집행/긴급임시조치 처분·결정건수

(단위 : 건)

년도별	임시조치신청	집행	긴급임시조치처분	결정건수
10년	1	0	2011.10.26부터 시행	
11년	1	1	1	1
12년	19	11	2	2
13년	83	76	14	10
14년	51	50	8	8
15년(5월 현재)	36	28	56	56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그림 3-6〉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집행/긴급임시조치 처분·결정건수



## 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 및 위기 지원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의 역할
  - 1366 센터의 기능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기관·시설과의 연계 및 긴급한 피해자를 구조·지원하는 것임
  - 1366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고 있음
- 제주 1366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2014. “10주년 자료집” 「땀과 열정」)
  - 위기상담 : 1년 365일 24시간 긴급전화 상담 운영
  - 전문기관 연계 : 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전문기관 연계
  - 긴급피난처 운영 :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 및 상담
  - 현장방문상담사업 : 긴급피난 지원 및 현장방문상담사업
  - 이주여성 상담 통역 지원 : 중국어, 베트남 상담 통역
  - 여성행복안심무인택배사업 : 여성안심무인택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찾아가는 경찰 간담회 : 지구대, 파출소 경찰 간담회 실시
  - 연계기관 간담회 : 사례회의, 연계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 여성폭력예방 홍보사업 : 여성폭력 피해 예방 캠페인, 전시 홍보
  - 여성폭력예방 교육 사업 : 대중강연회, 여성폭력 예방교육
- 제주해바라기 센터의 주요 기능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2014. “10주년 자료집” 「땀과 열정」)
  - 상담 및 심리 지원 : 24시간 사례접수, 전문적 사정, 사례회의, 심리평가, 심리치료, 치료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회적 지원, 가족캠프, 부모모임 등 집단 프로그램
  - 의료지원 : 24시간 응급조치 및 응급의학과 치료,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진단서 발급, 성폭력 응급키트 조치
  - 수사법률지원 :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법률조력인 지원, 법률홈닥터 변호사 상담, 수사재판모니터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구축
- 기타 :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동행서비스 지원, 돌봄비용 지원, 간병비 지원 등

###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24시간 상담 및 위기지원 기관, 범죄피해자보호센터 등이 있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기관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및 이용시설) 현황은 <표 3-20>과 같음

<표 3-20> 제주지역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건)

구분	가정폭력	성폭력	이주 여성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및 이용시설	3	3		1	1
보호시설	3	2	1		

- 제주지역의 경우 가정폭력 상담 기관 중 '참사랑가정상담소'의 경우는 설립 초기에는 독립된 상담소로 운영되다가 현재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상담실로 운영되고 있음
- 서귀포 내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가정폭력 보호시설 중 '한빛여성의 쉼터'의 경우는 '모자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음

##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의료지원(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대상, 2014년 39명 지원 (서귀포시 20명, 제주시 19명))
- 생계비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소득·재산 등 기준초과로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자 대상 1인당 월 226,260원 지원, 2014년 45명 지원, 제주시청 내부자료)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심리정서지원, 수사법률지원, 의료, 시설연계, 기타)
- 자립지원 (2014년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500만원 지급, 45명 지원)

### ○ 성폭력 피해자 수에 비해 지원혜택을 받는 비율이 극히 저조함. 심리 및 정서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지원금과 주거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 있음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의료지원(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104명 지원 2014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내부자료 종합)
- 생계비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소득·재산 등 기준초과로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자 대상 1인당 월 226,260원 지원, 2014년 48명 지원, 제주시청 내부자료)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심리정서 지원, 수사법률지원, 의료, 시설연계, 기타)
- 피해자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원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로 확보

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에게 그룹홈 형태로 저가에 임대

- 사업수행기관에 자립상담원을 배치하여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지원
- 임대조건 : 2년 원칙, 1년에 한해 2년 연장, 그룹홈 형식으로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임대보증금 면제
  - 2014년 9호 14세대 30명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 자립지원(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300만원 지급 2014년 4개소 8세대 지원, 총 7명에게 직업훈련비 지급, 제주시청 내부자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또한 매우 열악함. 특히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이 극히 미약함
-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 강화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솔루션 팀 운영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솔루션 팀 구성 및 운영은 상담소 등 관련기관과 자체 담당자로 구성되었으나 실제로는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현장 담당자의 진술)

〈표 3-21〉 솔루션-팀 위원 구성 현황(15년 5월말 현재)

(단위 : 명)

운영 경찰서(개소)	총인원	지자체	상담소/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전문가(변호사등)	기타
3	51	5	22	5	3	16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여성폭력 솔루션팀의 운영현황은 2014년 제주지역 3개 경찰서에서 총 11회, 2015년 8월 현재 10회 개최하였고, 각 경찰서에서 3~4회 정도 개최한 편이며, 주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보호시설 연계를 비롯하여 치료와 법률, 가해자교정기관 연계 등에 관한 지원이었음

〈표 3-22〉 솔루션-팀 운영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개최건수	상담소.보호 기관연계	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진행	가해자교정 기관연계	기타
14년	11	11	9	1	0	3	12
15년(8월 현재)	10	7	4	3	1	6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경찰은 지난 해(2014)부터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우려되거나 의심스러운 가정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팀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제도인 사전약방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범죄위험 경고조치나 관련기관에 연계 및 상담지원 위주였으나 올해부터는 주거환경개선(방범시설 설치 등)이나 긴급물품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적이 적음

〈표 3-23〉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전약방 운영현황

(단위 : 건)

년도별	대상가정	조치별					
		주거환경개선 (CCTV등)	긴급물품지 원	범죄위험 경고조치	현장격리 조치	관련기관 연계/상담	주거이전조치
14년	24	1	1	10	2	8	2
15년(8월현재)	6	4	2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4. 가해자 교정 · 치료 현황

### 가. 여성폭력 가해자 현황

- 가정폭력은 배우자 폭력이 가장 많고 피해자가 주로 아내, 가해자는 남편인 경우가 많음
- 2015년 기준 가정폭력 가해자의 연령은 30대(26.4%), 40대(35.8%), 50대(23.8%)가 80% 이상을 차지함

〈표 3-24〉 가정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 건)

년도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0년	128(100.0)	1(0.8)	9(7.0)	32(25.0)	45(35.2)	35(27.3)	6(4.7)
11년	56(100.0)	0(0.0)	1(1.8)	15(26.8)	19(33.9)	20(35.7)	1(1.8)
12년	101(100.0)	0(0.0)	6(5.9)	24(23.8)	42(41.6)	20(19.8)	9(8.9)
13년	325(100.0)	0(0.0)	20(6.2)	71(21.8)	120(36.9)	86(26.5)	28(8.6)
14년	301(100.0)	7(2.3)	15(5.0)	67(22.3)	120(39.9)	69(22.9)	23(7.6)
15년(5월 현재)	265(100.0)	2(0.8)	17(6.4)	70(26.4)	95(35.8)	63(23.8)	18(6.8)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2015년 기준, 가정폭력 가해자 폭행 동기는 기타가 가장 많았고(43.4%), 가정불화(27.5%), 음주(20.8%) 그리고 성격차이(5.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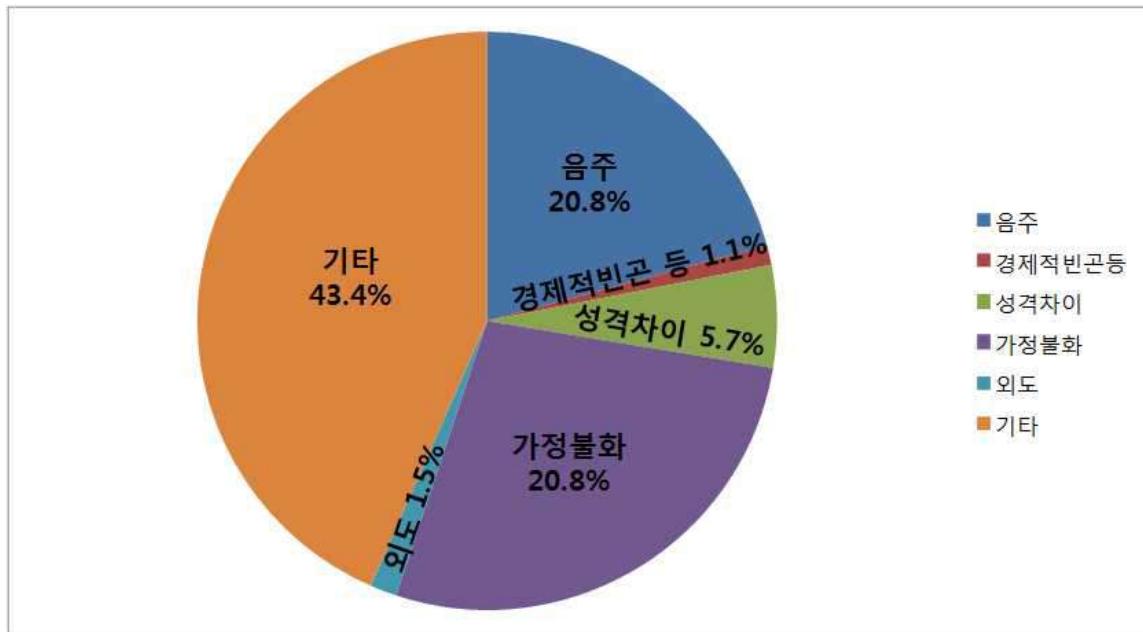
〈표 3-25〉 가정폭력 가해자 폭행 동기별

(단위 : 건)

년도별	계	음주	경제적빈곤등	성격차이	가정불화	외도	기타
10년	128	40(31.3)	11(8.6)	21(16.4)	51(39.8)	5(3.9)	0(0.0)
11년	56	10(17.9)	0(0.0)	9(16.1)	37(66.1)	0(0.0)	0(0.0)
12년	101	13(12.9)	28(27.7)	0(0.0)	55(54.5)	5(5.0)	0(0.0)
13년	325	58(17.8)	9(2.8)	35(10.8)	201(61.8)	14(4.3)	8(2.5)
14년	301	83(27.6)	1(0.3)	1(0.3)	64(21.3)	4(1.3)	148(49.2)
15년(5월현재)	265	55(20.8)	3(1.1)	15(5.7)	73(27.5)	4(1.5)	115(43.4)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그림 3-7〉 가정폭력 가해자 폭행 동기별



-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인원은 늘어나고 있으나 재범률은 감소추세로 나타남. 이는 2013년 이후 가정폭력 사건접수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표 3-26〉 가정폭력 가해자 재범 현황

(단위 : 명, %)

년도	재범인원	재범율(%)
10년	18	14.1
11년	31	55.4
12년	29	28.7
13년	28	8.6
14년 9월	34	11.3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 제주 보호관찰소 성폭력·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현황
  - 제주지역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를 위한 수강명령인원 또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수강명령을 받은 가해자의 증가폭은 높으나 수강명령을 종료하지 못한 수강자가 상당 수 있어 전문 강사와 시설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27〉 제주보호관찰소 성폭력·가정폭력 수강자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성폭력법		아청법		벌금(이수)				성폭력범 누계인원		기폭	
	접수	종료	접수	종료	접수	종료	접수	종료	접수계	종료 계	접수	종료
13년	19	7	10	5	4	0	6	2	39	14	4	2
14년	62	31	22	10	61	36	15	13	160	90	75	39
15년(1~5)	43	20	20	9	46	31	6	6	115	66	72	54

자료 : 제주보호관찰소 내부자료. 2015

#### ○ 제주 여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기관

- 2015년 9월 현재 제주 보호관찰소에 여성폭력 가해자로 접수된 수강자의 수 강명령 기관은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84.2%)이 많고, 검찰의 처분은 15.8%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는 법원의 처분이 63.5%, 검찰의 처분으로 가해자 교육을 받는 경우가 36.5%를 차지하여,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에 비하여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고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음

〈표 3-28〉 제주 여성폭력 가해자 수강 명령 기관

(단위 : 명)

년도	성폭력				가정폭력		
	접수	명령기관		접수	명령기관		
		법원	검찰		법원	검찰	
13년	39	-	-	4	-	-	
14년	160	-	-	75	-	-	
15년(1~9)	120	101(84.2)	19 (15.8)	96	61(63.5)	35(36.5)	

자료 : 제주 보호관찰소 내부자료 2015.

## 나. 성폭력 가해자 지원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현황 (제주시청 내부자료 2015)
  - 대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자
  - 내용 : 개별 교정·치료 상담, 집단상담, 알코올 치료, 사이코드라마 등
  - 참여인원(2014) : 22명

## 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현황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관련 지자체 지원 (제주시청 내부자료 2015)
  -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처분자,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기타 상담소의 경찰 등 유관기관 의뢰, 상담과정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
  - 내용 :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 정신과 치료 등
  - 참여인원(2014) : 150명(상담소 3개소)

## 5. 예방교육 현황

### 가. 기본계획 수립

- 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유치원, 어린이집은 성폭력예방교육만 해당), 공직유관기관 등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의무실시
- 기본계획 수립

- 제주지역의 폭력예방 교육 의무대상기관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총 278개 기관임
-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율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97.1%)로 가장 높고 성매매 예방교육(95.7%), 성폭력 예방교육이 (73.4%)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기본계획 수립률을 보면 각급학교(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모두 98% 이상)가 국가기관에 비해 높은 기본계획 수립률을 보이고 있음
- 성폭력 예방교육만 실시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91.5%)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어린이집(59.7%)정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표 3-29〉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수립

(단위 : 개, 개, %)

구분	교육 대상 기관(a)	성희롱예방교육		교육 대상 기관(a)	성매매예방교육		교육 대상 기관(a)	성폭력예방교육	
		수립(b)	수립률 (b/a)		수립(b)	수립률 (b/a)		수립(b)	수립률 (b/a)
전체	278	270	97.1	278	266	95.7	816	599	73.4
국가기관	86	79	91.9	86	77	89.5	86	64	74.4
각급학교	192	191	99.5	192	189	98.4	192	191	99.5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71	65	91.5
	어린이집						467	279	59.7
	총계						538	344	63.9

## 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및 횟수

### ○ 제주지역 폭력 예방교육 현황

-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 기관은 총 816 기관으로 국가기관이 86개 기관, 각급학교 192개 기관, 어린이집이 538개 기관이고 모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였음 (여성가족부 2013)

### ○ 유형별 폭력 예방교육 실시율

- 유형별 예방교육 실시율은 전체적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예방교육 97.8%로 거의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예방교육은 80.8%만 실시하고 있음
- 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보다는 각급학교에서 예방교육 실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율(94.2%) 보다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은 약간 낮은 편임(88.4%)

〈표 3-30〉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단위 : 개, 개, %)

구분	교육대상 기관(a) 실시 기관(b)	성희롱예방교육		교육 대상 기관(a) 실시 기관(b)	성매매예방교육		교육대상 기관(a) 실시 기관(b)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률 (b/a)	실시 률 (b/a)		실시 률 (b/a)	실시 률 (b/a)		실시 률 (b/a)	실시 률 (b/a)
전체	278	272	97.8	278	272	97.8	816	659	80.8
국가기관	86	81	94.2	86	81	94.2	86	76	88.4
각급학교	192	191	99.5	192	191	99.5	192	191	99.5
유치원 및 어린이집							538	392	72.9

### ○ 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

- 제주지역 폭력 예방교육 유형별 연간 평균실시 횟수는 전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1.93회, 성매매 예방교육이 1.53회, 성폭력 예방교육은 2.41회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1.59회)을 가장 적게 실시하였고 각급 학교는 성매매 예방교육(1.45회)을 가장 적게 실시했음

〈표 3-31〉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횟수

(단위 : 개, 회)

구분	총교육 대상 기관	교육 대상 기관	유형			평균실시횟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전체	816	278	272	272	658	1.93	1.53	2.41
국기기관	86	86	81	81	76	2.02	1.73	1.59
각급학교	192	192	191	191	191	1.89	1.45	1.91
유치원 및 어린이집	538				392			2.81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성폭력예방교육만 의무임.

주 : 여성가족부 2013년 현황자료(예방교육 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

#### 다. 폭력예방교육 방법 및 직원참여율

##### ○ 폭력 예방교육 방법

- 교육방법은 전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58.6%)이 가장 많았고 시청각교육(33.2%), 사이버 교육(5.0%)은 극히 낮은 비율을 나타냄
- 국가기관은 전문가에 의한 교육은 평균보다 낮은 45.5%이나 시청각교육은 평균보다 높은 50.9%를 차지해 시청각교육의 비중이 높았음
- 반면 각급 학교는 전문가교육 비중이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32〉 유형별 교육방법

(단위 : %)

구분	전문가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평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평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평균
전체	65.1	51.1	59.6	58.6	32.0	45.2	22.3	33.2	2.9	3.7	8.3	5.0
국기기관	54.3	43.2	32.9	43.5	45.7	55.6	51.3	50.9	0.0	1.2	6.6	2.6
각급학교	69.6	54.5	52.9	59.0	26.2	40.8	17.3	28.1	4.2	4.7	11.0	6.6
어린이집			68.1	68.1			19.1	68.1			7.4	7.4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성폭력예방교육만 의무임.

주 : 여성가족부 2013년 현황자료(예방교육 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

- 예방교육을 전문가의 강의로 실시하는 비율은 유형별로는 성희롱 예방교육(65.1%)이 가장 높았음
- 각급학교에 비해 국가기관 등에서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전문가에 의한 교육(32.9%)이 가장 낮음
- 주목할 것은 고등학교에서 전문가 예방교육 비율이 아주 낮음(성희롱 44.8%, 성매매 31.0%, 성폭력 20.7%)

〈표 3-33〉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방법 – 전문가 교육

(단위 : 개, 수, %)

구분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교육 실시 (a)	전문가교 육 횟수(b)	전문가교 육 비율 (b/a)	교육 실시 (a)	전문가 교육 횟수(b)	전문가 교육 비율 (b/a)	교육 실시 (a)	전문가 교육 횟수(b)	전문가 교육 비율 (b/a)
전체	272	177	65.1	272	139	51.1	659	393	59.6
국 가 기 관 등	행정부	25	15	60.0	25	11	44.0	24	8
	사법부	1	1	100.0	1	1	100.0	1	100.0
	지방의회	1	1	100.0	1	1	100.0	1	100.0
	광역	12	5	41.7	12	4	33.3	12	3
	기초	2	2	100.0	2		0.0	2	
	공직유관	28	15	53.6	28	13	46.4	24	9
	지역교육청	2	2	100.0	2	2	100.0	2	2
	시도교육청	9	3	33.3	9	3	33.3	9	1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		0.0	1		0.0	1	0.0
각 급 학 교	소계	81	44	54.3	81	35	43.2	76	25
	초등학교	110	88	80.0	110	72	65.5	110	70
	중학교	44	25	56.8	44	17	38.6	44	19
	고등학교	29	13	44.8	29	9	31.0	29	6
	대학교	5	5	100.0	5	5	100.0	5	5
	특수학교	3	2	66.7	3	1	33.3	3	1
어 린 이 집	소계	191	133	69.6	191	104	54.5	191	101
	유치원							67	44
	어린이집							325	223
	소계							392	267
									68.1

주 : 여성가족부 2013 현황자료(예방교육 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

- 시청각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45.2%)이 가장 높았고, 성폭력 예방교육(22.3%)이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보다는 국가기관 등에서 시청각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교 중 고등학교가 시청각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희롱 44.8%, 성매매 58.6%. 성폭력 27.6%)

**<표 3-34>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방법 – 시청각 교육**

(단위 : 개, 수, %)

구분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교육 실시 (a)	시청각교 육 횟수(b)	시청각 교육 비율 (b/a)	교육 실시 (a)	시청각 교육 횟수(b)	시청각 교육 비율 (b/a)	교육 실시 (a)	시청각 교육 횟수(b)	시청각 교육 비율 (b/a)
전체	272	87	32.0	272	123	45.2	659	147	22.3
국가기관등	행정부	25	10	40.0	25	14	56.0	24	12
	시법부	1		0.0	1		0.0	1	0.0
	지방의회	1		0.0	1		0.0	1	0.0
	광역	12	7	58.3	12	8	66.7	12	8
	기초	2		0.0	2	2	100.0	2	2
	공직유관	28	13	46.4	28	14	50.0	24	13
	지역교육청	2		0.0	2		0.0	2	0.0
	시도교육청	9	6	66.7	9	6	66.7	9	3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	1	100.0	1	1	100.0	1	1
각급학교	소계	81	37	45.7	81	45	55.6	76	39
	초등학교	110	19	17.3	110	36	32.7	110	15
	중학교	44	17	38.6	44	24	54.5	44	9
	고등학교	29	13	44.8	29	17	58.6	29	8
	대학교	5		0.0	5		0.0	5	0.0
	특수학교	3	1	33.3	3	1	33.3	3	1
어린이집	소계	191	50	26.2	191	78	40.8	191	33
	유치원							67	14
	어린이집							325	61
어린이집	소계							392	75

주 : 여성가족부 2013 현황자료(예방교육 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

- 사이버 교육은 전체적으로 실시율이 낮아 한자리대 비율을 차지함
- 교육 유형 중에는 성폭력 예방교육(8.3%)이 가장 높음

- 기관 유형 중에는 국가기관 등 보다는 각급학교에서 더 많이 실시함. 그 중 특수학교와 고등학교가 사이버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

**<표 3-35>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방법 – 사이버 교육**

(단위 : 개, 수, %)

구분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교육 실시 (a)	사이버교 육 횟수(b)	사이버 교육 비율(b/a)	교육 실시 (a)	사이버 교육 횟수(b)	사이버 교육 비율(b/a)	교육 실시 (a)	사이버 교육 횟수(b)	사이버 교육 비율(b/a)	
전체	272	8	2.9	272	10	3.7	659	55	8.3	
국 가 기 관 등	행정부	25		0.0	25		0.0	24	2	8.3
	사법부	1		0.0	1		0.0	1		0.0
	지방의회	1		0.0	1		0.0	1		0.0
	광역	12		0.0	12		0.0	12	1	8.3
	기초	2		0.0	2		0.0	2		0.0
	공직유관	28		0.0	28	1	3.6	24	1	4.2
	지역교육청	2		0.0	2		0.0	2		0.0
	시도교육청	9		0.0	9		0.0	9	1	11.1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		0.0	1		0.0	1		0.0
각 급 학 교	소계	81	0	0.0	81	1	1.2	76	5	6.6
	초등학교	110	3	2.7	110	2	1.8	110	9	8.2
	중학교	44	2	4.5	44	3	6.8	44	5	11.4
	고등학교	29	3	10.3	29	3	10.3	29	6	20.7
	대학교	5		0.0	5		0.0	5		0.0
	특수학교	3		0.0	3	1	33.3	3	1	33.3
어 린 이 집	소계	191	8	4.2	191	9	4.7	191	21	11.0
	유치원							67	2	3.0
	어린이집							325	27	8.3
	소계							392	29	7.4

주 : 여성가족부 2013 현황자료(예방교육 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

- 내부직원이 하는 강의는 성폭력 예방교육(9.3%)에서만 나타나고 있음
- 국가기관 등(7.9%)에서 보다는 각급학교(18.8%)에서 더 많이 하고 있음
- 학교에서 내부직원이 예방교육을 하는 비율은 고등학교(31.0%), 중학교

(25.0%), 초등학교(14.5%) 순으로 나타남

〈표 3-36〉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방법 – 내부직원강의

(단위 : 개, 수, %)

구분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교육 실시 (a)	내부직원 강의횟수 (b)	내부직원 강의비율 (b/a)	교육 실시 (a)	내부직원 강의횟수 (b)	내부직원 강의비율 (b/a)	교육실시 (a)	내부직원 강의횟수( b)	내부직원 강의비율 (b/a)	
전체	272	0	0	272	0	0	659	61	9.3	
국 가 기 관 등	행정부	25		25			24	2	8.3	
	사법부	1		1			1		0.0	
	지방의회	1		1			1		0.0	
	광역	12		12			12		0.0	
	기초	2		2			2		0.0	
	공직유관	28		28			24	1	4.2	
	지역교육청	2		2			2		0.0	
	시도교육청	9		9			9	3	33.3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		1			1		0.0	
각 급 학 교	소계	81	0	0	81	0	0	76	6	7.9
	초등학교	110		110			110	16	14.5	
	중학교	44		44			44	11	25.0	
	고등학교	29		29			29	9	31.0	
	대학교	5		5			5		0.0	
	특수학교	3		3			3		0.0	
어 린 이 집	소계	191	0	0	191	0	0	191	36	18.8
	유치원						67	6	9.0	
	어린이집						325	13	4.0	
	소계						392	19	4.8	

주 : 여성가족부 2013 현황자료(예방교육 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

### ○ 유형별 직원전체 참여율

- 폭력예방교육의 직원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세 유형 모두 약 90.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
- 폭력 예방교육 유형별 직원참여율은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비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모두 직원의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7〉 유형별 직원전체 참여율

(단위 : 개, %)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	참여율	실시기관	참여율	실시기관	참여율
전체	272	94.7	272	93.5	659	94.7
국가기관	81	91.9	81	90.9	76	92.4
각급학교	191	96.0	191	94.5	191	95.2
어린이집					392	94.9

주 : 여성가족부 2013 현황자료(예방교육 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



## 제 4 장

###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 조사결과

- 1.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 2. 예방교육 인식조사



## 1. 제주지역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 가.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 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집단인 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폭력행위자 등 4개 집단으로 구성하였음
- 조사방법은 경찰,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함
- 경찰 5개소, 여성폭력 시설 및 기관 18개소에서 총 23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비논리적이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음
- 조사영역은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현황과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조사대상 모두에게 여성폭력에 대한 위기대응 및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방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여성폭력 예방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함
- 각 집단(기관종사자, 폭력피해자, 경찰, 행위자)별로 폭력 대응 시스템 현황과 욕구를 조사함
- 기관종사자 대상으로는 각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과 경찰 및 타 기관과의 협력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조사함
- 피해자 대상으로는 경찰조사경험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공공서비스에 관한 경험 및 개선방안을 조사함
- 성폭력, 가정폭력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관련 업무 현황과 사건처리과정,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을 조사함
-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아래 <표 41>와 같음

〈표 4-1〉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실태 및 욕구조사 영역과 내용

대상	조사영역	조사내용
공통	위기대응 및 기관연계방안	폭력발생시 초기대응, 연계활성화 방안
	피해자지원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피해자 지원 수요, 치료회복방안
	정책	폭력대응방안, 안전을 위한 방안, 예방 정책 등
기관종사자	기관서비스내용 및 연계현황	타 기관과의 연계현황, 연계방법 및 기관, 피해자 연계시 어려움 등
피해자	경찰조사경험	경찰신고주체, 시기, 경찰조치내용
		사건처리여부, 수사과정경험, 수사결과, 경찰조치 만족여부 등
	공공서비스 경험	지원내용, 서비스만족도, 연계 경험, 연계서비스 내용, 서비스 만족도 공공서비스기관 인지, 인지경로, 이용경험
경찰	업무현황	담당사건 건수, 유형, 체포건수
	여성폭력 인식 및 사건처리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인식
		현장출동시 어려움, 응급조치·임시조치 인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여부 등
	연계 및 협력	지역내 협력기관 인지, 피해자 연계정도, 연계시 어려움, 효율적 조사방법 등

##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조사의 응답자 분포는 폭력피해자 70명(32.4%), 기관종사자 84명(38.9%), 경찰 44명(20.4%), 폭력행위자 18명(8.3%)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54명(25%), 여성 162명(75%)임. 연령별로는 10대이하 17명(7.9%), 20대 26명(12.0%), 30대 58명(26.9%), 40대 79명(36.6%), 50대 이상이 32명(14.8%)이고, 연령에서 무응답 4명(1.9%)임
- 시설종사자인 경우는 기관과 직위별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담기관 32명(38.1%), 보호시설 29명(34.5%), 1366센터와 해바라기 센터 등 23명(27.4%)이었으며, 직위별로 보면, 기관장 또는 시설장 11명(13.1%), 중간관리자 7명(8.3%), 상담원 53명(63.1%), 기타 12명(14.3%)으로 대부분 상담원이었으며, 무응답이 1명(1.2%)임

〈표 4-2〉 조사표본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구성		전체		폭력 피해자		기관 종사자		경찰		폭력 행위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구분	폭력 피해자	70	(32.4)								
	기관 종사자	84	(38.9)								
	경찰	44	(20.4)								
	폭력 행위자	18	(8.3)								
성별	여성	162	(75.0)	68	(97.1)	80	(95.2)	9	(20.5)	5	(27.8)
	남성	54	(25.0)	2	(2.9)	4	(4.8)	35	(79.5)	13	(72.2)
연령	10대 이하	17	(7.9)	17	(24.3)						
	20대	26	(12.0)	4	(5.7)	13	(15.5)	9	(20.5)		
	30대	58	(26.9)	18	(25.7)	21	(25.0)	16	(36.4)	3	(16.7)
	40대	79	(36.6)	19	(27.1)	33	(39.3)	18	(40.9)	9	(50.0)
	50대 이상	32	(14.8)	10	(14.3)	16	(19.0)	1	(2.3)	5	(27.8)
	무응답	4	(1.9)	2	(2.9)	1	(1.2)			1	(5.6)
기관	상담기관	32	(38.1)			32	(38.1)				
	보호시설	29	(34.5)			29	(34.5)				
	센터(1366, 해바리기 등)	23	(27.4)			23	(27.4)				
직위	기관장 또는 시설장	11	(13.1)			11	(13.1)				
	중간관리자 (사무국장, 총무, 과장)	7	(8.3)			7	(8.3)				
	상담원 (사회복지사)	53	(63.1)			53	(63.1)				
	기타	12	(14.3)			12	(14.3)				
	무응답	1	(1.2)			1	(1.2)				

## 다. 위기대응

### 1) 여성폭력에 대한 위험도

-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관한 제주지역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가정폭력(90.9%)이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83.8%), 성매매(79.7%) 순으로 나타나 관련업무 종사자 및 피해자들이 여성폭력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성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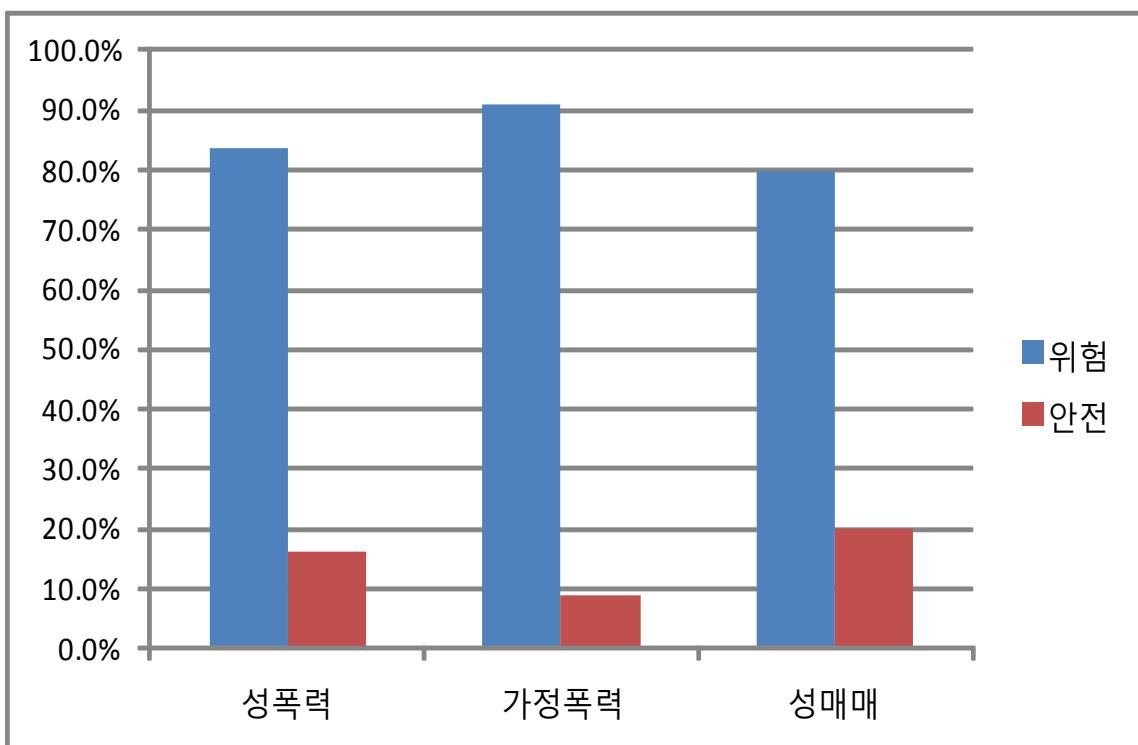
매에 대한 위험도를 가장 낮다고 생각함

〈표 4-3〉 여성폭력 관련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도 전체 비교

(단위 : 명, %)

	매우 위험	조금위험	계	안전	매우 안전	계
성폭력	66 (31.6)	109 (52.2)	175 (83.8)	31 (14.8)	3 (1.4)	34 (16.2)
가정폭력	88 (42.1)	102 (48.8)	190 (90.9)	18 (8.6)	1 (0.5)	19 (9.1)
성매매	60 (30.5)	97 (49.2)	157 (79.7)	35 (17.8)	5 (2.5)	40 (20.3)

〈그림 4-1〉 여성폭력 관련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도 전체 비교



○ 성폭력 위험도

- 성폭력이 가장 위험하다는 의견은 기관 종사자(100%)가 가장 높았는데 모두

가 위험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폭력피해자(92.4%) 역시 성폭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음

- 반면 폭력행위자(47.1%)와 경찰(44.2%)의 상당수는 성폭력에 대한 위험도에 있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표 4-4〉 제주지역 성폭력에 대한 위험도 – 성폭력

(단위 : 명, %)

	매우 위험	조금위험	계	안전	매우 안전	계	$\chi^2$
전체	66 (31.6)	109 (52.2)	175 (83.8)	31 (14.8)	3 (1.4)	34 (16.2)	
폭력 피해자	26 (39.4)	35 (53.0)	61 (92.4)	4 (6.1)	1 (1.5)	5 (7.6)	
기관 종사자	37 (44.6)	46 (55.4)	83 (100.0)	0 (0.0)	0 (0.0)	0 (0.0)	
경찰	2 (4.7)	22 (51.2)	24 (55.9)	19 (44.2)	0 (0.0)	19 (44.2)	
폭력 행위자	1 (5.9)	6 (35.3)	7 (41.2)	8 (47.1)	2 (11.8)	10 (58.9)	87.325***

주 : \*p<.05, \*\*p<.01, \*\*\*p<.001

### ○ 가정폭력 위험도

- 가정폭력에 대한 위험도 인식은 폭력피해자(96.9%), 기관종사자(98.9%), 경찰(75.0%)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위험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 특히 폭력피해자와 기관종사자는 매우 위험이 모두 50.0%를 넘었고, 경찰은 대부분이 조금 위험(68.2%) 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표 4-5〉 여성폭력 관련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도 – 가정폭력

(단위 : 명, %)

	매우 위험	조금위험	계	안전	매우 안전	계	$\chi^2$
전체	88 (42.1)	102 (48.8)	190 (90.9)	18 (8.6)	1 (0.5)	19 (9.1)	
구분	폭력 피해자	35 (54.7)	27 (42.2)	62 (96.9)	2 (3.1)	0 (0.0)	3.1
	기관 종사자	47 (56.0)	36 (42.9)	83 (98.9)	1 (1.2)	0 (0.0)	(1.2)
	경찰	3 (6.8)	30 (68.2)	33 (75.0)	11 (25.0)	0 (0.0)	11 (25)
	폭력 행위자	3 (17.6)	9 (52.9)	12 (70.5)	4 (23.5)	1 (5.9)	5 (29.4)

## 2) 경찰의 인식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80% 이상이 까다롭거나(86.0%) 부담스럽게 인식(88.4%)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81.4%)하다는 의견이 많음
- 반면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가장 낮은 비율인 7.0%을 나타냈고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44.2%)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48.9%)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 담당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의 인식개선이 필요함

〈표 4-6〉 경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계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총계
성폭력 사건은 까다롭다	0 (0.0)	6 (14.0)	6 (14.0)	20 (46.5)	17 (39.5)	37 (86.0)	43 (100.0)
성폭력 사건은 부담스럽다	0 (0.0)	5 (11.6)	5 (11.6)	24 (55.8)	14 (32.6)	38 (88.4)	43 (100.0)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3 (7.0)	19 (44.2)	22 (51.2)	19 (44.2)	2 (4.7)	21 (48.9)	43 (100.0)
성폭력 사건은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0 (0.0)	12 (27.9)	12 (27.9)	26 (60.5)	5 (11.6)	31 (72.1)	43 (100.0)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26 (60.5)	14 (32.6)	40 (93.1)	3 (7.0)	0 (0.0)	3 (7.0)	43 (100.0)
성폭력 사건은 법적 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다	2 (4.7)	6 (14.0)	8 (18.7)	19 (44.2)	16 (37.2)	35 (81.4)	43 (100.0)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한다	5 (11.6)	19 (44.2)	24 (55.8)	18 (41.9)	1 (2.3)	19 (44.2)	43 (100.0)

-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까다롭다'(71.4%), '부담스럽다'(64.2%)라고 인식하며 가정폭력 사건보다 성폭력 사건을 더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50%),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59.5%)는 의견이 절반정도로 나타나는가 하면 부부폭력 사건은 가정내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의견도 (54.7%)를 보이고 있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초기대응에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할 우려가 있음

〈표 4-7〉 경찰의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계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총계
부부폭력사건은 까다롭다	3 (7.1)	9 (21.4)	12 (28.5)	22 (52.4)	8 (19.0)	30 (71.4)	42 (100.0)
부부폭력 사건은 부담스럽다	3 (7.1)	12 (28.6)	15 (35.7)	19 (45.2)	8 (19.0)	27 (64.2)	42 (100.0)
부부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3 (7.1)	18 (42.9)	21 (50.0)	16 (38.1)	5 (11.9)	21 (50.0)	42 (100.0)
부부폭력 사건은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	6 (14.3)	19 (45.2)	25 (59.5)	12 (28.6)	5 (11.9)	17 (40.5)	42 (100.0)
부부폭력 사건은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18 (42.9)	19 (45.2)	37 (88.1)	5 (11.9)	0 (0.0)	5 (11.9)	42 (100.0)
부부폭력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다	2 (4.8)	17 (40.5)	19 (45.3)	20 (47.6)	3 (7.1)	23 (54.7)	42 (100.0)
부부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한다	4 (9.5)	13 (31.0)	17 (40.5)	24 (57.1)	1 (2.4)	25 (59.5)	42 (100.0)
부부폭력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11 (26.2)	18 (42.9)	29 (69.1)	12 (28.6)	1 (2.4)	13 (31)	42 (100.0)

### 3) 성·가정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 ○ 성·가정폭력 발생 시 필요한 초기 대응

- 성·가정 폭력 발생 시 필요한 초기대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응급조치 강화 (39.1%)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그 다음으로 경찰의 신속한 출동 (20.9%), 경찰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수사 착수 (20.0%)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구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신속한 출동(30.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응급조치 강화(24.6%), 경찰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수사착수 (20.3%)로 나타남. 그러나 기관종사자와 경찰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응급조치 강화가 (50.0%),(47.7%)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관종사자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19.0%), 경찰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수사착수(15.5%)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경찰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수사착수(29.5%), 경찰의 신속한 출동(15.9%)으로 나타남

〈표 4-8〉 성·가정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단위:명, %)

	경찰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수사착수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응급조치 강화	피해자에게 상담소/보호 시설 등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경찰의 신속한 출동	기타	총계	$\chi^2$
전체	43 (20.0)	84 (39.1)	19 (8.8)	18 (8.4)	45 (20.9)	6 (2.8)	215 (100.0)	
폭력 피해자	14 (20.3)	17 (24.6)	10 (14.5)	6 (8.7)	21 (30.4)	1 (1.4)	69 (100.0)	
기관 종사자	13 (15.5)	42 (50.0)	5 (6.0)	6 (7.1)	16 (19.0)	2 (2.4)	84 (100.0)	45.714**
경찰	13 (29.5)	21 (47.7)	2 (4.5)	1 (2.3)	7 (15.9)	0 (0.0)	44 (100.0)	
폭력 행위자	3 (16.7)	4 (22.2)	2 (11.1)	5 (27.8)	1 (5.6)	3 (16.7)	18 (100.0)	

주 : \*p<.05, \*\*p<.01, \*\*\*p<.001

○ 여성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어려움

- 경찰이 현장 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에 관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입장 변화 및 조사 비협조(47.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 및 안전조치(36.4%)로 나타나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피해자 보호 및 안전조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찰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표 4-9〉 여성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어려운 점

(단위 : 명, %)

구분	가해자의 완강한 거부 및 조사 비협조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의 어려움	피해자 보호 및 안전조 치	성가정폭력 관련 지역사회 기관 연락 및 협조의 어려움	피해자의 임장 변화 및 조사 비협조	여성폭 력 전문지 식의 부족	기타	총계
사례(명)	5	1	16	1	21	0	0	44
비율(%)	(11.4)	(2.3)	(36.4)	(2.3)	(47.7)	(0.0)	(0.0)	(100.0)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청 할 수 있는 응급조치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경찰의 응급조치 실시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담당 경찰 대부분이 피해자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70.5%)라고 응답함
- 성별로는 주로 남성 경찰관이 피해자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한 경험이 80%로 나타났으며, 여성경찰관은 피해자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것이 33.3%에 그치고 있어 주로 여성 경찰관이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추측됨

〈표 4-10〉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청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단위 : 명, %)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잘 알고 있으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알고 있지 못하다	총계
전체	31 (70.5)	12 (27.3)	1 (2.3)	0 (0.0)	44 (100.0)
성별	여성	3 (33.3)	5 (55.6)	1 (11.1)	9 (100.0)
	남성	28 (80.0)	7 (20.0)	0 (0.0)	35 (100.0)

○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 인식

-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요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70.5%가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위한 적이 있다고 응

답하였고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 건도 없어 경찰이 부부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의견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성 경찰(33.3%) 보다는 남성경찰(80.0%)이 임시조치를 취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1>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청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인식

(단위 : 명, %)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잘 알고 있으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알고 있지 못하다	총계
전체		31 (70.5)	13 (29.5)	0 (0.0)	0 (0.0)	44 (100.0)
성별	여성	3 (33.3)	6 (66.7)	0 (0.0)	0 (0.0)	9 (100.0)
	남성	28 (80.0)	7 (20.0)	0 (0.0)	0 (0.0)	35 (100.0)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연락처 인지

- 여성폭력 담당 경찰 대부분은 사건 발생 시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위치나 연락처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응답률은 97.7%로 나타남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타 기관 연계정도

- 여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는 매우 잘되고 있다(25.0%)와 잘되는 편이다(65.9%)를 합하여 90%이상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잘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9.1%나 차지함

〈표 4-12〉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타 기관 연계 정도

(단위 : 명, %)

	매우잘되고 있다	잘되는 편이다	계	잘되지 않는편이다	전혀되지 않고 있다	계	총계
사례수(명)	11	29	40	4	0	4	44
비율(%)	(25.0)	(65.9)	(90.9)	(9.1)	(0.0)	(9.1)	(100.0)

○ 여성폭력 사건 대응 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

- 경찰이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음주 및 정신이상자의 경우 보낼 곳이 없어서(44.2%), 한밤중에 연계할 곳이 없는 경우(30.2%)로 나타나 초기대응에서 피해자의 연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 및 정신이상자의 경우 폭력 피해자 시설(1366센터나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수용할 수 없어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함

〈표 4-13〉 여성폭력 사건 대응 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

	한밤중에 연계할 곳이 없는 경우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위치 및 연락처를 몰라서	긴급임시 조치에 대한 실적 때문에	음주 및 정신이상자 의 경우 보낼 곳이 없어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불친절 때문에	피해자가 연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총계
전체	13 (30.2)	2 (4.7)	0 (0.0)	19 (44.2)	1 (2.3)	8 (18.6)	43 (100.0)
성별	여성	5 (55.6)	1 (11.1)	0 (0.0)	1 (11.1)	1 (11.1)	9 (100.0)
	남성	8 (23.5)	1 (2.9)	0 (0.0)	18 (52.9)	0 (0.0)	34 (100.0)

4) 경찰의 조치에 대한 피해자 의견

○ 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주체

-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피해 시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질문에서 본인이 57.7%, 본인 외가 42.3%를 보여 본인 이외의 신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본인이 신고한 경우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10대 이하와 20대에서 가장 많아 연령에 따라 신고주체가 다름을 알 수 있음

〈표 4-14〉 폭력사건에 대한 신고 주체

(단위 : 명, %)

	본인	본인외	총계
전체	30 (57.7)	22 (42.3)	52 (100.0)
연령	10대 이하	3 (23.1)	10 (76.9)
	20대	0 (0.0)	2 (100.0)
	30대	11 (68.8)	5 (31.3)
	40대	11 (84.6)	2 (15.4)
	50대 이상	3 (50.0)	3 (50.0)

### ○ 폭력신고 시기

- 폭력 신고 시기를 살펴보면 피해 후 즉시 신고한 비율이 59.6%, 피해 얼마 후에 신고한 비율이 40.4%로 나타나 피해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수 차지함

〈표 4-15〉 폭력 신고 시기

(단위 : 명, %)

	피해 후 즉시(1일 이내)	피해 얼마 후	총계
전체	31 (59.6)	21 (40.4)	52 (100.0)

### ○ 신고 후 경찰의 조치

-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관해 조사한 결과 직접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37.3%)가 가장 많았음

-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7.6%로 동일하게 나타남
- 반면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3.7%나 차지해 피해자의 상당수는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음
- 특히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7.8%로 나타나 경찰이 여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만 하고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는 의견을 뒷받침 하고 있음

〈표 4-16〉 신고 후 경찰 조치

(단위 : 명, %)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직접 방문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다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이 해결되었다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다	기타	총계
사례(명)	7	19	9	9	4	3	51
비율(%)	(13.7)	(37.3)	(17.6)	(17.6)	(7.8)	(5.9)	(100.0)

### ○ 사건처리 거부 이유

- 여성 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거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족해체를 원하지 않아서'와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36.4%)을 나타냄
- 다음으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18.2%,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9.1%를 차지함

〈표 4-17〉 사건 처리 거부 이유

(단위 : 명, %)

	가족해체를 원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가해자와 화해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타	총계
사례(명)	8	2	0	4	0	8	22
비율(%)	(36.4)	(9.1)	(0.0)	(18.2)	(0.0)	(36.4)	(100.0)

○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불편을 느낀 경우

-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편함을 느낀 경우는 '없다'(54.2%)가 가장 높았으나, 피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26.8%), 기타 (9.8%), '질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경우(7.3%)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심각하게 맞지도 않았는데 왜 신고했냐는 질문이 있어 불쾌감을 느낀 경우도 있었음

<표 4-18>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불편을 느낀 경우

(단위 : 명, %)

	없다	조사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	질문에 불쾌감을 느꼈다	경찰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했다	기타	총계
사례(명)	21	11	3	2	4	41
비율(%)	(54.2)	(26.8)	(7.3)	(4.9)	(9.8)	(100.0)

○ 경찰의 수사결과

-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의 응답은 기타가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가 23.7%를 차지하였고,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21.1%에 불과함
- 소수의 의견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폭력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사건접수가 되지 않고 약식 기소되는 등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조사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표 4-19〉 경찰의 수사 결과

(단위 : 명, %)

	가해자가 처벌받았다	고소를 취하하였다	무고죄로 역고소 당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폭력이 입증되지 않았다	기타	총계
시례(명)	8	9	0	4	17	38
비율(%)	(21.1)	(23.7)	(0.0)	(10.5)	(44.7)	(100.0)

○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이유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유에 관한 조사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가해자와의 합의(47.4%)로 나타남
- 그러나 가해자의 협박(21.1%)이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15.8%) 고소를 취하했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음

〈표 4-20〉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이유

(단위 : 명, %)

	가해자 와의 합의	피해 입증이 어려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해자 의 협박	경찰의 합의 권유	수사과 정의 어려움	기타	총계
시례(명)	9	0	1	3	4	0	0	2	19
비율(%)	(47.4)	(0.0)	(5.3)	(15.8)	(21.1)	(0.0)	(0.0)	(10.5)	(100.0)

○ 경찰조치 만족여부

-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는지에 관한 조사에서 피해자의 76.1%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함
- 반면 불만족하였다는 응답은 23.8%를 차지함

〈표 4-21〉 경찰 조치 만족 여부

(단위 : 명, %)

	매우 불만족 하였다	불만족한 편이었다	계	만족한 편이다	매우 만족 하였다	계	총계
사례(명)	3	7	10	29	3	32	42
비율(%)	(7.1)	(16.7)	(23.8)	(69.0)	(7.1)	(76.1)	(100.0)

○ 경찰의 조치에 불만족한 이유

- 경찰의 조치에 불만족한 이유는 사건진행 과정을 잘 알려주지 않거나 수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았음. 기타 의견으로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거나 가정폭력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가정사로 취급하고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여성폭력 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여성폭력 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피해자 대상 조사에서 경찰과 지원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사건해결을 돋는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20.5%로 높게 나타남
- 성·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6%로 나타났고, 전담경찰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1%를 나타냄

〈표 4-22〉 여성폭력 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명, %)

	가정폭력사건해결을돕는외부전문기의 활용(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성·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경찰의 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명령 의무화	전담 경찰관 인력의 증원	총계
사례(명)	9	6	16	6	3	4	44
비율(%)	(20.5)	(13.6)	(36.4)	(13.6)	(6.8)	(9.1)	(100.0)

##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 여성폭력 피해자의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 ○ 공공서비스 시설을 알게 된 경위

-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을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찰·법원 등 사법기관(29.8%), 친구·친지등(29.8%)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TV/라디오 공익광고(14.0%)와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교육(10.5%)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해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전히 사적인 관계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이나 홍보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표 4-23〉 공공 서비스 시설을 알게 된 경위

(단위 : 명, %)

	TV/라디오 공익광고	친구, 친지 등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	여성 단체 소식지	인터넷 등 통신매체	학교/사회 교육 기관의 교육	기타	총계
사례(명)	8	17	17	4	1	6	4	57
비율(%)	(14.0)	(29.8)	(29.8)	(7.0)	(1.8)	(10.5)	(7.0)	(100)

#### ○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면상담(84.1%), 심리치료(76.6%)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그밖에 전화상담(52.2%), 의료서비스(51.3%), 법률상담연계(48.8%), 집단상담(46.2%) 및 가족상담(43.2%) 순으로 나타남. 이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나 해바라기센터 이용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으로 추측됨

〈표 4-24〉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명, %)

구분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대면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법률상담지원연계	수사동행서비스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소개를 통한 치료	폭력대비교육	피해자간소모임 혹은 진단활동	사회복지서비스정보제공및소개	취업지원및직업련습	가족면담및가족상담
있다	7 (17.5)	24 (52.2)	37 (84.1)	36 (76.6)	18 (46.2)	21 (48.8)	12 (33.3)	20 (51.3)	15 (38.5)	12 (33.3)	10 (27.8)	9 (23.7)	16 (43.2)
없다	33 (82.5)	22 (47.8)	7 (15.9)	11 (23.4)	21 (53.8)	22 (51.2)	24 (66.7)	19 (48.7)	24 (61.5)	24 (66.7)	26 (72.2)	29 (76.3)	21 (56.8)

○ 공공서비스 시설에서 도움 받은 내용

- 피해자가 공공서비스 시설에서 도움 받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긴급보호나 보호시설 안내가 가장 많고(22.3%), 경찰에 연결(20.7%), 전문상담기관 연결(18.1%) 순으로 나타남
- 긴급현장출동 및 이송 지원(4.3%)이나 전화상담(9.0%) 지원 이용률이 낮은 것은 위기대응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기관별로는 1366센터에서는 긴급보호나 보호시설 안내(31.3%)가 가장 많고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경찰에 연결(34.6%),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는 긴급보호나 시설안내(23.2%)가 많았음
- 특히 1366센터의 긴급현장출동 및 이송 서비스 이용률이 7.5%인데 반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의 긴급현장출동 및 이송 서비스 이용률이 한 건도 없는 등 여성폭력 위기대응 기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함
- 공공서비스 시설 중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피해자의 이송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 부분에 경찰과의 연계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4-25〉 공공서비스 시설에서 도움 받은 내용

(단위 : 명, %)

	긴급보호나 피해자보 호시설 안내	경찰에 연결	긴급현 장 출동 및 이송	전문상 담기관 연결	법률 기관 연결	의료기 관 연결	전화 상담	기타	총계
총계	42 (22.3)	39 (20.7)	8 (4.3)	34 (18.1)	20 (10.6)	21 (11.2)	17 (9.0)	7 (3.7)	188 (100.0)
1366	21 (31.3)	10 (14.9)	5 (7.5)	14 (20.9)	3 (4.5)	5 (7.5)	7 (10.4)	2 (3.0)	67 (100.0)
해비라기	5 (9.6)	18 (34.6)	0 (0.0)	6 (11.5)	6 (11.5)	10 (19.2)	4 (7.7)	3 (5.8)	52 (100.0)
상담소 혹은 쉼터	16 (23.2)	11 (15.9)	3 (4.3)	14 (20.3)	11 (15.9)	6 (8.7)	6 (8.7)	2 (2.9)	69 (100.0)

주: 중복응답

○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따른 만족도

-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한 결과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대면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피해자간 소모임 또는 집단 활동 부분에서 모두 만족하다고 응답함
-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분야는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13.3%)과 가족면담 및 상담(13.3%) 부분, 그리고 온라인 상담(12.5%) 순으로 나타남

〈표 4-26〉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따른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대면 상담	심리 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	법률 상담 지원 연계	수사 동행 서비스	치료비 지원, 의료 기관 소개를 통한 치료	폭력 대비 교육	피해자 간 소모 임혹은 집단 활동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소개	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 등	가족 면담 및 가족 상담
매우 만족	5 (31.3)	9 (31.0)	14 (36.8)	13 (39.4)	7 (41.2)	7 (30.4)	6 (33.3)	6 (33.3)	9 (50.0)	9 (52.9)	7 (46.7)	6 (40.0)	6 (40.0)
대체로 만족	9 (56.3)	18 (62.1)	24 (63.2)	20 (60.6)	10 (58.8)	15 (65.2)	11 (61.1)	11 (61.1)	8 (44.4)	8 (47.1)	7 (46.7)	7 (46.7)	7 (46.7)
소개	(87.6)	(88.1)	(100)	(100)	(100)	(95.6)	(94.4)	(94.4)	(94.4)	(100)	(93.4)	(86.7)	(86.7)
대체로 불만족	2 (12.5)	2 (6.9)	0 (0.0)	0 (0.0)	0 (0.0)	1 (4.3)	1 (5.6)	1 (5.6)	1 (5.6)	0 (0.0)	1 (6.7)	2 (13.3)	2 (13.3)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 2) 피해자 연계 현황

### ○ 연계서비스 이용 현황

-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의 연계 서비스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자의 60.7%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냄

### ○ 기관 간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피해자가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기타가 가장 많았으나, 구체적 이유에 대한 응답 가운데는 '소개를 받은 기관에 대한 선입견 때문'(18.8%)과, '집을 떠나는 것이 불편'(17.1%)해서로 나타나 보호시설 입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음

〈표 4-27〉 기관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소개를 받은 기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이 불편해서	해당기관 에서 불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 때문에	기족 및 주변인들 과의 관계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연계기 관을 소개받 지 못해서	기타	총계
전체	22 (18.8)	20 (17.1)	9 (7.7)	11 (9.4)	12 (10.3)	15 (12.8)	26 (22.2)	2 (1.7)

○ 연계서비스에 대한 평가

- 종사자 대상으로 기관별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폭력 보호시설(93.9%)과 상담소(92.7%)에 대한 연계가 잘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연계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률이 낮은 곳은 해바라기 센터(67.6%)와 행정기관(79.3%), 전담의료기관(81.5%), 수사법률기관(86.3%)로 나타남
- 전담의료기관과 수사법률기관, 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여성폭력 전문기관간의 연계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해바라기 센터와의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4-28〉 연계서비스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매우 잘됨	잘되는 편임	계	잘 되지 않음	전혀 안됨	계	총계
1366	22 (27.5)	49 (61.3)	71 (88.8)	9 (11.3)	0 (0.0)	9 (11.3)	80 (100.0)
여성폭력보호시설	25 (30.9)	51 (63.0)	76 (93.9)	5 (6.2)	0 (0.0)	5 (6.2)	81 (100.0)
여성폭력상담소	19 (23.2)	57 (69.5)	76 (92.7)	6 (7.3)	0 (0.0)	6 (7.3)	82 (100.0)
해비리기센터	9 (11.3)	45 (56.3)	54 (67.6)	16 (20.0)	10 (12.5)	26 (32.5)	80 (100.0)
수사·법률기관	14 (17.5)	55 (68.8)	69 (86.3)	10 (12.5)	1 (1.3)	11 (13.8)	80 (100.0)
전담의료기관	12 (14.8)	54 (66.7)	66 (81.5)	11 (13.6)	4 (4.9)	15 (18.5)	81 (100.0)
행정기관(읍면동, 시도 )담당자	8 (9.8)	57 (69.5)	65 (79.3)	16 (19.5)	1 (1.2)	17 (20.7)	82 (100.0)

○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누어 조사함
- 연계가 실무자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유지된다는 의견은 공적기관(17.3%) 보다는 민간기관(25.3%)과의 연계에서 주로 높게 나타남
- 연계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나 간담회는 공적기관에서는 잘 유지(80.0%)되나 민간기관과의 연계에서는 정기적인 회의나 간담회가 있다는 응답이 57.1%에 그치고 있음
- 연계기관에 대한 책자나 정보를 비치해 놓고 있는 경우는 공적기관과의 연계에서는 95.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기관과의 연계에서는 76.4%만이 그렇다고 응답함

〈표 4-29〉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단위 : 명, %)

	공적기관(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1366, 원스톱지원센터, 쉼터, 상담소 등)			민간기관(법률, 의료, 심리 등 귀 시설과 네트워크가 형성된 기관)		
	그렇다	아니다	총계	그렇다	아니다	총계
연계는 실무자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유지된다	14 (17.3)	67 (82.7)	81 (100.0)	19 (25.3)	56 (74.7)	75 (100.0)
연계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나 간담회가 있다	64 (80.0)	16 (20.0)	80 (100.0)	40 (57.1)	30 (42.9)	70 (100.0)
연계기관에 대한 책자나 정보를 비치해 놓고 있다	76 (95.0)	4 (5.0)	80 (100.0)	55 (76.4)	17 (23.6)	72 (100.0)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바로 연계할 수 있다	78 (97.5)	2 (2.5)	80 (100.0)	64 (90.1)	7 (9.9)	71 (100.0)

○ 외부기관과의 연계에서 겪는 어려움

- 연계를 위한 소속기관의 인력(67.1%)과 예산(61.7%)부족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해 줄 조정체계 부족(42.0%)하거나, 피해여성을 위한 연계기관이 부족(39.7%), 체계적인 협력방법의 부족(39.5%)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반면, 법적으로 연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거나(1.2%), 소속기관의 의지 및 노력이 부족(11.0%), 연계기관이 여성폭력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13.6%)는 소수에 불과했음
- 따라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소속기관들의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연계를 원활하게 해 줄 조정체계를 신설 및 보완하고 그 안에서 연계와 협력방안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4-30〉 외부기관과의 연계에서 겪는 어려움

(단위: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계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총계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나 지원이 부족	8 (9.9)	46 (56.8)	54 (66.7)	26 (32.1)	1 (1.2)	27 (33.3)	81 (100.0)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해 줄 조정체계가 부족	7 (8.6)	40 (49.4)	47 (58.0)	32 (39.5)	2 (2.5)	34 (42.0)	81 (100.0)
연계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방법이 부족	6 (7.4)	43 (53.1)	49 (60.5)	32 (39.5)	0 (0.0)	32 (39.5)	81 (100.0)
연계기관과의 합의가 부족	8 (9.9)	50 (61.7)	58 (71.6)	23 (28.4)	0 (0.0)	23 (28.4)	81 (100.0)
연계를 위한 소속기관의 예산이 부족	2 (2.5)	29 (35.8)	31 (38.3)	37 (45.7)	13 (16.0)	50 (61.7)	81 (100.0)
연계를 위한 소속기관의 인력이 부족	2 (2.4)	25 (30.5)	27 (32.9)	40 (48.8)	15 (18.3)	55 (67.1)	82 (100.0)
소속기관의 의지 및 노력이 부족	28 (34.1)	45 (54.9)	73 (89.0)	9 (11.0)	0 (0.0)	9 (11.0)	82 (100.0)
기관 특성상 타기관과의 연계가 어렵다	29 (35.8)	37 (45.7)	66 (81.5)	12 (14.8)	3 (3.7)	15 (18.5)	81 (100.0)
폭력피해여성을 위해 연계할 기관이 부족	12 (15.4)	35 (44.9)	47 (60.3)	26 (33.3)	5 (6.4)	31 (39.7)	78 (100.0)
연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굳이 연계 할 필요가 없다	61 (74.4)	20 (24.4)	81 (98.8)	1 (1.2)	0 (0.0)	1 (1.2)	82 (100.0)
연계기관이 여성폭력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어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24 (29.6)	46 (56.8)	70 (86.4)	9 (11.1)	2 (2.5)	11 (13.6)	81 (100.0)
연계기관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13 (15.9)	46 (56.1)	59 (72.0)	23 (28.0)	0 (0.0)	23 (28.0)	82 (100.0)
연계기관의 기정(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15 (18.5)	53 (65.4)	68 (83.9)	13 (16.0)	0 (0.0)	13 (16.0)	81 (100.0)
연계기관의 지원이 형식적인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8 (9.9)	47 (58.0)	55 (67.9)	25 (30.9)	1 (1.2)	26 (32.1)	81 (100.0)

### ○ 여성폭력 지원체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전체적으로는 의료, 수사 법률 분야 종사자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37.7%)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쉼터의 연계 활성화(25.1%), 홍보강화를 통한 이용자의 접근성 증진(19.5%) 순으로 나타남
- 여성폭력 피해자는 ‘의료, 수사 법률 분야 종사자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

증진'(40.0%),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연계 활성화'(30.0%)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기관 종사자는 '의료, 수사 법률 분야 종사자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증진' (45.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관의 중복기능 개선과 특성화된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19.3%)하다는 의견이 나타나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선 관련 욕구가 상당 수 있음
- 경찰에서는 여성폭력 등 상담소 및 쉼터의 연계 활성화(34.1%), 여성폭력 지원시설의 특성화된 전문적 서비스(31.8%), 의료·수사·법률 분야 종사자들의 여성폭력 이해증진(22.7%)로 나타남
- 경찰과 기관 종사자들의 연계 활성화와 기관의 중복기능 개선과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고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31〉 여성폭력 지원체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

	의료, 수사, 법률, 분야 종사자들의 여성폭력 이해증진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증진	여성폭력 등 상담소 및 쉼터의 연계 활성화	기관의 중복기능 개선과 특성화된 전문적 서비스	기타	총계	$\chi^2$
전체	81 (37.7)	42 (19.5)	54 (25.1)	36 (16.7)	2 (0.9)	215 (100.0)	
구분	폭력 피해자	28 (40.0)	17 (24.3)	21 (30.0)	2 (2.9)	70 (100.0)	30.857***
	기관 종사자	38 (45.8)	15 (18.1)	14 (16.9)	16 (19.3)	0 (0.0)	
	경찰	10 (22.7)	5 (11.4)	15 (34.1)	14 (31.8)	0 (0.0)	
	폭력 행위자	5 (27.8)	5 (27.8)	4 (22.2)	4 (22.2)	0 (0.0)	

주 : \*p<.05, \*\*p<.01, \*\*\*p<.001

### 3) 피해자 지원에 대한 욕구

#### ○ 피해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울, 불안, 수면문제 등 심리적 어려움(26.0%)이 가장 높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유지의 어려움(20.4%),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18.1%) 순이었음
- 그밖에 소송과정에서의 어려움(16.7%)이나, 경찰의 초기대응 수사단계에서의 어려움(11.8%)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음
- 집단별로는 피해자와 기관종사자들은 가장 어려운 점이 심리적 어려움 이라고 응답했으나 경찰은 주변사람과의 관계유지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이는 기관종사자에 비해 경찰이 피해자와의 접촉이 밀접하지 않아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공감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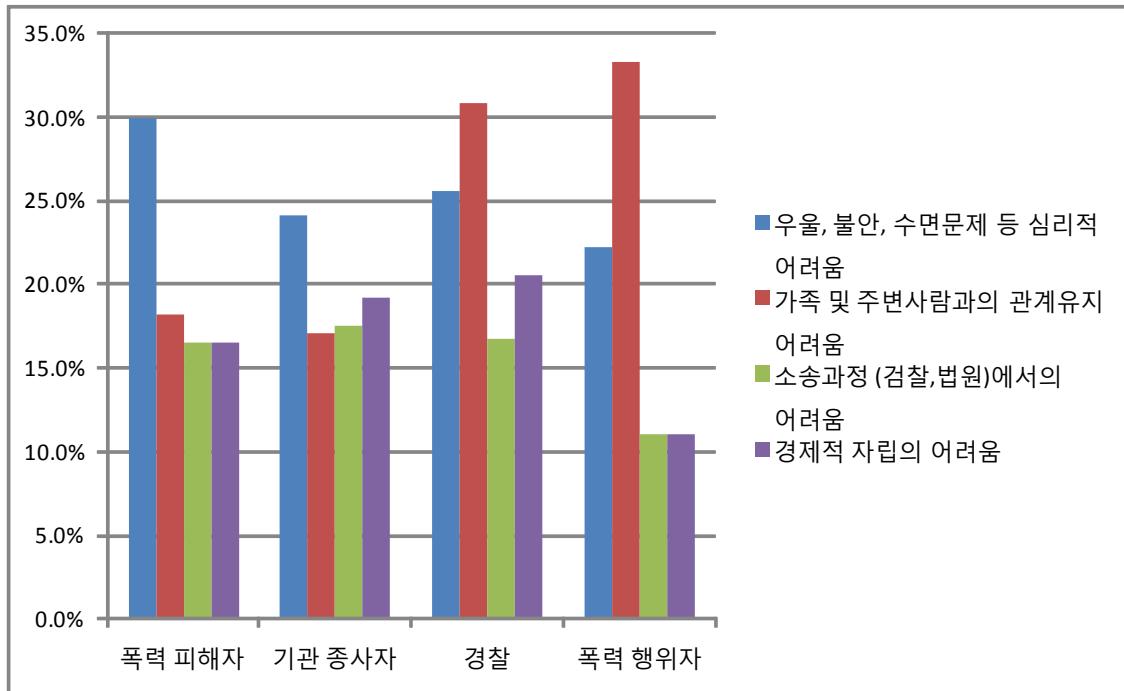
〈표 4-32〉 피해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우울, 불안, 수면문제 등 심리적 어려움	가족 및 주변사람과의 관계유지 어려움	신체적 상처치료의 어려움	경찰의 초기대응과 수사단계에서의 어려움	소송과정 (검찰, 법원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총계
전체		148 (26.0)	116 (20.4)	41 (7.2)	67 (11.8)	95 (16.7)	103 (18.1)	570 (100.0)
구분	폭력 피해자	51 (30.0)	31 (18.2)	16 (9.4)	16 (9.4)	28 (16.5)	28 (16.5)	170 (100.0)
	기관 종사자	69 (24.1)	49 (17.1)	17 (5.9)	46 (16.1)	50 (17.5)	55 (19.2)	286 (100.0)
	경찰	20 (25.6)	24 (30.8)	4 (5.1)	1 (1.3)	13 (16.7)	16 (20.5)	78 (100.0)
	폭력 행위자	8 (22.2)	12 (33.3)	4 (11.1)	4 (11.1)	4 (11.1)	4 (11.1)	36 (100.0)

주: 다중응답 교차분석 실시(카이제곱 값 나오지 않음, 다중응답인 경우 알 수 없음)

〈그림 4-2〉 피해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개선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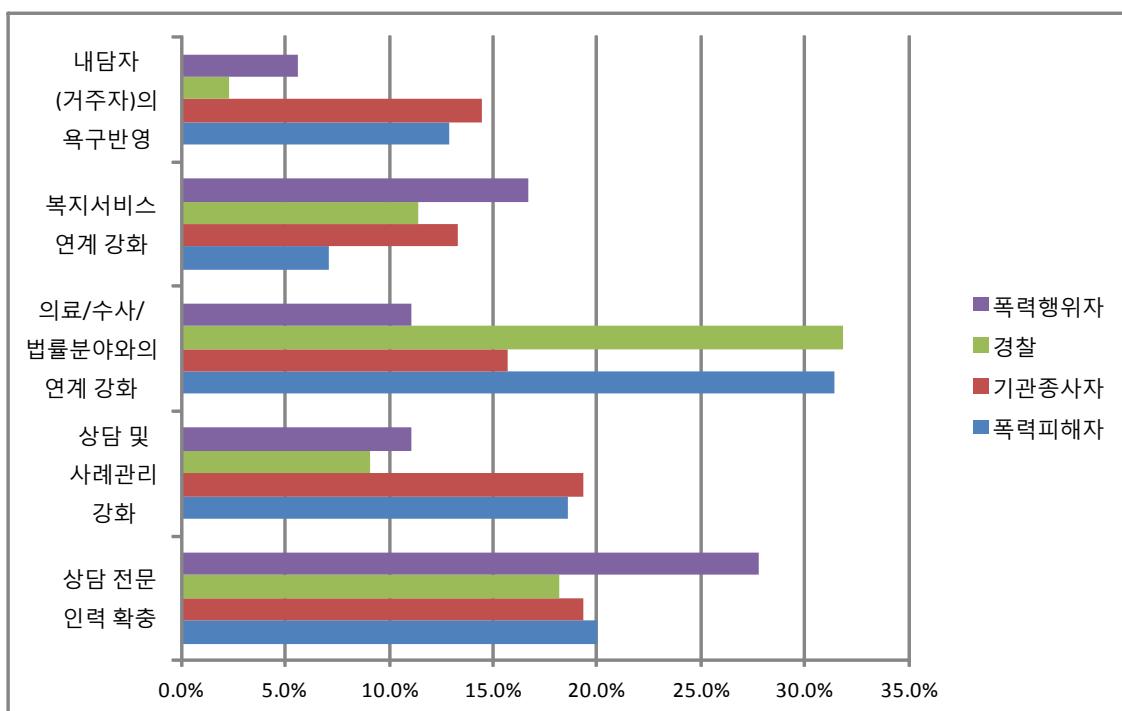
-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 의료·수사·법률분야와의 연계 강화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및 소송과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집단별로 보면, 폭력피해자 의료/수사/법률분야와의 연계강화(31.4%), 상담전문인력 확충(20.0%),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18.6%)순으로 나타남
- 기관종사자는 상담전문 인력확충(19.3%)과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1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의료./수사/법률분야와의 연계강화(15.7%)순이었음
- 경찰은 의료/수사/법률 분야와의 연계강화(31.8%)와, 상담전문인력 확충(18.2%),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15.9%)을 개선점으로 지적했음

〈표 4-33〉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개선할 점

(단위 : 명, %)

	상담 전문 인력 확충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의료/수사/법률 분야와의 연계 강화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내담자 (거주자)의 욕구반영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	지역사회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시설의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총계
전체	43 (20.0)	35 (16.3)	51 (23.7)	24 (11.2)	23 (10.7)	20 (9.3)	8 (3.7)	11 (5.1)	215 (100.0)
구분	폭력 피해자	14 (20.0)	13 (18.6)	22 (31.4)	5 (7.1)	9 (12.9)	4 (5.7)	2 (2.9)	70 (100.0)
	기관 종사자	16 (19.3)	16 (19.3)	13 (15.7)	11 (13.3)	12 (14.5)	5 (6.0)	4 (4.8)	83 (100.0)
	경찰	8 (18.2)	4 (9.1)	14 (31.8)	5 (11.4)	1 (2.3)	7 (15.9)	1 (2.3)	44 (100.0)
	폭력 행위자	5 (27.8)	2 (11.1)	2 (11.1)	3 (16.7)	1 (5.6)	4 (22.2)	1 (5.6)	18 (100.0)

〈그림 4-33〉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개선할



## ○ 여성폭력 피해자 효과적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것은 전체적으로는 여성폭력에 관한 경찰의 대응강화(23.6%), 여성폭력통합 상담기관의 확대 설치(18.9%), 피해자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강화(18.0%)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피해자 1위는 여성폭력 통합 상담기관의 확대 설치(29.8%), 여성폭력에 관한 경찰의 대응 강화(27.5%), 피해자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17.6%)순으로 나타남
- 기관종사자는 여성폭력에 관한 경찰의 대응강화(24.9%), 피해자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20.1%), 여성폭력서비스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결(19.6%)순으로 나타남
- 경찰에서는 여성폭력통합 상담기관의 확대 설치(24.3%)와 기관 간 협의체 구성과 효율적 운영(24.3%)이 동비율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폭력에 관한 경찰의 대응 강화(18.9%)로 나타남
- 피해자와 경찰 모두 여성폭력 통합 상담기관의 확대 설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음. 이는 여성폭력 관련 기관에 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sup>3)</sup>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관련 공공서비스 인지율은 상담소가 50% , 가정폭력 상담소 58.1%로 나타났고 다른 기관은 그 이하로 나타남. .

〈표 4-34〉 여성폭력 피해자 효과적 지원

(단위 : 명, %)

	여성폭력에 관한 경찰의 대응 강화	전담 의료기관 의 확충	여성폭력 통합 상담기관의 확대 설치	피해자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기관 간 협의체 구성과 효율적 운영	여성폭력 서비스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결	총계
전체	105 (23.6)	49 (11.0)	84 (18.9)	80 (18.0)	66 (14.8)	61 (13.7)	445 (100.0)
폭력 피해자	36 (27.5)	13 (9.9)	39 (29.8)	23 (17.6)	9 (6.9)	11 (8.4)	131 (100.0)
기관 종사자	52 (24.9)	23 (11.0)	21 (10.0)	42 (20.1)	30 (14.4)	41 (19.6)	209 (100.0)
경찰	14 (18.9)	10 (13.5)	18 (24.3)	9 (12.2)	18 (24.3)	5 (6.8)	74 (100.0)
폭력 행위자	3 (9.7)	3 (9.7)	6 (19.4)	6 (19.4)	9 (29.0)	4 (12.9)	31 (100.0)

주: 다중응답 교차분석 실시

## 마. 정책욕구

### 1) 여성폭력 대응 정책욕구

#### ○ 여성폭력의 효과적 대응 방안

- 여성폭력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 팀 마련과 운영의 활성화'(19.0%), '성·가정폭력 전담 경찰체계 마련과 효율적 운영'(18.1%), '가해자처벌 및 상담 의무화'(15.7%)순으로 나타남
- 폭력피해자에서는 '성·가정폭력 전달경찰체계 마련과 효율적 운영'(31.4%),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 팀 마련과 운영의 활성화'(14.3%),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권 강화'(11.4%)순으로 나타남
- 기관종사자의 경우 1위가 '가해자 처벌 및 상담 의무화'(28.6%), '가해자의 권리 및 임시거처 마련'(17.9%),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 팀 마련과 운영의 활성화'(15.5%)순이었음
- 경찰의 경우,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 팀 마련과 운영의 활성화'(25%),

‘가해자의 격리 및 임시거처 마련’(18.2%), ‘성·가정폭력 전담 경찰 체계 마련과 효율적 운영’(15.9%)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15.9%)로 나타남  
- 성폭력 수사 전담반 운영에 이어 2015년부터 경찰의 가정폭력 전담반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전담경찰체계 마련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이는 경찰의 여성폭력 관련 대응이 피해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음

〈표 4-35〉 여성폭력의 효과적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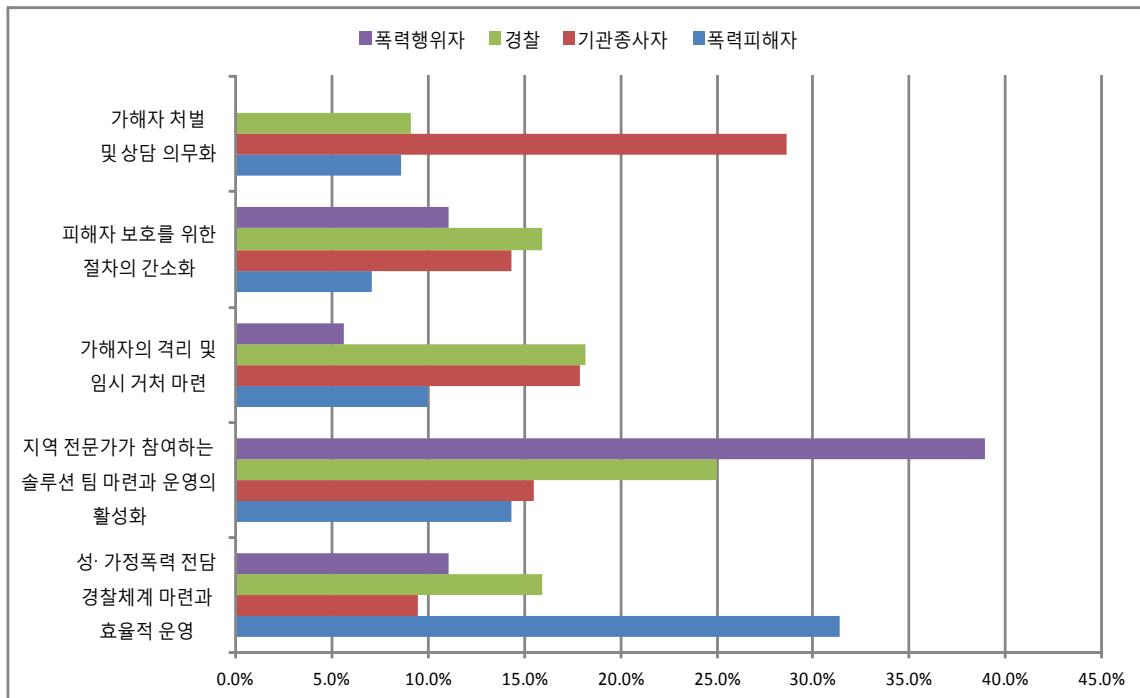
(단위 :명, %)

	성·가정 폭력 전담 경찰체계 마련과 효율적 운영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 팀	가해자의 격리 및 임시 거처 마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상담 소통 서비스 홍보 강화	폭력 신고 시 경찰과 상담원 동행제도 실행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 권 강화	가해자 처벌 및 상담 의무화	총계	$\chi^2$
전체	39 (18.1)	41 (19.0)	31 (14.4)	26 (12.0)	13 (6.0)	17 (7.9)	15 (6.9)	34 (15.7)	216 (100.0)	
구분	폭력 피해자	22 (31.4)	10 (14.3)	7 (10.0)	5 (7.1)	5 (7.1)	7 (10.0)	8 (11.4)	6 (8.6)	70 (100.0)
	기관 종사자	8 (9.5)	13 (15.5)	15 (17.9)	12 (14.3)	3 (3.6)	8 (9.5)	1 (1.2)	24 (28.6)	84 (100.0)
	경찰	7 (15.9)	11 (25.0)	8 (18.2)	7 (15.9)	1 (2.3)	1 (2.3)	5 (11.4)	4 (9.1)	44 (100.0)
	폭력 행위자	2 (11.1)	7 (38.9)	1 (5.6)	2 (11.1)	4 (22.2)	1 (5.6)	1 (5.6)	0 (0.0)	18 (100.0)

주 : \*p<.05, \*\*p<.01, \*\*\*p<.001

57.1  
27\*\*\*

〈그림 4-4〉 여성폭력의 효과적 대응 방안



## 2)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吁구

### ○ 여성폭력 관련 정책 중 문제점

-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미흡(25.2%), 여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부족(20.0%), 여성폭력 관련법에 근거한 정책반영 미흡(19.0%)으로 나타남
- 집단별로 살펴보면 폭력피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미흡(21.7%), 여성폭력 관련법에 근거한 정책 반영 미흡(21%), 동률로 여성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족(19.6%) 및 여성폭력발생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부족(19.6%)순임
- 기관종사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미흡(25.5%), 여성폭력 관련법에 근거한 정책반영 미흡(21.4%), 여성폭력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부족(19.1%) 순으로 나타남
- 경찰 역시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미흡(35.9%), 여성폭력발생예방

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부족(20.5%), 여성폭력지원체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부족(15.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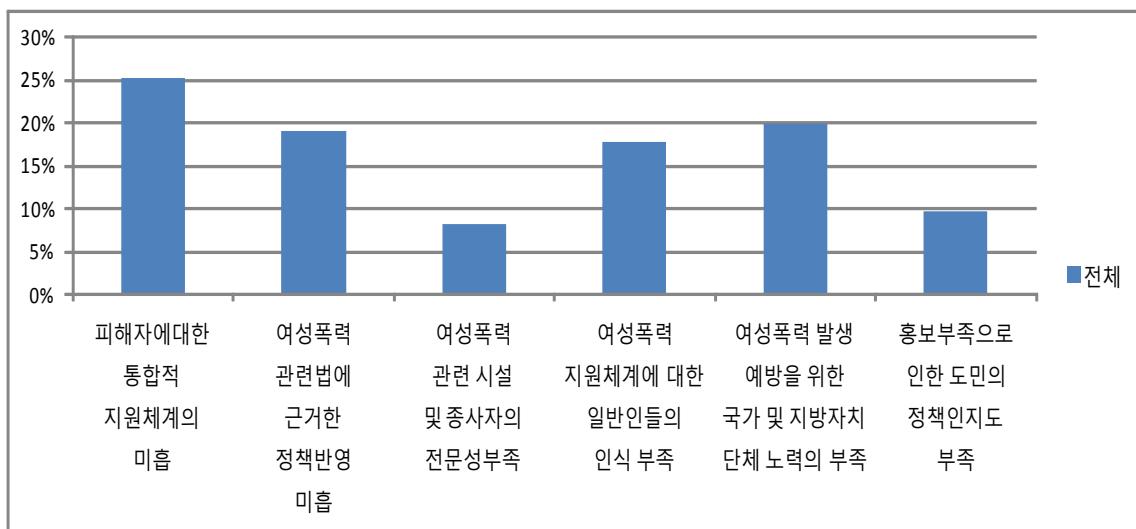
<표 4-36> 여성폭력 관련 정책 중 문제점

(단위 : 명, %)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미흡	여성폭력 관련법에 근거한 정책반영 미흡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여성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	여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부족	홍보부족으로 인한 도민의 정책인지도 부족	총계
전체	117 (25.2)	88 (19.0)	38 (8.2)	83 (17.9)	93 (20.0)	45 (9.7)	464 (100.0)
폭력 피해자	30 (21.7)	29 (21.0)	11 (8.0)	27 (19.6)	27 (19.6)	14 (10.1)	138 (100.0)
구 분							
기관 종사자	56 (25.5)	47 (21.4)	14 (6.4)	40 (18.2)	42 (19.1)	21 (9.5)	220 (100.0)
경찰	28 (35.9)	6 (7.7)	11 (14.1)	12 (15.4)	16 (20.5)	5 (6.4)	78 (100.0)
폭력 행위자	3 (10.7)	6 (21.4)	2 (7.1)	4 (14.3)	8 (28.6)	5 (17.9)	28 (100.0)

주 : 다중응답

<그림 4-5> 여성폭력 관련 정책 중 문제점



## ○ 폭력 차단을 위한 방안

- 폭력차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경찰과 자동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37.4%), 지역 내 우범지대 CCTV설치(31.3%), 지역 내 공동방범 활동 강화(22.9%) 순으로 나타남
- 폭력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자동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가 (48.6%)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지지하였으며, 지역 내 우범지대 CCTV 설치 (32.9%), 지역내 공동방범 활동 강화(12.9%)로 나타남
- 기관종사자는 경찰과 자동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47.6%), 지역 내 공동방범 활동 강화(25.6%), 지역내 우범지대 CCTV설치(15.9%)순임
- 경찰에서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인 범주는 지역내 우범지대 CCTV설치(63.6%)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고, 안전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도시설계(25.0%), 경찰과 자동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6.8%)로 나타나, 피해자와 기관종사자가 절반이 넘게 지지한 비상벨 설치와는 반대적인 의견차를 드러냄.

〈표 4-37〉 폭력차단을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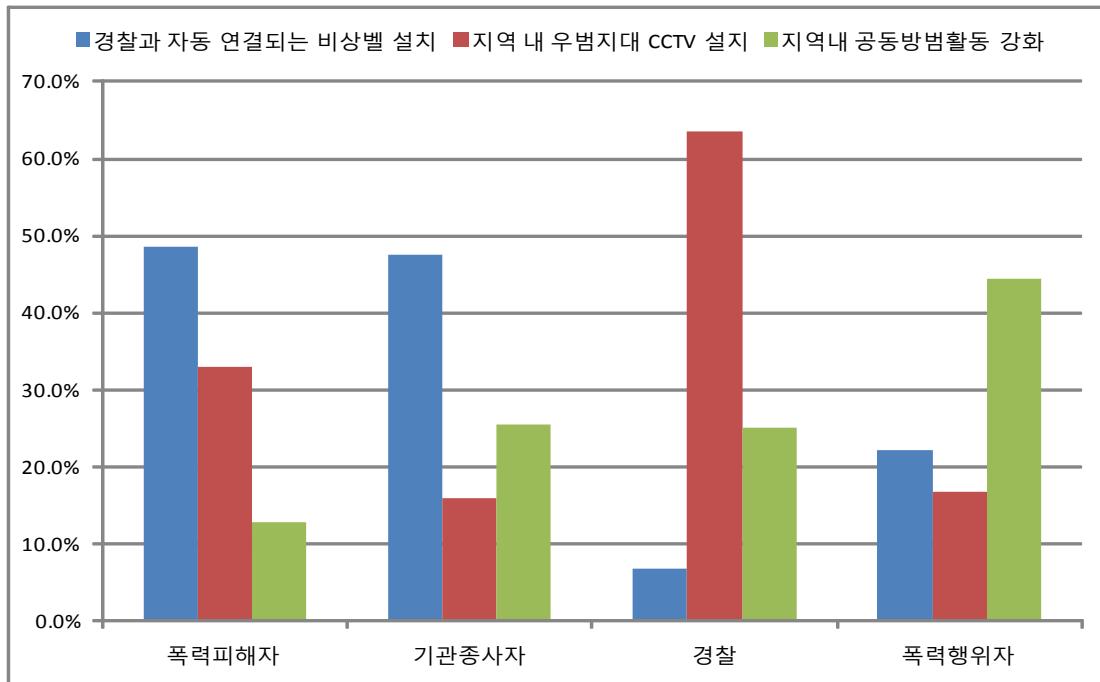
(단위 : 명, %)

	경찰과 자동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지역 내 우범지대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증대	무인 택배 시스템 설치	지역내 공동방범 활동 강화	기타	총계	$\chi^2$
전체	80 (37.4)	67 (31.3)	7 (3.3)	1 (0.5)	49 (22.9)	10 (4.7)	214 (100.0)	
구분	폭력 피해자	34 (48.6)	23 (32.9)	3 (4.3)	1 (1.4)	9 (12.9)	0 (0.0)	70 (100.0)
	기관 종사자	39 (47.6)	13 (15.9)	2 (2.4)	0 (0.0)	21 (25.6)	7 (8.5)	82 (100.0)
	경찰	3 (6.8)	28 (63.6)	0 (0.0)	0 (0.0)	11 (25.0)	2 (4.5)	44 (100.0)
	폭력 행위자	4 (22.2)	3 (16.7)	2 (11.1)	0 (0.0)	8 (44.4)	1 (5.6)	18 (100.0)

주 : \*p<.05, \*\*p<.01, \*\*\*p<.001

59.223\*\*\*

〈그림 4-6〉 폭력차단을 위한 방안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예방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35.02%), 지역사회 위험요소 파악 및 시설보완(22.2%), 다양한 통로의 주민 참여 및 유대 강화(11.6%)의 순으로 나타남
- 폭력피해자의 경우 예방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32.9%), 지역사회위험요소 파악 및 시설보완(25.7%),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12.9%)로 나타남
- 기관종사자에서는 예방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45.2%), 지역사회위험요소 파악 및 시설보완(26.2%),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조례정비(9.5%)순이었음
- 경찰대상 조사에서는 예방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25.0%),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20.5%), 다양한 통로의 주민참여 및 유대강화(15.9%)로 나타남
- 예방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여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표 4-38〉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단위 : 명, %)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조례 정비	다양한 통로의 주민참여 및 유대강화	지역 사회 위험 요소 파악 및 시설보완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생활 공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예방 교육 강화 및 인식 개선 교육	기타	총계	$\chi^2$
전체	18 (8.3)	25 (11.6)	48 (22.2)	18 (8.3)	24 (11.1)	5 (2.3)	76 (35.2)	2 (0.9)	216 (100.0)	
구분	폭력 피해자	4 (5.7)	6 (8.6)	18 (25.7)	7 (10.0)	9 (12.9)	2 (2.9)	23 (32.9)	1 (1.4)	70 (100.0)
	기관 종사자	8 (9.5)	6 (7.1)	22 (26.2)	5 (6.0)	4 (4.8)	0 (0.0)	38 (45.2)	1 (1.2)	84 (100.0)
	경찰	4 (9.1)	7 (15.9)	6 (13.6)	5 (11.4)	9 (20.5)	2 (4.5)	11 (25.0)	0 (0.0)	44 (100.0)
	폭력 행위자	2 (11.1)	6 (33.3)	2 (11.1)	1 (5.6)	2 (11.1)	1 (5.6)	4 (22.2)	0 (0.0)	18 (100.0)

주 : \*p<.05, \*\*p<.01, \*\*\*p<.001

31.8  
58\*

## 2. 예방교육 인식조사 결과

### 가.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및 방법

- 본 조사는 제주지역 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대상은 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제주시·서귀포시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음
- 조사대상 선정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인식조사는 제주도내 폭력 예방교육 거점기관인 제주YWCA 통합상담소와 제주청소년성문

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방교육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임의표집 하였고 두 기관과 강사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음

-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 인식조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었음
- 조사방법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즉석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설문지는 모두 377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7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음
- 집단별로는 초등학생 61명, 중·고등학생 91명, 공무원 및 교직원 22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2) 조사내용

- 예방교육 인식조사는 주로 폭력 예방교육의 전반적 현황과 피교육대상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 만족도, 인식변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기본으로 대상에 어울릴 수 있도록 표현과 내용을 조금 변형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예를 들면 초등생에게는 성교육 중심,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성적 호기심이나 이성 관계 관련 문항, 그리고 공무원 및 교사에게는 성희롱 문항을 추가하는 등 대상에 맞게 조금씩 조사내용을 수정하였음
-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39〉 예방교육 인식조사 내용

대상	조사영역	조사내용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직원 및 공무원	교육 방법	년간 횟수, 방식, 교육생 규모
	만족도	이해도, 도움정도, 도움내용
	인식변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조사의 응답자 분포는 초등학생 61명(16.4%), 중·고등학생 91명(24.4%), 교직원 및 공무원 221명(59.2%)로 구성됨
- 성별로는 남성 190명(50.9%), 여성 183명(49.1%)이고 집단별 성별분포는 초등학생과 공무원 및 교직원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중·고등학행은 남학생이 73.6%, 여학생이 26.4% 분포함. 이는 고등학교 예방교육 현장방문이 어려워 남학생이 많은 공업고등학교에 방문 조사한 것에 기인함
- 연령별로는 10대가 모두 40.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40대(22.5%), 30대(18.8%), 20대(9.4%), 50대(8.6%) 순으로 구성됨

〈표 4-40〉 예방교육 인식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표본의 구성		전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공무원 및 교직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73	(100.0)	61	(100.0)	91	(100.0)	221	(100.0)
구분	초등학생	61	(16.4)	61	(100.0)				
	중고등학생	91	(24.4)			91	(100.0)		
	공무원 및 교직원	221	(59.2)					221	(100.0)
성별	남성	190	(50.9)	28	(45.9)	67	(73.6)	95	(43.0)
	여성	183	(49.1)	33	(54.1)	24	(26.4)	126	(57.0)
연령	10대이하	152	(40.8)	61	(100.0)	91	(100.0)		
	20대	35	(9.4)					35	(15.84)
	30대	70	(18.8)					70	(31.67)
	40대	84	(22.5)					84	(38.01)
	50대	32	(8.6)					32	(14.48)

## 다. 예방교육 인식조사 결과

### 1) 예방교육 횟수, 방법, 도움정도

#### ○ 조사대상자의 연간 폭력예방교육 실시횟수

- 조사 대상자의 연간 폭력예방교육 실시횟수는 평균 2.4회이고 중·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횟수 2.82회로 조사됨
- 이는 201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 예방교육 실시횟수가 평균 2.0회를 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것은 교직원 및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은 1회(35.3%)와 2회(29.4%)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아 예방교육 실시횟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표 4-41〉 연간 폭력예방교육 실시 횟수

(단위 : 명, %)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	평균	$\chi^2$
전체		117 (31.4)	119 (31.9)	36 (9.7)	59 (15.8)	42 (11.3)	373 (100.0)	2.41	
구분	초등학생	11 (18.0)	41 (67.2)	8 (13.1)	0 (0.0)	1 (1.6)	61 (100.0)	2.00	120.81***
	중고등학생	28 (30.8)	13 (14.3)	3 (3.3)	41 (45.1)	6 (6.6)	91 (100.0)	2.82	
	공무원및교직원	78 (35.3)	65 (29.4)	25 (11.3)	18 (8.1)	35 (15.8)	221 (100.0)	2.40	

주 : \*p<.05, \*\*p<.01, \*\*\*p<.001

#### ○ 폭력예방교육 방식

- 예방교육 실시방식은 가정폭력을 제외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함께 수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2.3%),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만 수강(22.5%)하거나 통합방식으로 수강(20.2%)하는 경우가 많았음

- 네 가지 유형의 예방교육을 각각 따로 수강한다(14.0%)는 비율은 적었음
- 집단별로는 중고등학생은 4가지 교육을 한꺼번에 수강하는 통합교육방식이 많았고 교직원 및 공무원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를 함께 수강하는 형식의 예방교육이 가장 많았음

〈표 4-42〉 폭력예방교육 방식

(단위 : 명, %)

구분	각각 따로 수강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함께 수강	통합교육으로 수강	성희롱, 성폭력만 수강	기타	계	$\chi^2$
전체	43 (14.0)	130 (42.3)	62 (20.2)	69 (22.5)	3 (1.0)	307 (100.0)	
구분	중고등학생	12 (13.3)	31 (34.4)	36 (40.0)	9 (10.0)	2 (2.2)	90 (100.0)
	공무원및교직원	31 (14.3)	99 (45.6)	26 (12.0)	60 (27.6)	1 (0.5)	217 (100.0)
성별	남성	22 (13.8)	70 (44.0)	32 (20.1)	33 (20.8)	2 (1.3)	159 (100.0)
	여성	21 (14.2)	60 (40.5)	30 (20.3)	36 (24.3)	1 (0.7)	148 (100.0)

주 : \*p<.05, \*\*p<.01, \*\*\*p<.001

37.48\*\*\*

### ○ 폭력예방교육 전반적 이해도

-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과 공무원 및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조사결과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3.9를 넘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는 의견을 보임
- 집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으나 남성(3.88)보다는 여성(3.92), 중·고등학생(3.79)보다는 교직원 및 공무원 집단(3.94)이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음

〈표 4-43〉 폭력예방교육 전반적 이해도

(단위:명, %, 점)

구분		매우 어려웠다	약간 어려웠다	보통이다	약간 쉬었다	매우 쉬웠다	계	평균
전체		3 (1.0)	7 (2.2)	105 (33.7)	101 (32.4)	96 (30.8)	312 (100.0)	3.90
구분	중고등학생	2 (2.2)	3 (3.3)	37 (40.7)	19 (20.9)	30 (33.0)	91 (100.0)	3.79
	공무원및교직원	1 (.5)	4 (1.8)	68 (30.8)	82 (37.1)	66 (29.9)	221 (100.0)	3.94
성별	남성	2 (1.2)	6 (3.7)	52 (32.1)	52 (32.1)	50 (30.9)	162 (100.0)	3.88
	여성	1 (0.7)	1 (0.7)	53 (35.3)	49 (32.7)	46 (30.7)	150 (100.0)	3.92

○ 폭력예방교육의 인식변화에 대한 도움 정도

- 폭력예방교육이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5점척도 분석결과 평균 4.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어 예방교육이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집단별 차이에 있어서, 폭력예방교육의 전반적 이해도와 마찬가지로 도움 정도에 있어서도 남성(3.92)보다는 여성(4.09), 중·고등학생(3.93)보다는 교직원 및 공무원 집단(4.01)이 폭력예방교육이 인식변화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함

〈표 4-44〉 폭력예방교육의 인식변화에 대한 도움 정도

(단위: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2 (0.5)	4 (1.1)	102 (27.3)	147 (39.4)	118 (31.6)	373 (100.0)	4.01
구분	중고등학생	1 (1.1)	1 (1.1)	28 (30.8)	34 (37.4)	27 (29.7)	91 (100.0)	3.93
	공무원및교직원	1 (0.5)	2 (0.9)	52 (23.5)	105 (47.5)	61 (27.6)	221 (100.0)	4.01
성별	남성	1 (0.5)	3 (1.6)	62 (32.6)	68 (35.8)	56 (29.5)	190 (100.0)	3.92
	여성	1 (0.5)	1 (0.5)	40 (21.9)	79 (43.2)	62 (33.9)	183 (100.0)	4.09

## 2) 집단별 예방교육 인식조사 결과

### (1) 초등학생

#### ○ 초등학생의 성교육 효과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교육의 효과성 조사에서는 평균 4.10을 나타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표 4-45〉 수강한 성교육 효과(평가)

(단위 : 명, %)

		매우 나쁨	약간 나쁨	보통	조금 좋음	매우 좋음	계	평균	$\chi^2$
전체		0 (0.0)	1 (1.6)	22 (36.1)	8 (13.1)	30 (49.2)	61 (100.0)	4.10	
성별	남학생	0 (0.0)	1 (3.6)	14 (50.0)	5 (17.9)	8 (28.6)	28 (100.0)	3.71	9.42**
	여학생	0 (0.0)	0 (0.0)	8 (24.2)	3 (9.1)	22 (66.7)	33 (100.0)	4.42	

주 : \*p<.05, \*\*p<.01, \*\*\*p<.001

○ 성교육 내용 중 가장 좋았던 점

- 초등학생의 성교육 중 가장 좋았던 점은 성폭력 예방법(32.5%)이고 다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법(31.6%)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소통과 인권을 중시하는 다양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 주목할 점은 성폭력에 잘 대응한 사례가 좋았다는 응답이 성별로 차이가 드러남. 남학생의 20.8%가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9.4%만이 응답해 성폭력이나 성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46〉 성교육 내용 중 가장 좋았던 점

(단위 : 명, %)

		남자와 여자의 몸	임신·출산	성폭력 예방법	이성교제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성폭력에 잘 대응한 사례	서로 존중하는 법	계
전체		13 (11.1)	5 (4.3)	38 (32.5)	7 (6.0)	17 (14.5)	37 (31.6)	117 (100.0)
성별	남학생	2 (3.8)	4 (7.5)	16 (30.2)	3 (5.7)	11 (20.8)	17 (32.1)	53 (100.0)
	여학생	11 (17.2)	1 (1.6)	22 (34.4)	4 (6.3)	6 (9.4)	20 (31.3)	64 (100.0)

주: 중복응답

○ 성교육 시간

- 초등생의 성교육 시간은 주로 수업시간에 많이 이루어지며(49.2%) 체육시간(32.8%)을 이용해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많았음
- 성교육 시간을 따로 정해서 실시하는 경우(11.5%)와 특별활동시간에 실시하는 비율(6.6%)은 매우 낮았음

〈표 4-47〉 성교육 수강 시간

(단위 : 명, %)

		수업시간	시간을 따로 정해서	체육시간	특별활동 시간	계	$\chi^2$
전체		30 (49.2)	7 (11.5)	20 (32.8)	4 (6.6)	61 (100.0)	
성별	남학생	12 (42.9)	4 (14.3)	11 (39.3)	1 (3.6)	28 (100.0)	2.14
	여학생	18 (54.5)	3 (9.1)	9 (27.3)	3 (9.1)	33 (100.0)	

○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합한 교육방식

- 성폭력 예방교육의 적합한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동영상은 시청하고 설명하는 방식(42.6%)이나 교사의 설명방식(41.0%)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역할극(14.8%)이나 토론식 수업(1.6%)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8〉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합한 교육 방식

(단위 : 명, %)

		동영상 시청, 설명 방식	선생님의 설명방식	역할극	토론 및 선생님과의 대화방식	계	$\chi^2$
전체		26 (42.6)	25 (41.0)	9 (14.8)	1 (1.6)	61 (100.0)	
성별	남학생	11 (39.3)	12 (42.9)	4 (14.3)	1 (3.6)	28 (100.0)	1.36
	여학생	15 (45.5)	13 (39.4)	5 (15.2)	0 (.0)	33 (100.0)	

○ 성폭력 예방교육 적정 학생 수

- 성폭력 예방교육의 적정 학생수에 대한 조사결과 '20명 정도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69.5%)'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여러 반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교육이 좋다는 의견도 15.3%를 나타냈고, 강사와의 일대일 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6.8%로 나타남

〈표 4-49〉 성폭력 예방교육 적정 학생 수

(단위 : 명, %)

		여러 빈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교육	20명 정도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	선생님과 학생의 일대일 교육	기타	계	$\chi^2$
전체		9 (15.3)	41 (69.5)	4 (6.8)	5 (8.5)	59 (100.0)	
성별	남학생	4 (14.8)	19 (70.4)	2 (7.4)	2 (7.4)	27 (100.0)	0.10
	여학생	5 (15.6)	22 (68.8)	2 (6.3)	3 (9.4)	32 (100.0)	

○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 초등생의 폭력예방교육 이후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항목과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조사결과 성폭력 관련 항목인 '접촉하면 싫어도 가만히 있다' (91.8%)와 장난으로 접촉하는 것은 괜찮다' (98.4%)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성폭력에 관한 인지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어른의 말을 안 듣거나 잘못하면 맞을 수 있다'에 41.1%가 그렇다고 응답하거나 '친구가 싫다고 하면 그 행동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16.4%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폭력성에 대한 인지효과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0〉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단위 : 명, %)

	그렇다	아니다	계
접촉하면 싫어도 가만히 있다	5 (8.2)	56 (91.8)	61 (100.0)
장난으로 접촉하는 것은 괜찮다	1 (1.6)	60 (98.4)	61 (100.0)
어른의 말을 안 듣거나 잘못 하면 맞을 수 있다	25 (41.0)	36 (59.0)	61 (100.0)
친구가 싫다고 하면 그 행동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51 (83.6)	10 (16.4)	61 (100.0)

## (2) 중·고등학생

### ○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중 가장 좋았던 점

- 중·고등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중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한 조사 결과 성폭력 예방방법(23.3%)과 피임방법(16.1%), 이성교제(15.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성폭력 예방방법과 피임방법, 이성교제가 좋았다고 응답했으나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 성폭력 예방방법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37.5%인데 반해 남학생은 18.2%에 불과해 성폭력 예방방법에 관한 관심이 여학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51〉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중 가장 좋았던 점

(단위 : 명, %)

	남녀의 생식 구조	임신·출산	성병과 에이즈	성폭력 예방 방법	피임 방법	이성 교제	남녀의 성역할	인간 존중	계
전체	15 (8.3)	21 (11.7)	5 (2.8)	42 (23.3)	29 (16.1)	27 (15.0)	21 (11.7)	20 (11.1)	180 (100.0)
성별	남학생	13 (9.8)	16 (12.1)	3 (2.3)	24 (18.2)	20 (15.2)	20 (15.2)	16 (12.1)	132 (100.0)
	여학생	2 (4.2)	5 (10.4)	2 (4.2)	18 (37.5)	9 (18.8)	7 (14.6)	1 (2.1)	48 (100.0)

주 : 중복응답

### ○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시간

- 중·고등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시간은 자치활동시간에 실시하는 비율이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부강사를 통한 특강이 31.1%,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비율이 25.6% 순으로 나타남
- 정규 성교육 시간을 배정해서 수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성별로는 남학생은 외부강사의 특강(36.4%)이나 수업시간(30.3%), 자치활동시간(28.8%)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여학생은 주로 자치활동시간(70.8%)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과 남학생이 교육을 따

로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됨

〈표 4-52〉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시간

(단위 : 명, %)

		정규 성교육 시간	수업 시간 중에 실시	CA (개별활동 시간)	HR (자치활동시 간)	외부강사 통한 특강	계	$\chi^2$
전체		1 (1.1)	23 (25.6)	2 (2.2)	36 (40.0)	28 (31.1)	90 (100.0)	
성별	남학생	1 (1.5)	20 (30.3)	2 (3.0)	19 (28.8)	24 (36.4)	66 (100.0)	13.24**
	여학생	0 (.0)	3 (12.5)	0 (.0)	17 (70.8)	4 (16.7)	24 (100.0)	

주 : \*p<.05, \*\*p<.01, \*\*\*p<.001

### ○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양)

- 중·고등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속시간은 전체적으로 40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71.1%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60분 수강했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남
- 중고생의 성폭력 교육량에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학생이 40분 수강했다는 비율은 남학생보다 적었으나 60분 수강한 비율은 더 높게 조사되었음

〈표 4-53〉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양)

(단위 : 명, %)

		20분	40분	60분	1시간 30분	2시간	기타	계	$\chi^2$
전체		1 (1.1)	64 (71.1)	18 (20.0)	2 (2.2)	2 (2.2)	3 (3.3)	90 (100.0)	
성별	남학생	1 (1.5)	50 (75.8)	9 (13.6)	1 (1.5)	2 (3.0)	3 (4.5)	66 (100.0)	8.50
	여학생	0 (.0)	14 (58.3)	9 (37.5)	1 (4.2)	0 (.0)	0 (.0)	24 (100.0)	

○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합한 방법

- 성폭력 예방교육의 적합한 방법으로는 강사의 강의위주 교육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동영상 시청 위주의 교육이 27.8%, 문답식 강의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20.2%나 차지함
-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동영상시청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묻고 답하는 문답식 교육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4-54〉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합한 방법

(단위 : 명, %)

		동영상 시청 위주	강사의 강의 위주	역할극	묻고 답하는 강의	소집단 토론	계	$\chi^2$
전체		25 (27.8)	45 (50.0)	1 (1.1)	18 (20.0)	1 (1.1)	90 (100.0)	
성별	남학생	16 (24.2)	32 (48.5)	0 (.0)	17 (25.8)	1 (1.5)	66 (100.0)	8.44
	여학생	9 (37.5)	13 (54.2)	1 (4.2)	1 (4.2)	0 (.0)	24 (100.0)	

○ 성폭력 예방교육 적정 학생수

- 성폭력 예방교육의 적정 학생수는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20명 내외의 소집단 교육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함
- 그러나 100명 이상의 집합교육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어 성폭력 예방교육이 그동안 일회성 교육으로 그쳤고 관심과 흥미가 적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4-55〉 성폭력 예방교육 적정 학생수

(단위 : 명, %)

	100명 이상의 집합교육	20명 내외의 소집단 교육	선생님과 학생의 일대일 교육	기타	계	$\chi^2$
전체	25 (27.8)	45 (50.0)	1 (1.1)	18 (20.0)	1 (1.1)	
성별	남학생 (24.2)	32 (48.5)	0 (.0)	17 (25.8)	1 (1.5)	3.07
	여학생 (37.5)	13 (54.2)	1 (4.2)	1 (4.2)	0 (0.0)	

○ 폭력예방 교육 후 인식 변화

- 폭력예방 교육 후 인식변화에 대하여 '수업시간에 성차별적이거나 여성비하적인 말도 성희롱이다'라는 항목에 '그렇다'라는 의견에 87.9%가 동의함
- 가정폭력 항목인 '아내구타는 사적인 가정 문제이지 법적인 죄는 아니다'에 '아니다'라는 의견에는 92.3%가 동의함
- 반면, 성매매 항목인 '남자는 성욕을 참을 수 없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는 의견에 15.6%가 동의해 성매매 인식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의사소통을 잘하면 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에는 20.9%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의사소통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4-56〉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단위 : 명, %)

	그렇다	아니다	계
수업시간에 성차별적이거나 여성비하적인 말도 성희롱이다	80 (87.9)	11 (12.1)	91 (100.0)
아내구타는 사적인 가정 문제이지 법적인 죄는 아니다	7 (7.7)	84 (92.3)	91 (100.0)
남자는 성욕을 참을 수 없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14 (15.6)	76 (84.4)	90 (100.0)
의사소통을 잘하면 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72 (79.1)	19 (20.9)	91 (100.0)

### (3) 공무원 및 교직원

#### ○ 성별, 연령별 폭력예방교육 실시횟수

- 공무원 및 교직원의 예방교육 실시횟수는 평균 2.40회로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연령별로는 20대 보다는 30대, 40대, 50대가 예방교육을 받은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연령대보다는 낮은 연령이 예방교육 참여횟수가 낮은 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함

〈표 4-57〉 성별, 연령별 년간 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

(단위 : 명, %, 점)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	평균	$\chi^2$
구분	전체	78 (35.3)	65 (29.4)	25 (11.3)	18 (8.1)	35 (15.8)	221 (100.0)	2.40	
	남성	31 (32.6)	23 (24.2)	16 (16.8)	9 (9.5)	16 (16.8)	95 (100.0)	2.54	6.83
연령별	여성	47 (37.3)	42 (33.3)	9 (7.1)	9 (7.1)	19 (15.1)	126 (100.0)	2.29	
	20대	20 (57.1)	8 (22.9)	5 (14.3)	2 (5.7)	0 (0.0)	35 (100.0)	1.69	
	30대	22 (31.4)	23 (32.9)	6 (8.6)	7 (10.0)	12 (17.1)	70 (100.0)	2.49	20.53
	40대	31 (36.9)	22 (26.2)	8 (9.5)	7 (8.3)	16 (19.0)	84 (100.0)	2.46	
	50대	5 (15.6)	12 (37.5)	6 (18.8)	2 (6.3)	7 (21.9)	32 (100.0)	2.81	

#### ○ 폭력예방교육의 전반적 이해도

- 폭력 예방교육의 전반적 이해도 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3.94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됨
- 성별 나이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08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30대가 3.77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표 4-58〉 폭력예방교육 전반적 이해도(난이도)

(단위 : 명, %, 점)

		매우 어려웠다	약간 어려웠다	보통이다	약간 쉬웠다	매우 쉬웠다	총계	평균	$\chi^2$
전체		1 (0.5)	4 (1.8)	68 (30.8)	82 (37.1)	66 (29.9)	221 (100.0)	3.94	
성별	남성	0 (0.0)	3 (3.2)	25 (26.3)	40 (42.1)	27 (28.4)	95 (100.0)	3.96	
	여성	1 (0.8)	1 (0.8)	43 (34.1)	42 (33.3)	39 (31.0)	126 (100.0)	3.93	0.06
연령	20대	0 (0.0)	1 (2.9)	12 (34.3)	9 (25.7)	13 (37.1)	35 (100.0)	3.97	
	30대	0 (0.0)	1 (1.4)	27 (38.6)	29 (41.4)	13 (18.6)	70 (100.0)	3.77	
	40대	0 (0.0)	1 (1.2)	21 (25.0)	32 (38.1)	30 (35.7)	84 (100.0)	4.08	1.77
	50대	1 (3.1)	1 (3.1)	8 (25.0)	12 (37.5)	10 (31.3)	32 (100.0)	3.91	

○ 가장 도움이 되는 폭력 예방교육 내용

- 폭력 예방교육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21.1%), 폭력의 유형 및 실태(18.7%), 인식변화(14.8%)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폭력관련법(4.6%)이나 폭력과 소통과의 관계(4.3%), 폭력 피해자의 지원 내용 및 지원체계(6.1%), 폭력의 후유증(6.8%) 등에 관한 내용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낮았음
- 이는 폭력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은 폭력의 유형 및 실태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20.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22.8%)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아 남성은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여성은 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그리고 50대는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는 폭력의 유형 및 형태와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59〉 가장 도움이 되는 폭력 예방교육 내용

(단위 : 명, %)

		폭력의 원인	폭력의 유형 및 실태	폭력의 개인적·사회적 영향	폭력의 후유증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폭력 관련법	인식 변화	폭력과 소통 관계	계
전체		72 (11.3)	119 (18.7)	78 (12.3)	43 (6.8)	134 (21.1)	39 (6.1)	29 (4.6)	94 (14.8)	27 (4.3)	635 (100.0)
성별	남성	38 (13.8)	56 (20.3)	42 (15.2)	17 (6.2)	52 (18.8)	12 (4.3)	14 (5.1)	35 (12.7)	10 (3.6)	276 (100.0)
	여성	34 (9.5)	63 (17.5)	36 (10.0)	26 (7.2)	82 (22.8)	27 (7.5)	15 (4.2)	59 (16.4)	17 (4.7)	359 (100.0)
연령	20대	12 (11.5)	22 (21.2)	14 (13.5)	6 (5.8)	24 (23.1)	6 (5.8)	2 (1.9)	15 (14.4)	3 (2.9)	104 (100.0)
	30대	21 (10.3)	41 (20.2)	20 (9.9)	15 (7.4)	51 (25.1)	13 (6.4)	8 (3.9)	27 (13.3)	7 (3.4)	203 (100.0)
	40대	29 (12.2)	42 (17.6)	30 (12.6)	18 (7.6)	41 (17.2)	14 (5.9)	14 (5.9)	37 (15.5)	13 (5.5)	238 (100.0)
	50대	10 (11.1)	14 (15.6)	14 (15.6)	4 (4.4)	18 (20.0)	6 (6.7)	5 (5.6)	15 (16.7)	4 (4.4)	90 (100.0)

주: 중복응답

### ○ 폭력예방교육의 적합한 방법

- 폭력예방교육의 적합한 방법에 관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의(47.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영상 시청(17.8%), 강사의 강의 위주 교육(16.4%)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의견은 성별이나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다만 남성(6.3%)보다는 여성(12.1%)이 역할극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남성(10.5%)은 여성(6.5%)보다 토론 및 문답식 강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음

- 연령별로는 40대(24.1%)가 동영상 시청위주의 강의를 다른 연령대보다 더 적합하다는데 동의하고, 강사의 강의위주 방식은 20대(25.7%)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음

〈표 4-60〉 폭력예방교육의 적합한 방법

(단위 : 명, %)

		동영상 시청 위주	강사의 강의 위주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강의	역할극	토론 및 문답식 강의	기타	계	$\chi^2$
전체		39 (17.8)	36 (16.4)	104 (47.5)	21 (9.6)	18 (8.2)	1 (.5)	219 (100.0)	
성별	남성	23 (24.2)	13 (13.7)	43 (45.3)	6 (6.3)	10 (10.5)	0 (.0)	95 (100.0)	8.53
	여성	16 (12.9)	23 (18.5)	61 (49.2)	15 (12.1)	8 (6.5)	1 (.8)	124 (100.0)	
연령	20대	5 (14.3)	9 (25.7)	17 (48.6)	1 (2.9)	3 (8.6)	0 (.0)	35 (100.0)	13.71
	30대	8 (11.6)	10 (14.5)	34 (49.3)	10 (14.5)	6 (8.7)	1 (1.4)	69 (100.0)	
	40대	20 (24.1)	14 (16.9)	37 (44.6)	7 (8.4)	5 (6.0)	0 (.0)	83 (100.0)	
	50대	6 (18.8)	3 (9.4)	16 (50.0)	3 (9.4)	4 (12.5)	0 (.0)	32 (100.0)	

### ○ 폭력예방교육의 적정규모

- 폭력예방교육의 규모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52.1%)과 대규모 집합식 교육(41.1%)이 높았음
- 성별로는 남성(39.4%)보다는 여성(42.4%)이 대규모 집합식 교육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연령별로 보면, 대규모 집합식 교육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30대(40.6%), 40대(48.2%)가 많았고,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20대(57.1%), 30대(55.1%)가 가장 많았음

〈표 4-61〉 폭력예방교육의 적정규모

(단위 : 명, %)

		대규모 집합식 교육	소규모 토론식 교육	강사와 교육생의 일대일 교육	기타	계	$\chi^2$
전체		90 (41.1)	114 (52.1)	15 (6.8)	0 (0.0)	219 (100.0)	
성별	남성	37 (39.4)	49 (52.1)	8 (8.5)	0 (0.0)	94 (100.0)	0.78
	여성	53 (42.4)	65 (52.0)	7 (5.6)	0 (0.0)	125 (100.0)	
연령	20대	11 (31.4)	20 (57.1)	4 (11.4)	0 (0.0)	35 (100.0)	6.57
	30대	28 (40.6)	38 (55.1)	3 (4.3)	0 (0.0)	69 (100.0)	
	40대	40 (48.2)	39 (47.0)	4 (4.8)	0 (0.0)	83 (100.0)	
	50대	11 (34.4)	17 (53.1)	4 (12.5)	0 (0.0)	32 (100.0)	

○ 폭력예방 교육 후 인식변화

- 폭력예방교육 이후 인식변화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분야로 나누어 각각 조사함
- 성폭력 관련 문항인 '성폭력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다' 항목에 '아니다'라는 의견이 92.7%로 나타남
-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90.0%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도 높은 편임
-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는 불법이자 인권침해이다'라는 의견에 97.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매매 방지에 관한 인식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62〉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단위 : 명, %)

	그렇다	아니다	계
성폭력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다	16 (7.3)	204 (92.7)	220 (100.0)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10.0)	198 (90.0)	220 (100.0)
가정폭력은 누구든 신고 가능하며,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이다	206 (93.6)	14 (6.4)	220 (100.0)
성매매는 불법이자 인권침해이다	213 (97.3)	6 (2.7)	219 (100.0)

○ 성별·연령별 폭력예방교육 이후의 인식변화(성폭력 피해자 책임귀인)

- 성별 폭력예방교육 이후의 인식변화를 보면 '성폭력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성(5.6%)보다는 남성(9.6%)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인식변화를 보면 성폭력의 피해자 책임귀인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50대(21.9%)가 가장 높았고 20, 30대(2.9%)가 적게 나타남
- 예방교육 이후에도 성폭력에 대한 책임귀인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63〉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성폭력 피해자 책임귀인)

(단위 : 명, %)

		그렇다	아니다	계	$\chi^2$
전체		16 (7.3)	204 (92.7)	220 (100.0)	
성별	남성	9 (9.6)	85 (90.4)	94 (100.0)	1.28
	여성	7 (5.6)	119 (94.4)	126 (100.0)	
연령	20대	1 (2.9)	34 (97.1)	35 (100.0)	13.15**
	30대	2 (2.9)	68 (97.1)	70 (100.0)	
	40대	6 (7.2)	77 (92.8)	83 (100.0)	
	50대	7 (21.9)	25 (78.1)	32 (100.0)	

주 : \*p<.05, \*\*p<.01, \*\*\*p<.001

○ 성별, 연령별 폭력예방교육 이후의 인식변화(가정폭력은 집에서 해결)

- 가정폭력은 집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 이후의 인식 조사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연령이 높은 남성집단에 대한 가정폭력 인식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 할 수 있음

〈표 4-64〉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가정폭력은 집에서 해결)

(단위 : 명, %)

		그렇다	아니다	계	$\chi^2$
전체		22 (10.0)	198 (90.0)	220 (100.0)	
성별	남성	14 (14.9)	80 (85.1)	94 (100.0)	4.36*
	여성	8 (6.3)	118 (93.7)	126 (100.0)	
연령	20대	2 (5.7)	33 (94.3)	35 (100.0)	27.56***
	30대	1 (1.4)	69 (98.6)	70 (100.0)	
	40대	8 (9.6)	75 (90.4)	83 (100.0)	
	50대	11 (34.4)	21 (65.6)	32 (100.0)	

주 : \*p<.05, \*\*p<.01, \*\*\*p<.001

○ 성별, 연령별 폭력예방교육 이후의 인식변화(가정폭력은 범죄 : 신고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은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라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을 성별로 분석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40대(90.4%)가 가장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고 20대(97.1%)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65〉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가정폭력은 범죄 :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단위 : 명, %)

		그렇다	아니다	계	$\chi^2$
전체		206 (93.6)	14 (6.4)	220 (100.0)	
성별	남성	87 (92.6)	7 (7.4)	94 (100.0)	0.32
	여성	119 (94.4)	7 (5.6)	126 (100.0)	
연령	20대	34 (97.1)	1 (2.9)	35 (100.0)	2.72
	30대	67 (95.7)	3 (4.3)	70 (100.0)	
	40대	75 (90.4)	8 (9.6)	83 (100.0)	
	50대	30 (93.8)	2 (6.3)	32 (100.0)	

○ 성별, 연령별 폭력예방교육 이후의 인식변화(성매매)

- '성매매는 불법이자 인권침해'라는 항목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이후의 인식변화 조사결과는 성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냄
- 연령별로는 40대(94.0%)에서 약간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4-66〉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성매매)

(단위 : 명, %)

		그렇다	아니다	계	$\chi^2$
전체		213 (97.3)	6 (2.7)	219 (100.0)	
성별	남성	91 (96.8)	3 (3.2)	94 (100.0)	0.12
	여성	122 (97.6)	3 (2.4)	125 (100.0)	
연령	20대	35 (100.0)	0 (.0)	35 (100.0)	5.67
	30대	68 (98.6)	1 (1.4)	69 (100.0)	
	40대	78 (94.0)	5 (6.0)	83 (100.0)	
	50대	32 (100.0)	0 (.0)	32 (100.0)	

## 제 5장

###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1. 조사개요
2. 심층면접 결과



## 1. 조사개요

### 가. 여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개요

#### 1) 조사개요 및 대상자의 특성

-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여성폭력 피해자 및 시설종사자와 관련업무 종사자 29명으로 구성됨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기관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협조를 얻어 시설을 이용한 여성 중에서 면접 대상자를 소개받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면접을 진행하였음
- 심층면접 질문내용은 설문조사나 통계분석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에 관한 맥락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대략적인 내용만 미리 정리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심층면접 대상자 중 폭력 피해자는 모두 9명이고 피해자 중 성폭력 피해자는 4명, 가정폭력 피해자 5명으로 구성됨
- 심층면접 대상자의 연령은 30, 40대가 대부분이었고 10대(성폭력) 1명, 50대가 2명을 차지함
- 가정폭력 피해자는 모두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사례9는 1366을 통하여, 그리고 사례8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친척의 도움으로 직접 보호시설에 입소하였음

〈표 5-1〉 여성폭력 피해자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사례	피해유형	현재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비고
사례1	성폭력	10대	학교친구	
사례2	성폭력	30대	친척	
사례3	성폭력	30대	직장동료	
사례4	성폭력	40대	이웃	정신지체 장애
사례5	가정폭력	40대	남편	
사례6	가정폭력	30대	남편	
사례7	가정폭력	40대	남편	
사례8	가정폭력	30대	남편	
사례9	가정폭력	40대	남편	

## 2) 조사내용

- 성폭력 피해자 4명은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하기 어려워 피해자와의 라포형성이 충분히 되어있는 전문상담사가 연구자 대신 진행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모두 연구자가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조사내용은 주로 폭력 경험 이후 사건처리과정과 경찰 및 공공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및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5-2〉와 같음

〈표 5-2〉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내용

영역	세부영역
피해경험	피해경험(당시 나이, 대응,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
	심리적 상처, 자신의 변화 등
	경찰 및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도움 받은 내용
관련기관의 대응	이용기관 및 내용
	타기관 연계 경험 및 의견
	관련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사건처리과정의 어려움
정책개선점	폭력 예방방안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여성폭력 관련 정책제안

## 나. 관련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개요

### 1) 조사개요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

- 기관 종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 시설<sup>4)</sup>, 1366센터·해바라기센터와 경찰의 여성청소년과 담당직원, 사법인기관기 관인 보호관찰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행정업무 종사자인 담당 공무 원 등으로 구성하였음
- 심층면접은 사전에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 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함
- 심층면접에 참여한 기관 종사자는 모두 20명이고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포함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가 모두 14명, 여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3명, 사법기관, 기타 관련업무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됨
-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의 직위는 기관 대표가 9명, 관련업무 담당자가 11명이었음
-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4) 여성폭력 지원시설에 대한 구분은 편의상 상담소와 보호시설 두 가지로만 구분하였음.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진행하였음

〈표 5-3〉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사례	기관유형	분야	기관에서의 역할
사례10	상담소	가정폭력	대표
사례11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원
사례12	상담소	가정폭력	대표
사례13	상담소	가정폭력	대표
사례14	상담소	성폭력 · 가정폭력	대표
사례15	상담소	성폭력 · 가정폭력	대표
사례16	상담소	성폭력	상담원
사례17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원
사례18	상담소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원
사례19	보호시설	가정폭력	대표
사례20	보호시설	가정폭력	대표
사례21	보호시설	성폭력 · 가정폭력	대표
사례22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원
사례23	보호시설	성폭력	대표
사례24	경찰서	성폭력 · 가정폭력	담당자
사례25	경찰서	성폭력 · 가정폭력	담당자
사례26	경찰서	성폭력 · 가정폭력	담당자
사례27	사법기관	성폭력 · 가정폭력	담당자
사례28	사법기관	성폭력 · 가정폭력	담당자
사례29	기타	성폭력 · 가정폭력	담당자

## 2)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내용

- 기관 종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의 내용은 주로 해당기관의 여성폭력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타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방안, 지역협의체 현황, 그리고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제안 등을 포함하였음
-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사내용을 달리 구성하였고 종합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가해자 교정·치료, 그리고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방안과 개선점 등을 조사하였음.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 5-4>와 같음

<표 5-4> 기관 종사자의 심층면접 조사내용

영역	세부영역
기관의 역할	여성폭력 관련 업무
	폭력사건 처리과정
위기대응	기관 연계 및 협조 현황
	관련 매뉴얼, 지침 존재 및 이행여부
	기타 위기대응 관련 업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업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연계 현황
	지역협의체 운영현황
정책제안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가해자 교정, 예방정책 관련 정책적 제안

## 2. 심층면접 결과

### 가. 위기대응

#### 1)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

-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에서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후 경찰에 신고

했을 때 부부싸움으로 인식하여 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아 도움이 되지 못한 경험이 있음이 드러남

- 사례7과 사례6은 남편의 폭력행사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단순 부부싸움으로 인식하여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 경찰이 가정폭력을 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절망감과 동시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폭력을 당하기도 함

아주머니도 뭔가 잘못 했으니까 때렸을꺼 아니냐,, (...)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해서는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그런 상태로 돌려보낼때도, 같이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한 의미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는 또 촌에 사니까, (...) 촌에 경찰들하고 연계 되어 있어버리니까, 거의 지역 주민 편을 들어버리니까, (...)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 버리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통속이 되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사례7)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딱 와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얘기 아빠가 뒤에 딱 서있어요, '뭐예요' 라고 딱 하니까 '신고가 들어왔어요' 하니까 '아니예요 막 가세요' 이러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잘 푸세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정말 1분도 안서계시고 그냥, 그때는 (...) 벗어나기 힘들겠구나,, 신고해도 소용없구나,, 그거는 그 때 당시 그게 제가 가정폭력이라고도 생각을 못했던거지,, ,(...) 둘이 해결하라고 하니까, 한 대 맞았어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사례6)

-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경험을 한 피해자는 더 이상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 못하게 됨
- 사례7은 오래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읍면지역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진술하고 있음

제가 겪어보니까요,, (...)신고를 해도 좌절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건데, (...) 강력하게 그 아빠한테 무슨 교육을 받게 하든,, 가해자한테 그렇게 다시 재발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교육자체가 조금 많이 이렇게 마련되어가지고, 이수를 하지 않으면 크게 이렇

게 벌금을 받을 수 있게 하던지, 교도소를 갈 수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서, 더 이상은 이렇게 가해자가 안되게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7)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찰과의 접촉에서 피해사실이 접수 되어 조사를 할 때도 경찰의 태도에 불편함이 있었음을 호소함
- 특히 진술서 작성시 경찰의 태도가 고압적이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함
- 사례7과 사례8은 그런 경험이 있음을 토로하며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임에도 마치 가해자를 대하는 것 같은 경찰의 태도에 절망스럽고 상처를 받았음

뭐 모르잖아요,, 조서를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쓸 줄도 모르는데,,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우다,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썸수과,, 무사 경행수과, 이런식으로 내 몰듯이 작성할 줄 알았는데, 그 좀 그 말투가 원래 그런건지, 내가 그렇게 느끼는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피해자인데도, 더 많이,, 상처를 받고 왔어요 (사례7)

진술서 하라고 나오라고 그 이튿날인가 (...) 제 진술을 받아야 그 사람도 이제 풀어주는지 어쩌든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진술서 쓰라고 오라고 했는데, (...) 근데 그 여성계 수사관님이 남자여서 그랬는지 (...) 굉장히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 그 사람(남편)의 말을 전달을 해주시면서 (...) 아니, 가만히 있다가 왜 때리진 않았을까 아니냐, 뭔가의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냐? (...) 진짜 당황했어요 (사례8)

## 2) 피해자 보호 및 연계 과정의 문제점

-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이 피해자가 갈 곳이 없을 경우 보호시설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음
- 사례9는 경찰이나 보호시설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시설에 입소해야 함에도 경찰이 자신을 시댁식구로 하여금 보호시설까지 안내하게 하여 폭력 가해자(남편)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고 함

파출소에서 직접 경찰서로 안왔어요. 1366까지 (직접 왔어요), 다른 분 보호할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를 자기네가 비울 수 없다고 그래서 시누이 남편이 간 거예요. (...) 저는 1366으로 가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는구나. (...) 그래서 제가(1366에서) 1박을 했죠, 그 다음날 막 시누이 남편 전화오고 1366에 시어머니 전화오고 (...) 경찰이 보낸 보호자니까 믿고 저랑 심정적으로 연결된 보호자라고 생각하신거예요. (...) '시 누이 남편이예요' 하니까 여기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 그래서 빨리 피신을 시킨 거죠. 아침부터 계속 전화가 오니까 (...) (...) 그 다음날 퇴소를 했죠, 나왔죠, 근데 나왔는데, 갈데가 없죠. 그래서 그 날 밤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사례9).

- 위기대응시 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은 사례8의 경험에서도 발견됨
- 사례8은 폭력 피해 이후 갈 곳이 없는 자신에게 경찰이 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경찰서에서 상황종료를 시키고, 그 뒤로 병원을 거쳐서 이리로 오게 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제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기관(모자보호시설)이 있는지도 몰랐고 (...) 일가친척이 없고 원가 지금 여기서 기댈 수 있는 인력이 없을 때, 그 상황에서 병원까지 간 상황이면, 혹시 피할 데가 있는지라고 물어는 봤어요~;; 경찰에서, 제가 없다고 하니까 되게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사례8)

- 사례8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는 서귀포 지역에서 그나마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경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시설의 존재와 입소여부를 문의한 후에 시설입소를 안내했다고 진술함

피할데가 있냐고 했더니 경찰분이 여기에 존재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여기를 안해주셨어요, 지인도 없다 뭐 가족도 없다 피할데도 없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니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혹시나 제가 미리 알아보던 것은 있었어요, (...) 모자원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 그런데가 있는지, 혹시 여기에도 있느냐고 (...)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제서야 (보호시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례8)

- 경찰이 피해자를 연계할 때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그 뒷집언니가 이제 저를 도와주시니까 사실은 그 이번에 경찰에서 인계를 받아서 뭐 경찰에서만 직접 여기로 인계를 해주셔야 되는 걸로만 알고, (...)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게 맞다고, 그 경찰분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데, 뭐 짐을 챙겨주신다니까 그럼 짐을 챙겨서 이쪽으로 가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 그언니가 뭐 남편이 불쌍해서라도 그 언니가 얘들 거기 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수도 있는 가능성이 만에 하나 1%라도 있는 건데 (...) 본인들도 알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례8)

- 가정폭력 사건시 경찰의 위기대응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임시조치 신청 절차 등에서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함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절차를 간단하게 안내 받았으나 당시 경황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함
- 사례8은 보호시설 입소 후 시간이 지나 가해자에 대한 기소나 임시조치 등을 하려고 할 때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 그녀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내용이나 절차나 형사사건 기소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경찰의 안내가 필요함을 호소함

임시조치에 대한 절차를 아는 사람은 경찰이잖아요, (...) 지금 하시지 않으면, 그때 서류를 떼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번거로우실텐데 뭐 아니면 진술서를 쓸 때, 임시조치를 나중에 할려고 생각이 바뀌면 이러이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추가 설명을 해주면 좀 좋겠더라고요 (사례8).

-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의 의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

- 여성 성폭력 위기대응 기관인 제주 해바라기 센터에 경찰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피해여성의 간단한 진술을 받고 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경찰서에서 정식 조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진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함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서를 작성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조사를 받으러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거예요, (...) 담당경찰관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기초 조사인거죠, (...) 그럼 차라리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해서 고소한다 라고 쓸 수 있게만 해주고, 거기에서 차라리 조사를 받으면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조사를 다한거야 한시간정도, 다음에 또 가서 경찰관한테 진술을 해야하는(번거로움이 있어요) (사례18)

### 3) 피해자 권리고지 현황

-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피해자 권리고지에 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당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면이 있었음을 지적함
- 사례8은 서귀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당장 갈 곳이 없어 경찰의 피해자 권리고지가 위기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피해자 고지라고 하는 거는 처벌이라든지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문 같은 거는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설을 이용 할 수가 있고, (...) 근데 1366 이렇게는 나와있는데, (...) 그 당시에는 여기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 여기 쉼터가 있는데, 거기로 가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사례8)

- 사례8은 피해자 권리고지를 비롯,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적 절차나 내용 등에 관해서도 경찰의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했다고 주장함

(피해자 권리고지서) 그거를 그냥 용지로만 준거예요, 저한테 그 진술서를 받으면서 임시조치를 할래요? 아니면, 뭐 이런 거주지나 이런게 있는데 (...) 그 외 사항이 있는 줄 몰

랐어요, 그 뭐지 그 임시조치라는게 친권제한도 있고, 뭐도 있는데, (...) 그냥 직장이나 그 뭐 거주지에서 나가는 방법, 저희와는 일,,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방법이 었기 때문에 제가 좀 고사를 한거죠, 그리고 진술서를 다 쓰고 나서 그 형사처벌 하실꺼냐 뭐 이렇게 돼서 선택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런거를 해봤어야, 형사처벌은 뭐고, 형사처벌을 하면 뭐가되고 아니면 뭐가 되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아니까...) (사례8)

- 경찰의 피해자 권리고지가 실제로 피해자에게는 피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설명하는 피해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피해자권리 고지서)이름에 싸인은 했는데 (...) 지금은 제가 말을 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기운 차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하나도 만들렸을 것 같아요. 눈 뜨기도 힘들었고 워낙 맞은게 너무 심하고 다리도 절룩절룩거리고 있는데 그런 말이 사실은 하나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사례9).

#### 4) 경찰의 역할 (피해자 보호 VS 가해자 격리)

- 여성폭력 관련 경찰의 역할이 최근 세분화되고 확대되고 있음
- 경찰의 여성폭력 관련 업무처리 현황은 여성폭력 사건을 일반폭력 사건과 같이 처리했던 예전과 달리 여성청소년 부서를 따로 만들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가 현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함

그동안 경찰관들이 (...)일반형사절차와 겹쳤다면, 최근에는 이제 여청수사 팀이라는게 생기면서 가정폭력 신고 시에 여청사 팀이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는 건 이제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와의 우선 격리조치. 먼저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는 뭐 가해자 처벌 조치는 종전과 같이 이제 체포나 이런 걸 통해서 데리고 오고 다만 좀 달라진 거는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두텁게 뭐 지역 이런, 1366이라던지 뭐 이런 데 연계하고 그 다음에 아동,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데를 연계를 해서 사후 모니터링 과정이 좀 더 디테일

해졌죠. (사례25)

- 그럼에도 실제로는 경찰의 가정폭력 처리 방안이 가해자를 격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

사건접수가 되었고 (경찰이) 집에 오셨고 두분이 (파출소)소장님 같아요. 소장님하고 다른 분 오셨는데 상황이 널브러져 있고, 남편이 그래도 폭력을 멈추지 않고 하니까 (...) 경찰이 와서 이제 그 단절을 시키고, 피해자 누구씨 이상황에서 이 집에 놔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으로 봄에서는 그래서 가해자는 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피해자 분을 임시로 저희가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사례9).

## 5) 경찰과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 여성폭력 사건 관련 경찰의 역할은 위기대응 차원에서 현장의 응급조치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기본으로 수행하는 것임
-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수행 이외 심층적인 피해자 보호와 상습적으로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피해자 보호 및 폭력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

상담원이요? 필요하죠. 사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가정을 계속 케어 해나가고 하는 거는 경찰의 역할은 한계가 있거든요. (...)상습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현장을 격리조치하고 가해자 데리고 오고 피해자 저기 1366 데려다주고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역할에 머무는, 상당치료 연계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건데, 그걸 사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들이 사실 필요한데... (사례25)

- 경찰이 여성폭력 관련 시설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는 위기대응시 피해자를 보호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함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거나, 접근성이거나 인력부족의 어려움 등으로 1366에 피해자를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 알콜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자

## 를 보낼 곳이 없을 때 경찰의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냄

통합대응이라는 말이 있어도 좀 맞는 거 같은데. 우리도 경찰이 여기 데려다주면 해결된다라는, (...) 뭔가 명확한 게 있으면 저희는 뭐 거기서 사업 케어를 해주니까 그래서 저희도 본청에서도 고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기관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기도 안 받아주고 저기도 안 받아주고, 우리가 여기 피해자 여기 재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통합대응이라는 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례25)

- 여성긴급전화 1366 종사자는 알콜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피해자를 위한 광역센터가 생겼으나 긴급피난처가 따로 없고 24시간 대기에 한계가 있어,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호소함

연계할 때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특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거나,, 자기네 그 입소 그,, 대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콜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제주도에 지금 그렇게 갈 때가 잘 없어요, (...) 광역센터가 생겼잖아요,, 24시간 하기는 하는데, 긴피(긴급 피난처)가 없더라고요 (사례20).

-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과 경찰과의 공조가 되고 있는 편이나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집에 있는 선생님이 대기해 있다가 나오게 되다보면 한 시간, 가는데 한 시간, 빨라도 가까운데 있으면 삼십분, 그러니까 한 시간 반,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그 지원을(...).내담자들도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사례20)

- 특히 가정폭력 사건이 대부분 밤에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기대응 기관의 적은 인력, 차량의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경찰분들은 2인1조로 항상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근무는 2인 1조가 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럴때 우리는 두 명 밖에 없어요(...), 위기시에 폭력상황이 일어난 것 같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캐치를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하죠 (...) 우리가 이제 두 사람, 2인 1조로 가야 되고, 1366차량은 경찰차 처럼 안전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진짜 여기 가다가 흥분한 사람은 뛰어내리는 분도 있어요, (사례20)

## 6) 서귀포 지역의 위기대응의 어려움

- 여성폭력 관련 시설은 가정폭력 상담소 단 하나밖에 없는 서귀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정폭력 상담소, 경찰, 서귀포 의료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필요 한 사안마다 협력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위기대응기관인 제주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할 지정병원이 부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경찰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경찰 지원이 되는 거죠. 경찰청에서. 그래갖고 같이 동행을 하고 (...) 수사를 연계한다던가 그런 게 있고 또 그 와중에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는 (...)의료원 같은 데서 개인정보동의 얻어서 이제 상담소 의료지원하고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세 개가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 경찰에 그 가정폭력 그 상담원도 있지만 그런 일시적이고 초기단계 상담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이상에 지속적인 상담이고 또 계속 이렇게 사후 관리가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연계가 되기도 하고 그때는 저희한테 동행요청을 하죠(사례13)

- 서귀포 지역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하나밖에 없다보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성폭력 뿐 아니라 혼자서 여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결국 여성폭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전문성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소가 하나다 보니깐 제가 이제 뭐 일일이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문화도 하고 결혼중계업체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다보니깐 약간 이게 또 거기에만 관심 두기에는 조금 힘든 점도 있어요(사례29).

- 경찰의 입장에서는 위기대응 시 서귀포 지역에 피해자를 보낼 곳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시설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중간지점에서 연계하는 등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함

(1366 이용하기가)그 여기서 거기까진 너무 머니까 저기 동광 쪽에서 중간에 만나서 이제 그렇게 (연계) 하고 있고 해바라기센터도 저희가 저희도 해바라기까지 가서 이용하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멀리까지 가는 거죠. (...) 원스톱분소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 (사례26)

- 제주시는 한라병원·제주대병원·예나산부인과·제주의료원을, 서귀포시는 서귀포의료원을 각각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원스톱지원서비스는 한라병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여성 폭력 피해자인 경우 정신과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역시 현재는 한라병원에서만 지원되고 있어 서귀포 지역 피해자들의 불편이 많음
- 이러한 상황에 일선 경찰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임시로 서귀포 의료원에 부탁을 해서 초동조치 부분을 의뢰하고 있지만 정식 지정병원이 아니어서 성폭력 피해자 대처에 한계가 있음

성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는 사실 뭐 해바라기센터가 너무 멀다보니까 저희가 서귀포의료원하고 그 MOU체결을 해 가지고요 그 성폭력 응급치료를 서귀포의료원에서 좀 구비하고 있다가 그 산부인과 그 교수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초동조치부분을 좀 담당을 해주시죠. 가정폭력은 서귀포의료원 그 되는데 뭐 성폭 그 지정병원은 (...) 저희가 이제 좀 사건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의료원에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도 그걸 수락을 해 가지고 (사례26)

- 서귀포 지역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들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소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임시보호소는 피해자를 잠시 머물게 할 뿐 관리와 보호 가 전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입장은 장소선정에 유의한다거나 위험하지 않은 피해자 를 선별하여 보내는 등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연구자 :임시보호소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서귀포만 하더라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구체적인 장소는 말씀 못드리지만은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 시내쪽, 동부쪽, 서부쪽 이런 식으로 지역을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 모텔이나 이런 곳은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한다 해 가지고 리조트나 좀 콘도 이런 식을 바꿔가고 있는 추세고요. (...) 모든 피해자를 다 그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좀 차별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혼자 두면 너무 위험한 상태일 것 같은 사람은 보내진 않죠 (사례26).

##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 피해여성의 상황 및 보호시설 입소 과정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으로부터 심한 신체적 폭력의 반복으로 죽을 것 같은 위협은 느낀 이후 상담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남

이 생활 정말 더는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계속하는데,, 얘기는 가졌지, 그리고 얘기는 낳았지,,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낫다,, 아빠 없이 키우는 것 보다는 낫다,, 이생각 하면서 사는데,, 나중에는 내가 지옥 같았어요,, 정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 거의 죽을 뻔했어요,, (,,,) 막 때리고, 허리띠로 때리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 가서 문 닫아놓고,, 아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그길로 도망나왔어요 (사례5)

- 피해자 보호시설은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있어도 직접 입소할 수 없고 상담소를 거쳐서 입소하게 됨
- 피해자 중 상당수가 폭력 피해 이전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 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높지 않음<sup>5)</sup>을 알 수 있음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쉼터라는 곳이 있다, 거기 한 번 들어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화했는데 쉼터라는 게 따로 없더라고요,, (...) 어떤 쉼터를 원하냐고 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첨에 해서 이제 안되니까,, (...) 한번 더 쉼터라는 곳에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 114에,, 전화해서,, 불러봐주세요,, 그러니까,, 가족사랑상담소가 있어서,, 거기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하고,, 거기(쉼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례5)

-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거치거나 혹은 직접 상담소를 통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다고 함.

원장님(보습학원)집에 애기랑 데리고 무턱대고 가서 옷 다벗고 사진찍으라고 해서, 사진찍어 달라고 해서 찍고 (...) 엄마가 저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서부 경찰서 가서 이만이만하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집으로)갈꺼냐, 그래서 못간다, 죽어서 난 무서워서 못들어간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1366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1366이 있다는 걸 처음알았어요,, (,,,), 4일정도 울고 있다가,, 쉼터에 갔죠(사례6)

## 2) 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어려움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외출이 제한되고 휴대폰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실제로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직장을

---

5) 여성폭력 관련 시설 인지도 조사에서 성폭력상담소(50.8%), 보호시설(40.8%), 가정폭력 상담소(58.0%)로 나타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4)

다닌다든지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하기가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장기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단기간 머무를 수 있는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시설 종사자의 의견이 있음

1366이나 뭐 하루, 이를 이렇게 보호는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쉼터를 들어가게 되버리면 직장도 그만 둬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런 부분에 닥치게 되잖아요. (...) 일주일 동안 단기로 쉴 수 있는 부분, 그게 좀 더 필요한 거 같애요. 왜냐면 그거를 벗어나서 쉼터로 들어가게 되버리면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지금 같아야 될 뭐 카드 값이나 그런 게 막 염려가 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례11)

- 최근 여성폭력(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시설 종사자는 다양한 원인진단과 함께 대안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설입소 관련 규정정비를 포함하여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전체적으로, 쉼터가 (...) 입소율이 요즘 많이 적어지고 있기는 해요, (...) 경찰이 일단 긴급 피난처를 만드는 (...) 그것도 영향을 조금 받을 것 같구요. (...) 또 한편으로는 점점 시대가 변화하다보니까,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 지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개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 지금은 방법들을 많이 인터넷이나, 친구나 이런 도움으로 알게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례21).

-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에 장애가 되는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음
- 피해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부분을 포기해야 함
-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지원 때문에 가족들이 보호시설 입소를 반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

장애인들이 그거 원가족에서 나오기가 힘든 부분도 있구요, (...)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뭐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족이 그 부분을 갖다가 놀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입소가 되는거가 (...) 조금 힘들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례22)

### 3)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기관간의 관계

-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기까지는 대부분 위기대응 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하여 입소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경찰에서 직접 연계할 경우 폭력 피해 사실이나 입소희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함

저희는 경찰에서 직접 연계를 거의 안받아요, 보통 1366이나, 원스톱지원센터? 경찰인 경우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하여거나, 아니면 아주민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입소하죠 (사례18)

- 보호시설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직접 피해자를 인도받지 않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혹은 해바라기센터를 거쳐서 수용하는 이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주요 원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피해자가 많다보니 갑자기 한밤중에 방문하는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 폭력피해자인지, 혹은 장기간 입소를 희망하는 피해자인지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저희는,, 2008년 까지는 기관 연계에 한계를 안뒀었는데, 근데, 2008년 이후부터는 저희 연계되는데는 1366, 상담소, 그다음에 원스톱 그정도 한계를 두었어요. 전에는 경찰이나 이런데서 연계를 직접 받았었는데, 경찰같은 경우에는 밤 뭐 10시 12시에도 피해자를 연계를 해요. (...)밤 11시에 땅동하면 전체가 긴장하고, 경찰복을 딱 보면, 이분들의 외상이

다시 이렇게 재경험되거나, 불안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거예요. (...) 또 하나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술이 취해서 오신분인지, 노숙자인지 구분없이 연계를 하는거 예요(사례19)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위기대응 전문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 센터의 상담을 거쳐 장기간 입소를 희망하는 피해자만을 수용하는 설정임
- 보호시설 입장에서 경찰의 의한 피해자의 보호시설 직접연계를 꺼리는 이유는 경찰에 의해 시설이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이제 1366 같은 데는 며칠, 거기서 이상일 있다 보면, 상담을 계속하다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확인이 되는데, 그런 어떤 클리닝 과정이 없이 쉼터로 연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2008년부터는 상담소, 1366, 원스톱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적인 연계는 어려웠고, 또 하나 경찰에서(직접연계) 하다보니까, 노출의 문제가 생기는 거 예요(사례19).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하고, 그러니까 지금 관련,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 대부분은 저희 원에 바로는 안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번 거쳐서 오는게 더 입소자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례22)

#### 4) 보호시설 운영상 어려운 점

- 보호시설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것은 입소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음
- 입소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대부분 남편의 직장의료보험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음
-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도 보호시설 입소자로 등록이 되어 의료비 혜택을 받기까지 약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응급치료에 어려움이 있음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또하나는 이게 선정하는 과정이 한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시설 수급자 판정이, 얼마 전에 저희 들어와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되신 분 같은 경우는 들어올때, 이미 폭력으로 인해서 팔을 다쳤단 말이예요(...) 한달이라는 조금만 단축시켜 달라고 해도 그게 안되는 거지(사례19)

- 또한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호시설 입소자의 관리번호가 일반 주민번호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함
- 특히 병원 관계자의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을 경우 주민번호 제출 요구에 간혹 당황하는 경우도 있음

그 관리번호가 의료비 청구할 때 엄청, 그 번호 자체가 병원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많이 나오요,, (...) 시스템상에서 아무런 오류없이 딱 되는,, 그러니까 번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의료보험 조합이랑 연계를 해서,, (...)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도 시설 카드로 발급해서, 아동 보육료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 저희 쉼터 이름으로 만들어서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는 한데 (...) (어린이집에서) 정원외로 받든지, 그쪽에서 시청에서 결제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 행정기관에서 바로 결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죠 (사례18)

- 또한 아동을 동반하고 입소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아동이 들어올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 살던 곳에서 등록취소가 안되어 근처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근처 어린이집에서도 정원이 다 차면 추가로 받아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시설 명의로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직접 시청에 결재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함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 아이가 들어오면 이제는 제 이름으로 보육카드가 나와서 등록이 돼서 보내기는 해요. (...) 그런데 그전에 있던 곳에서 취소를 안해주면 여기에 못 가지, (...) 이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 정원이 다차면 못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거가 뭐냐하면 정원외로 받아달라는거죠. (...)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 어린이집 원장이 돈을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시청에서 직접 줬었어요,

### 그 시스템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거지 (사례19)

- 시설 종사자에 의하면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는 시설 입소자의 심리적 치료·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이혼여부 결정,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이 있음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인 6개월(3개월 연장 가능)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고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기간임

처음에 들어와서 한 두달동안은 이혼을 할꺼냐 말꺼냐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 나머지 부분에서 부터는 교육도 하지만, 직업훈련도 하고 하다보면 이미 퇴소날짜가 딱 되면 이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립의 준비가 안되었는데,, (...) 그러면 이혼하고 결정하고 이제 뭔가 해봐야지 배워야지 했는데 나가야되는 시기가 오는거예요(사례19).

- 보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폭력 피해자(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자립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가장 큰 문제는 주거지원의 부족으로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

근데 문제는 집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런부분이, 가정폭력으로 해서 조금 나왔을 경우에는, 못해도 2-3년 정도는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줘 가지고, (주거지원이)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느낀게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갈려고 했는데, 못갔거든요 (사례7)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있으나 시설 입소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가 주거지원을 받아 살아 살 수 있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어 근본적인

###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있지만 가산점이 없어 다른 취약집단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사실상 쓸모가 없음,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가 실제로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현장에서야 확인하고 실망했다는 진술에서도 알 수 있음

임대주택우선권이 저희 한테 있잖아요,, 사실 그거 입소사실확인서, 가지고 가도요,, 무용지물이거든요, 안받아줘요,, 현장에서,, (...) 거기,, 왜 뭐 한부모가정에는 몇 점,,얻고, 뭐 이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선 순위라고만 되어 있는 거지,, 현장에 가면 뭐,, 뭐 이거, 필요없어요, 갖고 가도,, 제가 그걸 두 번 경험을 했거든요,(사례6)

### 5) 장애인 피해자 지원방안 개선 필요

- 현재 제주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은 제주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한 곳임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주로 해바라기 센터나 장애인상담소와 연계하여 입소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1366센터를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단기간 입소요구가 있을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는 1366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데다가 단기간 입소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나 성매매 피해자를 단기간 보호할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정말로 시설에 입소를 딱 해야하는 그런 사람만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위기상황이지만은 웠다가 하루 밤만 자고 가버리면은 다른 입소자들의 얼굴이 다 노출되고,, 다른 입소자들한테는 그게 보호가 안되는 거잖아요. (...) 1366에 아직까지 장애 시설이 편의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커텐도 이렇게 해 놀은게 혹시나 될 수 있으면 (...) 1366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고 하면은 자체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받을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은 드렸어요,(사례22)

- 성폭력 피해수사를 위한 진술조력인 양성 필요
  - 장애인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양성 필요
  - 장애인(정신지체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때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대신 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2013년 성폭력특별법 개정 이후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는 활동하는 진술조력인인 거의 없음<sup>6)</sup>
  -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진술조력인 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 있음

(장애인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뢰자 동석을 하면 CD를 촬영하면서, 피해 녹음을 하고,, CD를 재생해요,, 재생해서 저희들한테 다 보여주고, 이게 맞냐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하고 오고,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법률 조력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법에서 (사례16)

## 6) 보호시설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 회복 프로그램과 자립 · 자활에 필요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피해자의 의견으로는 심리치료 ·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개인마다 심리적 상처나 회복속도 등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함

인문학 강의하고, 뭐 미술심리하고, 뭐 이렇게 한 거 같고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막 했던 했는데, (...) 사람마다 회복하는게 다르더라고요. (...) 저는 이거를 프로그램을 골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 근데 일률적이예요. 이게 1개월 차랑 9개월 차랑 같이 넣어 놓고 하잖아요. 일괄 프로그램 적용이니까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피해자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사례9)

- 자립 · 자활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는 때로는 안전을 이유로 충분한 자활 교

---

6) 관련시설 종사자의 중언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폭력 진술 조력인은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피해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활교육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임

직업재활 건의 했는데 안전을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 다른 분은 조리사자격증도 따고, 피부미용사도 땄어요. (...) 근데 저는 아무 자격증도 못 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올 때 가정폭력상담원교육 보내달라고 했어요, (...) 세 번째, 네 번째 거절당한거예요. (...) ‘그냥 퇴소해서 가정폭력상담원 받고 싶어요’ 했더니 (...) ‘안전하지 못한데’... 최악의 우려를 던져 넣는 거예요,, (...)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세분은 지금 다 직업자활하고 있다고요‘ (...) 저 혼자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위험해진다는 건, 시설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건,, 그거는 동의해요,, 그치만 제주도에 있는 시설에 (...)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밀착을 조금 해달라 (사례9)

- 장애인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자 수가 적어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따로 받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입소자의 경우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경우가 많아 개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마련과 지원이 필요함

예산 관련해가지는 치료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시에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한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치료회복인 경우에도 주로 집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집단도 문제가 되는게 저희는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을 집단으로 한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 장애인을 집단으로 상담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례22).

## 7) 서귀포 여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부재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부재한 서귀포 지역에서 모자일시보호시설이 가정폭력 피해자 일부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전용 쉼터가 없어요. 한곳은 모자 거긴데, 그게 애매한 거예요. (...) 이분들 가정폭력 피해자를 그 케어해서 가게끔 했어요. 근데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또 그게 애매해요. (...) 경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설이 없으니까 거기가 전문적인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아닌데도 그걸 이용을 하라고 하니까 맡길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사례13).

- 서귀포 지역 모자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도 함께 보내다 보니 경찰이나 관련기관에서도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앞서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경찰에 의한 직접적 연계로 피해자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경찰도 혼동하고 그리고 쉼터로 지원하면 그 비공개여서 원래가 경찰이 거기에 지원을 못 해요. 중간에 거기 만나서 상담원이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직접 (가기도 하고) 그 쉼터는. 또 어쩔 때는 또 자기네 뭐하면은 또 중간에 나간다 했다가 이게 그게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 이제 서귀포에서는 전문 쉼터가 (...) 구분이 돼서 왜냐하면 모자지원센터인지 아니면 가정폭력피해자 전용 쉼터지를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죠 (사례13)

- 그러나 서귀포 모자일시보호시설 종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에 의한 직접적인 연계로 입소자를 수용하고 있음이 드러남
-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2015. 7 현재) 공개시설로 남아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저희가 이제 한 부모 가족 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 그렇지만 이제 서귀포에 그 긴급 1366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급하니까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고 그 분들이 또 오래계시면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제 받고는 있어요, 있는데, (면접자 : 그러니까 여기는 긴급보호 플러스 장기보호가 다 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례23)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경찰 연계로 오시고요, 평소때 이 쉼터를 알고 계시는 분이나 다녀가신 분들 중에서 재폭력이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전화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례25)

- 서귀포 지역 모지보호시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에 의한 직접적 연계와 시설의 공개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장기간 머물러 있는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다는 종사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프로그램기획은 딱해 놓고 있는데, 이 어머니들이 오셨다가 하루 있다가 가버리고, 이를 있다가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기가 힘이 들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래 계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야지 자립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일 일하러 나가신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잘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례23)

- 서귀포 지역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 부족의 문제, 특히 성폭력 상담소의 설립의 필요성은 수 차례 논의된 바 있음(2014, 여성가족정책과 내부자료)
- 성폭력 상담소의 부재 이외에도 성폭력 전담 병원 부재, 1366센터나 해바라기 센터 등 위기 시 연계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부재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여성폭력 피해 발생시 위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정폭력상담소를 (성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논의 중이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추진단계는 아니고 (...)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이게 되는데 (...) 성폭은 (...) 한라병원 통해서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그 뿐만 아니라 또 상담소에서는 이제 보호시설이 없으니까 (...) 이분들이 뭐 보호시설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제주시로 다시 연계를 해야되고...(사례29)

## 8) 피해자 지원체계의 통합 필요

- 본 조사 결과 피해자 지원에 있어 통합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체계가 이원화 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성폭력의 경우에는 거의 YWCA 쉼터에다가 많이 데려가는데 (...)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 미성년자인 경우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성인인 경우 강간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사례28)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이원화는 피해자에게도 인식되고 있음
- 여성폭력 관련 시설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이나 법률지원, 정신적·심리적 치유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돈을 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함

예전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찾아와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나 검찰에서 얘기를 다 해줍니다. 피해자분들 안내를 해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고 여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 대체적으로 여기는 돈을 주는 기관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사례28).

- 관련 기관 종사자는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통합적 운영은 관련시설 모두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원스톱에서는 원스톱 나름대로 자기네가 심리치료도 하고 있고 뭐 진료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단지 경제적 지원만 안하는 거 뿐이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합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예를 들면 우리는 강력 범죄니까 살인사건, 살인미수만 하고 성폭력인거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하고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은 그냥 가정폭력에서 일어난 이거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고 있어서... (사례28).

- 현재 집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예산이나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 이외에 지역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지원관련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광역단체가 있더라구요. 그니깐은 이게 이제 가정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살인·강도 뭐 이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어떤 시 자체 예산을 이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 쓸 수 있도록 (...) 꼭 통합은 아니지만 그 조례를 통해서 원가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자치도가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례25)

## 9) 관련기관 간 협력의 문제점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폭력 피해자 연계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은 경찰과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식의 차이와 소통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함
- 특히 상담소나 보호시설 입장에서는 경찰의 자기중심적 업무처리 방식과 개방적인 협력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경찰과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는)경찰은 이런거 할꺼다 너네 같이 해보자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냐고 하거나, 이게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어, 경찰에서 이미 나름대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해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오니까, 거의 수직적인관계처럼 현장에

서 느껴지는 거지 (...)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서 과연 이게 필요할까 그럴때, 피해자의 입장이나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동일할까 이렇게 고민이 우리는 되는 거예요(사례19)

-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시설의 노출이 없도록 비밀보장이 중요한 보호시설의 입장에서는 시설 및 피해자의 보호를 전제로 협력이 중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 보호시설과 상담소간의 협력은 잘 유지되고 있으나 경찰과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찰의 인식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상담소, 쉼터, 경찰 지금까지 그 구조잖아요?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안전부분이랄지 이 세 곳이 잘 되면 정말 좋겠고요,, 상담소하고 쉼터는 오히려 좀 더 많이 소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 담당 부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 특성상 비밀이 유지되면서, (...) 좀 더 긴밀하게 유지가 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21).

- 경찰과의 협력 뿐 아니라 연계전문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나 1366 센터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음
- 특히 피해자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때 피해자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피해자에 대한 부분적인 서비스만 지원할 것인지, 혹은 아예 피해자를 인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17은 상담소를 찾아온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법적처리할 의사가 있어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 해바라기 센터에 가해자에 대한 사건처리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한다고 하여 의견충돌이 있었음을 진술함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모셔가서 다른 코멘트가 없다면,, 당연히 이쪽에서 지

원하는 케이스구나 라고 받잖아요,, (...) 저희가 다 의논 드리고, 다 해서 간건데,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하신다거나, 사건 조사 다 끝나고 피해자 모시고 왔는데, 사건 내용 공유하고 한다거나, 그러면 어쨌든 공유할려고 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 거고 (...) 조심스러운게, 피해자의 사건을 여기알고, 여기알고, 다 거쳐서 아는 거는 필요하지 않은거죠,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거지 (사례15)

- 이러한 의견충돌은 결국 시설들이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상담소 종사자는 연계전문기관인 해바라기 센터가 원스톱센터와 통합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연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이유로 상담소 종사자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이나 절차가 원활한 업무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해바라기센터에서) 작년부터는 연계가 거의 없어요, 이전에는 (...) 거기에서 긴급상담을 하고 고소건 진행하면, 저희쪽으로 연계를 하셨었거든요,, (...) 점점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그런가? 되게 절차상 (...) 더 복잡해지는 거죠,, (...) 공문으로 요청해야 부분이 당연히 있죠, 아까 말한 연계의뢰서를 보낸다거나 막 이런것,, (...) 그 건건마다 자기네가 여기로 연계해놓고는 거기에 관련된 거를 물었을때, 그걸 다 그때마다 뭘 처리하고 서류를 보내라고 하고 하는게, (...) 한편으로는 너무 소모전 같이 느껴지는, (...) 공문만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 힘이 막 빠지는 거죠,, 뭐 하나를 연계하거나 할 때, 불편함을 느끼면 그다음부터는 안하게 되는 거죠 (사례15)

- 해바라기 센터가 설립된 이후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주로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담소와 경찰의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경찰도 한편으로 해바라기가 아까 말한대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안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 했고, 경찰하고, 사건을 해바라기한테 가는게 아니고, 경찰은 오히려 상담소로 연계하는 건수가 꽤 되거든요 (사례15)

- 해바라기 센터의 종합적인 기능에 대한 비판은 현장의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들에게서 지적되고 있음
- 성폭력 위주의 위기대응 기관이라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다보니 위기대응 기관이라는 기관 고유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해바라기 센터에서) 자신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는게, 연계기관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 그러면 아예 가폭을 빼버리던지, 그렇다고 가폭을 아예 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폭 피해자 다 지원하고, 지금 그 컨퍼런스 사업도 받아서 가폭도 (...) 본인들은 성폭이 위주라고 하고는, 막 이것저것 다 받아오고 (...) 다행 수 있는데, 다 하지는 않고, (...) 되게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얘기할때는 다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까 말한대로 그렇게 안보이는 그게 좀 이상한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사례15)

- 보호시설 관계자의 주장은 위기대응 기관인 1366이나 해바라기 센터와의 연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시설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할 인력의 부족문제가 있다고 진술함
-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찰에 의한 시설의 노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여성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인식개선이 매우 필요함

1366이나, 해바라기 센터나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해바라기 센터가 센터에 데려다 주지않아요, 그래서 1366을 이용하는데 (...) 저희 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모시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해바라기센터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 그거에 대해서 해바라기센터에 얘기는 했었거든요,, (...) 노출위험성 그리고 인력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그런 것들 때문에,, 어,, 그분들이 다시 또 1366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면, (...) 그리고 또 해바라기센터는 연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파견되는 경찰은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야 하는데... (사례18)

- 해바라기 센터의 기능은 위기대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지속적인 관리나 지원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담당하는 것이나 이러한 기관의 역할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위기대응 역할 이외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상담소와 중복논란의 문제를 야기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심리치료 기능이라든가 상담 기능이라든가 지속사례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경우에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죠. (...) 저희는 성폭력에 주로 통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성인 다하니까 성폭력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요. 가정폭력에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각 기관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게 더 많죠 (사례14).

-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각 기관의 역할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매뉴얼이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매뉴얼이 따로 없다보니 피해자의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밖에 없고 피해자의 욕구는 기관의 입장에서 재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음

(연구자 : 연계관련 매뉴얼은?) 네. 그거는 (없고)내담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구요. (...) 내담자들은 저희가 이런 세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치료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주거나 (...) 의료적 기능,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껴서... (사례14)

## 10) 여성폭력 지원시설의 중복기능 점검과 특화방안

- 여성폭력 관련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강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여 중복된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당 기관 고유의 특화된 기능을 살리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시설 종사자는 각 기관들이 해당 기관의 고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함

살아남기 위해서 기관들이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되는 일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게 맞아요, 그게 기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것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것 저것 다 하는 건) 이런 거는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유기라고 나는 봐요, 고유의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적이나 살아남기 위하거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일까지 갖고 와서 하는 건, 그 기관은 짧은 시간에는 빛이,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전체를 봄서는 방해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사례19).

이전에는, 우리가 인건비도 부족하고, 운영비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건비도 처우도 개선이 되고, 퇴직금하고 사대보험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고유기능을 해야만, 제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례19).

- 각 기관의 특화된 기능과 역할을 정하는 것은 기관간의 협의로 가능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음
-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특화와 전문화를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협의체 혹은 역할조정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함

만약에 이 상담소에서 이게 정말 적합하게 정말 잘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밀어주고 (...) 만약에 가폭이다 가해자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해서 보내라 그렇게 하면 될거고, 뭐 어디 다른쪽에서는 00에서는 부부상담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쪽 부부상담 전담을 하든지, 그렇게 분배를 해도 될 거 같애요. 만약에 도에서 할 힘이 없다면 협의체서 협의체 안에서 이루어져야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이렇게 할게 너는 이렇게 서로가 한 발 씩 양보하면 되는데 자기거를 쟁기다 보니까 그게 안되는 거잖아요(사례11).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특화된 기능을 구별하는 것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음
- 따라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관간의 중복기능을 최소화하고 특화된 기능을 살리려면 기관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

특화라고 할 만큼에 뾰족한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 성폭력특화가 모호한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큼에 모두 다가 아, 이쪽 기관은 이거를 잘해. 그러면 요 기관은 못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비슷비슷하게 이걸 가지고 있고 ... (사례14)

## 11) 지역협의체 운영

- 여성폭력에 관한 업무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가 최근(2015년 이후) 활발히 구성 및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협의체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관련업무에 관한 기관들의 협력이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은 정례적인 만남과 실제 활발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역협의체) 막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 상견례 차원에서 저희가 위촉한 거니까 경찰이 주도해가지고 (...) 그게 뭐 사실 보여주기식 행정 밖에 안되니까 (...)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아쉬우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필요한 걸 느끼는데 안되니깐은,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이렇게 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업무를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례26).

## 다. 가해자 교정·치료

### 1) 경찰의 역할

- 상담소 종사자인 사례11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상담권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가해자 교육 및 상담은 법적인 처벌을 받은 대상에게만 의무적으로 주어지나, 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폭력 초기 대응 단계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상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해자를 위한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함

경찰서는 출동을 해서 가정폭력 사건이다, (...) 언제 상담 받을 수 있느냐, 조사해보고 저희한테 그냥 공문만 보내는 거예요. (...)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 모시고 오면 아, 우리가 와야되는 갑다라는 위압감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거 같은... (사례11)

- 가해자 처리에 대한 상담소와 경찰의 연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경찰에 의한 가해자의 상담권유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렇게 해서 못하게 됐다, 전화상담 몇 번만 이루어지고, 전화상담으로 해서 생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했다 이제 제가 공문을 보내요. 근데 경찰 쪽에서 원하는 거는 문서화니까 보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거는 아닌 거 같다, 보여주기식이다, (질문자 :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했을 경우 예, 없어요. 막 열 명 중에 한 명 올까말까 (사례11)

## 2) 가해자의 인식 및 태도

- 상담소나 보호관찰소 종사자에 따르면 폭력 가해자들이 폭력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받는 태도가 폭력의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폭력 가해자들은 수치심이 강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교육을 마치기를 원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대체로 떳떳하고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 원인을 제공을 자기가 다 해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만 잡아간다는 거지, (...)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강명령, 법원으로부터 받고 오는데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부드럽게) 프로그램를 만들면 좋겠어요. (사례11)

가정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떳떳해. 소리 큰소리 치고 교육 받으면서 (성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은 없지만 이분들은 수치심 때문에 굉장히 그 고개 숙이고 (...) 그리고 또 성적 수치심 때문에 아, 나는 성범죄자라는 그런 거 때문에 (...) 수긍하는 태도는 좋아요. 속으로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참 이렇게 빨리 받으려고 하고 굉장히 차이가 틀려요. (...) 어디 체험도 가려고 그러면 안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혹시 아는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사례29).

### 3) 가해자 교정·치료 제도 운영의 어려움

-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하므로 평일 근무시간에는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움
-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간, 요일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수강명령이 사십시간, 가정폭력은 사십시간 (...) 부족한데 이 분들이 생계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받다보면 직장도 빠져야 되고 육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그 주말 대체 인력을 사용해도 될 거 같애요. (...)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못합니다, 밤에는 하죠, 저희가 밤에도 해요. (사례11)

- 가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으로 상담명령을 이행해

야 하는 가해자의 수도 늘어남에 따라 행정적 처리절차가 연기되는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가해자들의 불평이 있음

사건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막 늘려질 수 밖에 없는. 여기서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사건이 다 끝나서 살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불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요. 하면 사건이 일어나서 딱 그걸 종결되어서 교육을 빨리 그때 받아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럼 참 좋은데 사람하는 일이라서 이게 계속 일이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사례11)

- 가해자 사법처리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보호관찰소의 인력부족 때문으로 지적됨
- 이에 관하여 보호관찰소 실무자는 최근 수강 대상자, 특히 성폭력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상담소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고 진술함
- 주로 성폭력 가해자는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가정폭력은 지역의 전문 상담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아니면 법 조치하는 거를 빨리 해주시면 안되냐고 거기(보호관찰소)도 있잖아요,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세 명, 네 명 밖에 안돼요,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례11)

수강명령이랑 교육이라는게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이라는 건 지역에 자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상담소에. 연계해 가지고 하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력기관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 (...) 요즘에 이제 성폭력 대상자가 너무 너무 많아서 보호관찰소에서 가정폭력까지 하기는 힘들어요. (사례27).

- 특히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전문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지적함

제일 어려운게 외부강사 협조가 잘 안되요.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 외부강사들이

강의를 성폭력 대상자 강의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반응이 없잖아요. (...) 이 사람들은 일단은 올 때부터 억울함을 갖고 와. 성폭력 같은 경우는. (...) 내공이 있지 않은 사람 아니면 반응을 안해요 (사례27).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 가능하고 효율적인 교육방안 마련도 필요함
- 담당업무 종사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그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이 빠른 시간 내에 인식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교육의 기회 자체에 중요성이 있고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함

가폭은 심한경우에는 80시간. 안그러면 보통 40시간 내외로 이렇게. (...) 가정폭력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생활이 열악하고 일단 생활이 안되면(...) 그래서 40시간 이상은. 40시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아, 이렇게 교육 받으면서 물론 개선은 크게 안되겠지만 인식 변화는 생기잖아요. 못 배웠던 이 사람들이 그런 과정, 그런 기회가 전혀 없던 거예요(사례27).

-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을 상담소에 위탁하는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장단점이 있음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해자에게 강제성과 경직된 분위기를 줄 수 있고, 상담소에서 위탁 운영할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가해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기관이다보니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보호관찰소는 아무래도 경직되고 (...)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효과면에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도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 40시간도 법원에서도 바로 가족사랑상담소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강제성을 안띠면 솔직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안그래도 반발심이 많은데 법적인 강제성을 안띠면 이분들이 가서 가족상담소에 큰소리치고 지원을 못해요. (...) 상담위탁처분을 해버리면 뭐 언제까지 오라 그러면 아, 뭐 민간기관인데 (...)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딱 날 잡아서 그때 짜임새있게 탁탁탁 집행해야 되는데 ... (사례27)

- 가해자 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 담당직원이 피해자 면담을 해보면 교육 이후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음
- 그러나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해자의 경우 폭력행위를 중지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전문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받은 후에는 재범이 덜하더라고요 (...) 가정방문 가 보면 피해자들 면담을 거의 대부분 했거든요.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지 를 해 가지고 손은 안간대요. (...) 가정폭력은 음주와 연관된 행위자는 특히 중독성이 있는 행위자는 이거는 어떤 교육해서 고쳐질게 아니고 (...) 전문병원 거기 연계해 가지고 해서 꾸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사례27).

- 제주지역 성폭력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지역 적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여성폭력은 제주지역의 음주문화와 연관이 있고,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제주지역이면 제주지역만에 특히 우리 지역은 음주와 관련된 너무나 밀접해 있는데 그거 와 관련된 제주만의 독특한 가정폭력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일괄성 있게 전 지역이 다 똑같이 하잖아요. (...) 부인이 또 한명이 아니고 두명이고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제주도는 가족관계가 육지하고 정말 특이해요 (사례27).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교육대상 가해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육기반 시설 및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 ·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소규모(10명 내외)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기간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하는 규정 때문에 수십 명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므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효

## 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소규모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십명씩 해야 되요. (...) 마쳐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법적인 게 있어서 십명 넘게 이십명에서 삼십명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 벌금 명령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마쳐야 되요 (사례27).

-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성(sexuality)에 대한 인지왜곡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가해자 교육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성(sexuality)에 대한 인식개선은 어렵지만 성폭력 가해자라는 수치심 때문에 일정정도 행위에 대한 개선은 기대할 수 있음

교육 받고 후는 차이가 엄청나요.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는요. (...) 이게 상습화된 사람, 성에 관련되서 완전 인지적 왜곡이 너무 심한 사람 있잖아요. (...)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에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인식 개선이라던가 행동 개선은 많이 되요 (사례27).

- 성폭력 가해자의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성 저하 및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현재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업무는 법무부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해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음

신상정보등록업무는 법무부에서 하고, 공개제도하고 고지제도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 성폭력도 좀 해가지고 일원화되야 되는데 서로 연계, 연계되면 잘 되면 다행인데 신상정보등록업무는 우리 법무부에서 또 같은 성폭력 사범인데 두 부처에서 하는 거예요. (...) 이게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연계가 잘되면 좋은데 연계가 안되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한 거예요. (...) 한사람 성폭력 행위자를 관리하면서 법무부에서도 관리하

고 경찰에서도 관리하고 여가부에서도 관리하고요. 알게 모르게 예산도 엄청 낭비돼요 (사례27).

#### 4) 가해자 상담을 위한 협력방안

- 가해자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경찰간의 협력체계가 필요함
- 보호시설 종사자는 법적 처벌절차를 거친 가해자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과 폭력지원 시설 종사자와의 협력으로 폭력예방 효과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주장함

가해자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런 팀들이 좀 구성이 돼서, (...) 경찰들이 요즘 그거를 하거든요, 사후에 관리를 하시거든요, (...)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 저는 가해자들에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좀 많은 프로그램과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 (...) 그분들에게 좀 경찰관이 가는게 아니라 가해자 전문가가 좀 다니시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면 좋겠다 (사례21).

## 제 6 장

###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2.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 1.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가. 제주지역 여성폭력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결과 조정기구 활성화

#### 1) 제주지역 여성폭력 관련 협의체 활성화 필요

- 여성폭력 관련 협의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인권상담소 · 시설협의회,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지역의 솔루션 팀, 보호관찰소와 법원 그리고 가해자 상담을 위탁받은 상담소가 참여하는 보호관찰협의회 등이 있음
- 이러한 협의체는 피해자 보호와 위기대응, 가해자 교정 · 치료 등 부분적인 협력을 위한 협의체이고 2005년 결성하여 10년 이상 활발하게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권상담소 · 시설협의회를 제외하고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행정 공무원, 의료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는 것이 중요함

####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2008. 4.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의 핵심추진과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여성폭력관련시설, 1366, 상담소 · 보호시설, 의료기관, 경찰 · 사법기관, 아동 청소년관련 시설 등으로 구성(도, 23개시군 구성)된 기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조례」에서 협의체 구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 · 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2015. 8월 개정)
- 관련조례에 의하면 협의회 위원 23명(여성폭력기관8, 아동보호관련기관1, 의료 기관3, 교육기관1, 경찰 · 사법기관6, 자활기관1, 긴급구조1, 행정2) 으로 구성

정기적(년2회 정도) 회의 개최함을 명시하고 있음

- 지역연대의 활성화와 여성폭력 관련 기관 및 협의체 간의 협력을 위한 연계조정기구로서의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수사, 상담, 사법, 정책서비스 행정체계, 기관 등이 의부적으로, 모여 여성폭력 관련 현안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면 여성폭력 대응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 위기대응 시스템

### 1) 초기대응에서 경찰과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경찰이 여성폭력 사건 당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로 음주 및 정신 이상자를 보낼 곳이 없거나(44.2%), 한밤중에 연계할 곳이 없는 경우(30.2%)가 많아서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음주나 정신이상자의 경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원하기 어렵고 여성폭력 대응 및 예방을 위해 병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함
- 제주시내 알콜중독 치료기관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연강병원내) 한 곳 뿐이고 24시간 운영체제가 아님, 또한 경찰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음
- 폭력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를 전문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위한 도내 전문 기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위기대응 관련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의 연계체계를 재정비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함

### 2) 상담원 동행제도 내실화

- 여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 출동 할 때 상담원을 동행할 수 있는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됨.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 해야 함
-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한밤중에 많이 발생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함

- 또한 제주지역 중 읍면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이동거리가 길어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응시간을 단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3) 여성폭력 담당 경찰관의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여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44명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 책임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성폭력(44.2%), 가정폭력 59.6% 가 동의해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의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 성인지 강화 교육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구체적으로 성인지 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실제 인식개선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폭력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연계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의 협력강화

- 본 보고서의 통합시스템 욕구 조사결과 초기대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응급조치 강화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이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함
- 위기대응 관련 기관인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의 역할, 관련기관의 현황, 변화추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관간의 역할조정 및 연계와 협력이 중요함
- 경찰의 여성폭력 관련 초기대응 매뉴얼 내용은 법적인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임. 경찰의 초기대응 매뉴얼을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상담소·보호시설과 논의하고 협력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다.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간의 중복기능을 조절하고 협력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련기관끼리의 MOU 등 솔루션팀의 활성화 필요
- 경찰과 피해자 지원시설간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 2)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강화

- 보호시설 입소율 감소에 따른 원인분석 및 시설 규정 보완
  - 여성폭력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여성은 감소하고 있음
  - 보호시설 입소를 꺼리는 원인은 제주도에 맞벌이가 많고 경제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여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 보호시설 입소율 저하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으로 가해자를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 있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져서 당장 회사나 근무지에 대한 접근이 단절되거나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 중단, 자녀의 전학문제 등이 입소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현장 담당자의 의견이 있음
  - 피해자 보호와 안전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시설 내 규정 정비와 보완 및 피해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함

### 3)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분야는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13.3%)과 가족면담 및 상담(13.3%) 부분, 그리고 온라인 상담(12.5%)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 자립 정착금은 작년에 300에서 350으로 인상, 5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18세 미만 아동 지원, 등 확대할 예정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 소망하는 것은 임대아파트 입주, 피해자 자립정책 관련 제안할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우선순위를 주도록 법으로 제정했으나 실효성 없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랑 경쟁해야 하는데, 효과적 방법은 쉼터에 일정기간 입소하면 가산점을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 임대주택 배정은 LH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나 LH공사랑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이 중요함

#### 4) 서귀포 지역 여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기관 확충 필요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정병원,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고 위기대응 기관인 1366센터와 해바라기 센터도 부재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관련기관 종사자, 그리고 담당업무를 맡은 경찰까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인구는 적으나 관할지역은 넓어 읍면 지역에 거점기관 혹은 분소를 마련하거나 유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초기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하여야 함

### 라.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업무 협력 강화

#### 1) 가해자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 가해자에 대하여 교정이 쉬운 대상과 교정이 불가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
- 교정이 어렵거나 불가한 가해자는 처벌과 격리를 강화하고 교정이 가능한 대상은 교육 및 상담강화가 필요함

#### 2) 경찰중심으로 정보공유와 가해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확대방안 필요

- 특히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대상,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알콜중독

혹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소와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 및 교육 확대 방안 마련

- 기관간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소재 파악 및 신속한 검거와 체계적인 관리, 이는 피해자를 위한 지역 내 솔루션 팀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공조로 가능함
- 가정폭력 재범가정의 경우 경찰과 지원시설 간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가정방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등 방안 마련

### 3)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상담명령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보호관찰소 및 관련 기관의 인력부족으로 대상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인원확충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육 및 상담 인력 및 시설확대 방안을 마련이 필요함
- 피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보호관찰소, 경찰, 상담소간의 협력강화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차원의 지원

### 4) 피해자 상담을 위한 상담소와의 협력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격리 및 긴급임시조치 실행 제고
- 법적처벌을 받지 않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권유 및 상담소와의 정보공유

## 마. 예방교육의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 1) 예방교육의 대상교육 확대에 따른 운영 내실화

- 국가기관 및 학교 등 공공기관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국한되었던 폭력 예방교육이 2015년부터 일반도민에게로 확대되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의무교육이 아닌 일반인 대상 예방교육의 참여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

정기관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읍면동 지역의 자생단체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방교육 대상의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별, 대상별 균형잡힌 교육방안 마련
  - 의무교육 대상 기관이 아닌 찾아가는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거점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현행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대상을 골고루 할 수 없고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즉 접근이 쉬운 곳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균형있는 예방교육 기준마련이 필요함

## 2)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예방교육의 양적 평가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적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본 연구조사 결과 민간사업장이나 고등학교 등에서 강의방법, 시간, 전문강사 활용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됨
- 폭력예방교육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이를 위해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 기관 혹은 기구를 통한 전문 강사의 역량강화와 예방교육의 효과성 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 가. 가정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 1) 경찰, 112

- 신고가 접수되면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에서 사건을 접수, 일괄

### 처리함

- 피해자에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나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 및 가해자 처벌의 사에 따라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의 신청이 가능한 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확인함
- 폭력 현장 확인 시 가해자 즉각 체포 등 격리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고지함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거나 신청을 함
- 피해자가 타 기관 연계를 원하지 않거나 음주 등으로 타 기관 연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보호소에 일시 보호조치
  - ☞ 임시보호소 운영 개선 : 모텔이나 펜션 등에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경우 전문적 관리가 되지 않아 운영개선이 필요함

### 2)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24시간 응급조치 서비스 지원
- 야간에 2인1조로 상담원 대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일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하고 있음
-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과 동행, 피해자 지원,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계하고 있음
  - ☞ 폭력사건 신고 시 경찰과 1366센터 상담원 동행 협력 지원 필요

### 3) 제주 해바라기 센터

- 성폭력 · 가정폭력 지원을 위한 24시간 응급조치 서비스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상담소에 연계
  - ☞ 경찰,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간 연계 활성화
  - ☞ 상담소와 경찰의 초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실행을 위한 협력 필요함
  - ☞ 알콜 중독, 정신과 치료기관과 연계 및 협력 필요
  - ☞ 읍면 지역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규모 거점기관 설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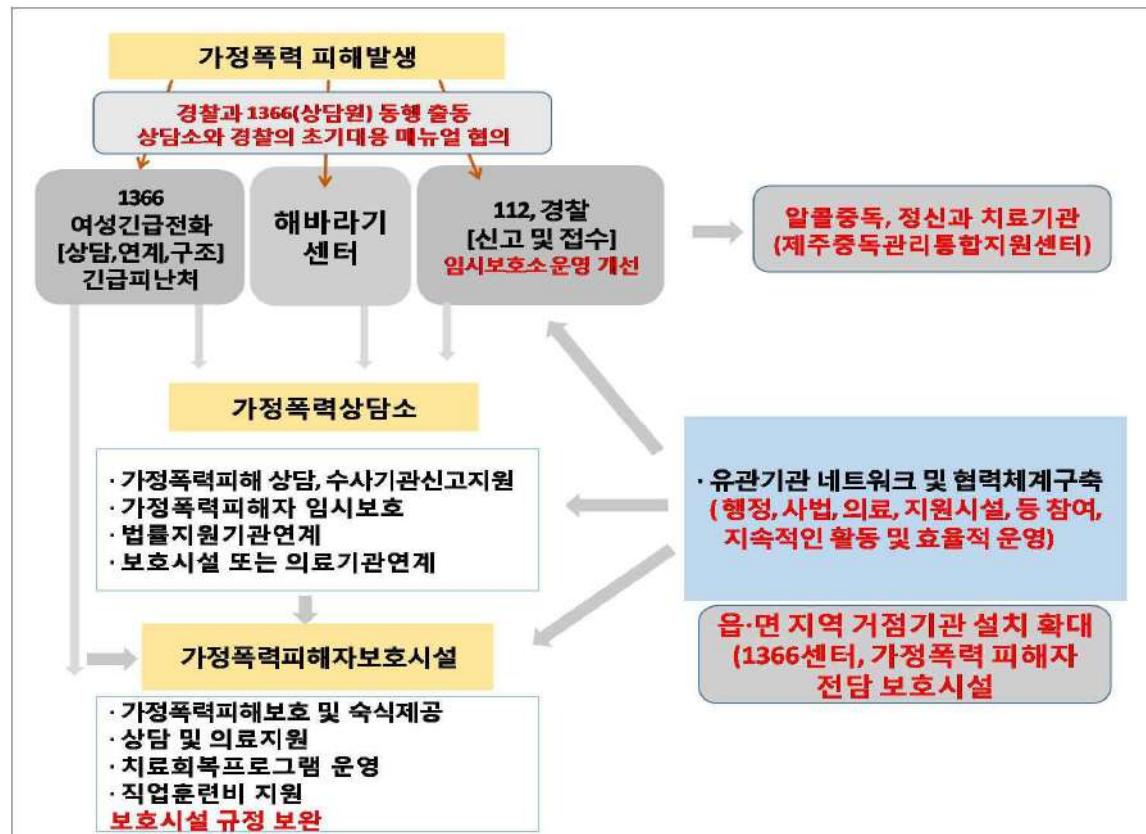
#### 4) 가정폭력 상담소

- 상담 및 보호시설, 수사기관 신고, 법률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 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및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자립·자활 프로그램 운영
  - ☞ 퇴소 시 자립지원(특히 주거지원, 임대아파트 입주 현실화) 확대 필요
  - ☞ 읍면 지역의 접근성 강화와 보호시설 홍보 강화
  - ☞ 행정, 사법, 의료, 피해자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강화
  - ☞ 위급사안 발생 시 솔루션팀 운영 효율화

<그림 6-1> 제주지역 가정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모형



## 나. 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 1) 경찰, 112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이나 112에 신고하면 제주지방경찰청이나 지역 경찰서 지구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함
- 성폭력 사건은 제주지방경찰청의 성폭력 수사대에서 전담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제주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하여 피해자 상담 및 응급처치를 의뢰함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함

### 2) 제주 해바라기센터

- 제주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 가정폭력 지원을 위한 24시간 응급조치 서비스 지원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함
- 성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상담을 거쳐 피해사실을 대한 증거 채집 및 응급치료,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원하면 여경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
-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하면 타 기관에 연계기능이 있으나 성폭력 사건은 거의 연계하고 있지 않음
  - ☞ 성폭력 피해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단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시보호 시설 설치가 필요함

### 3)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서도 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고 피해자를 상담 · 지원 및 긴급 상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타 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 ☞ 서귀포 지역 성폭력 피해자 전담병원, 산부인과 정신과 지정병원 필요

#### 4) 성폭력 상담소

-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피해자가  
갈 곳이 없을 경우 보호시설에 연계함
-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기관에 연계하여 신고 및 법률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함
  - ☞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과 통합 고려)설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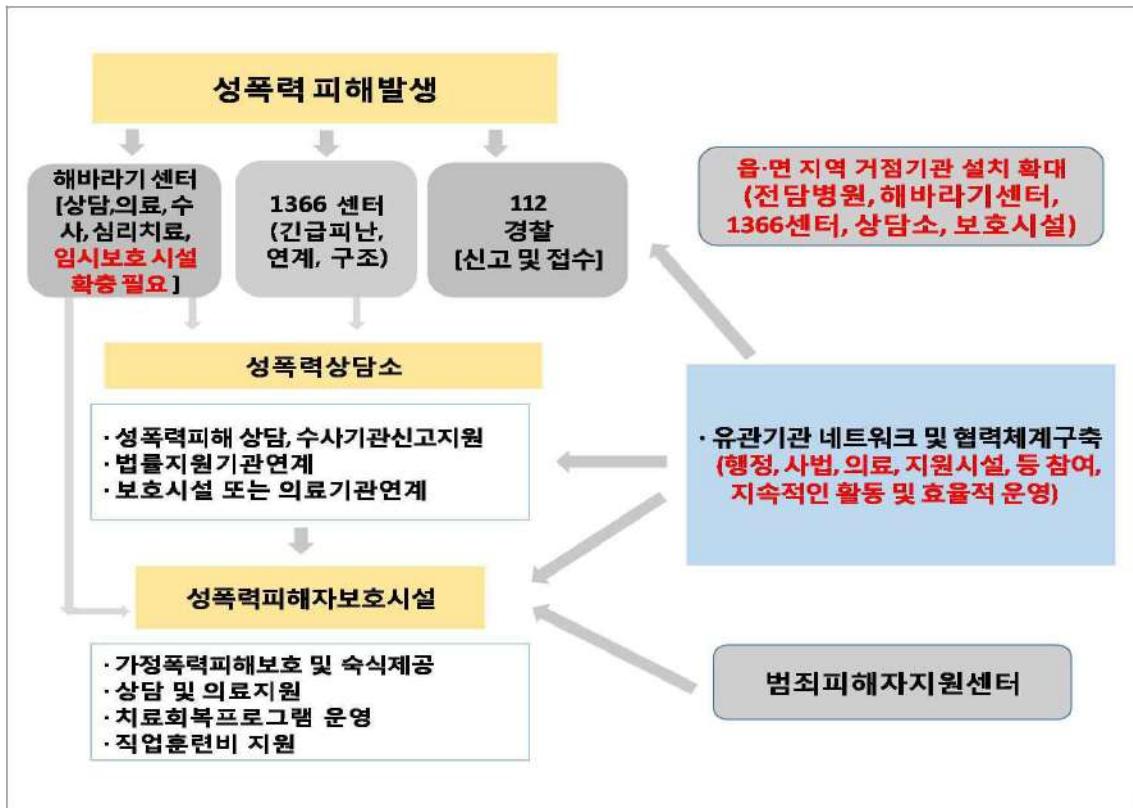
####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상담 및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퇴소 시 자활지원금 제공

#### 6)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폭력피해자 심리치료, 생활지원금 지급
  - ☞ 제주지역 스마일센터(숙식제공 보호시설) 설치 필요
  - ☞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협력 필요
  - ☞ 지역협의체(행정, 사법, 의료, 피해자지원시설 등 참여) 구축 및 운영강화  
(솔루션팀 운영 효율화 포함)

<그림 6-2> 제주지역 성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모형



#### 다. 제주지역 여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시스템

##### 1) 경찰, 112

-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 체포
- 긴급임시조치(격리) 실행
  - ☞ 법적 처벌대상이 아닌 가해자 상담 필요(경찰, 상담소, 전문가 협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상담소와 정보공유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필요

##### 2) 검찰 및 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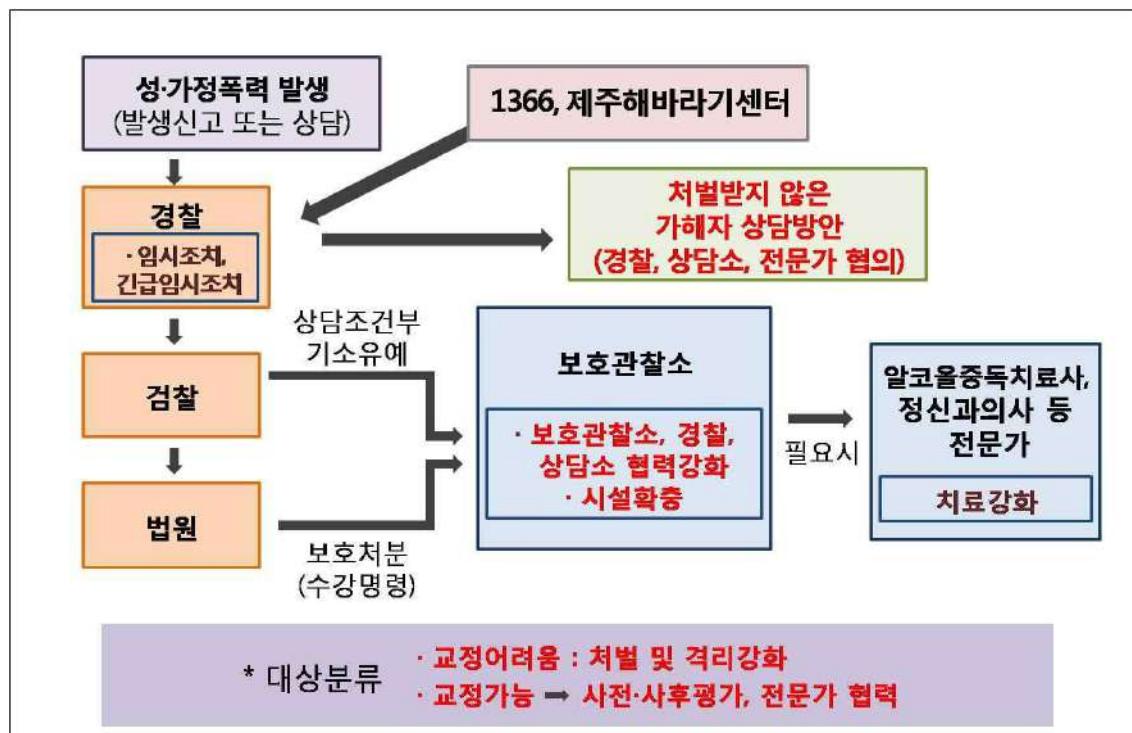
- 재범우려가 있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법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처분
- 법원의 가정보호 사건 심리 결과 상담위탁 처분
  - ☞ 대상별 관리 및 교정 방안 마련 필요
    -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정이 어려운 대상과 교정이 가능한 대상 분류
    - 교정이 어려운 대상은 처벌 및 격리 강화, 교정이 가능한 대상은 체계적인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확대

### 3) 보호관찰소

- 성폭력加害者 : 강사 초빙하여 교육
- 가정폭력加害者 : 상담소에 대부분 위탁 교육
  - ☞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시설 및 전문 강사 확충
  - ☞ 경찰, 상담소,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 협력강화
  - ☞ 알콜중독, 정신과 치료 연계 강화

<그림 6-3> 가해자 교정치료 시스템



## 참고문헌

- 고민조. "영국 성폭력사범 위험성 관리체제" 「형사정책연구소식」 98호. 2006. 11/12월호. p. 50-54.
- 검찰청 범죄분석(2014).
- 경찰 통계연보 (2013).
- 김승권외. 2002. 「가정폭력 · 성폭력 관련 상담소 · 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걸. 2010.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범죄자 등록, 고지,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 27권 4호. p. 99 - 119..
- 서해정. 2011.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15.
- 심영희. 2004. "성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미국과 호주의 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젠더와 사회』 2&3호. p73-106.
- 양현아. 2006.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정법연구 20 권 1호. p. 145.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 여성가족부(2013).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여성가족부(2015) 여성 · 아동 권리증진지침.
- 이성은. 2011. 『여성폭력예방지원체계 해외 정책동향 리포트: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여성가족재단.
- 이연화 홍연숙. 201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
- 이인숙. 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위기개입 서비스 연계망 모형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진 홍연숙. 201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실태조사: 성폭력실태」
- 여성가족부. 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장미혜 외. 2014.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희숙 외. 2010. 가정폭력加害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조건부 기초유예의 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제주여성인권상담소 · 시설협의회. 2014. "10주년 자료집" 「땀과 열정」

제주지방검찰청 내부자료.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내부자료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15.

제주여성인권상담소 · 시설협의회. 2014. 「땀과 열정」 . 제주여성인권상담소 · 시설협의회

10주년 기념 자료집.

제주여성인권상담소 · 시설협의회. 2015.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연구소. 1999. 『새여성학강의』 . 서울: 동녘

## 부록1.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 대응 시스템 욕구조사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 대응 시스템 욕구조사	ID				
안녕하십니까?						
<p>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p> <p>저희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여성폭력 관련 통합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귀하가 주시는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제주 여성·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p>						
<p><u>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집계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이라 는 식으로 통계처리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u></p>						
2015. 6.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혼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조사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이화진(064-710-4974, [howajin@hanmail.net](mailto:howajin@hanmail.net))

(Fax 064-710-4979)

※ 다음은 귀하의 개인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SQ1) 구분	<input type="checkbox"/> ① 폭력 피해자	<input type="checkbox"/> ② 기관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③ 경찰	<input type="checkbox"/> ④ 폭력 행위자
SQ2)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여성 <input type="checkbox"/> ② 남성			
SQ3) 연령	만 _____ 세			

※ 다음은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대응 시스템 방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성·가정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경찰의 피해자와加害자의 분리 및 수사착수
- ②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응급조치 강화
- ③ 피해자에게 상담소·보호시설 등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
- ④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⑤ 경찰의 신속한 출동
- ⑥ 기타 (\_\_\_\_\_)

2. 귀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 ① 여성폭력에 관한 경찰의 대응 강화
- ② 전담 의료기관의 확충
- ③ 여성폭력 통합 상담기관의 확대 설치
- ④ 피해자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 ⑤ 기관 간 협의체 구성과 효율적 운영
- ⑥ 여성폭력 서비스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결
- ⑦ 기타 (\_\_\_\_\_)

3. 귀하는 여성폭력 지원체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의료, 수사, 법률, 분야 종사자들의 여성폭력 이해증진
- ②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증진
- ③ 여성폭력 등 상담소 및 쉼터의 연계 활성화
- ④ 기관의 중복기능 개선과 특성화된 전문적 서비스
- ⑤ 기타 (\_\_\_\_\_)

4. 여성폭력 관련 정책 중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미흡
- ② 여성폭력 관련법에 근거한 정책반영 미흡
- ③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 ④ 여성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
- ⑤ 여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부족

- ⑥ 홍보부족으로 인한 도민의 정책인지도 부족  
⑦ 기타 (\_\_\_\_\_)

**5.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거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① 우울, 불안, 수면문제 등 심리적 어려움      ② 가족 및 주변사람과의 관계유지 어려움  
③ 신체적 상처치료의 어려움      ④ 경찰의 초기대응과 수사단계에서의 어려움  
⑤ 소송과정(검찰, 법원)에서의 어려움      ⑥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⑦ 기타 (\_\_\_\_\_)

**6.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상담 전문 인력 확충      ②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③ 의료/수사/법률 분야와의 연계 강화      ④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⑤ 내담자(거주자)의 욕구반영      ⑥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  
⑦ 지역사회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⑧ 시설의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⑨ 기타 (\_\_\_\_\_)

**7. 귀하는 제주지역의 다음과 같은 여성폭력 관련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위험	조금 위험	안전	매우 안전
1)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가정폭력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성매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귀하는 여성폭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인 정책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성·가정폭력 전담 경찰제의 마련과 효율적 운영  
②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 팀 마련과 운영의 활성화  
③ 가해자의 격리 및 임시 거처 마련

- ④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 ⑤ 상담소 등 공공서비스 흥보 강화
- ⑥ 폭력 신고 시 경찰과 상담원 동행제도 실행
- ⑦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 강화
- ⑧加害자 처벌 및 상담 의무화
- ⑨ 기타(\_\_\_\_\_)

#### 9. 귀하는 폭력 차단을 위한 지역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찰과 자동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 ② 지역 내 우범지대 CCTV 설치
- ③ 가로등 설치 증대
- ④ 무인택배 시스템 설치
- ⑤ 지역 내 공동 방범 활동 강화
- ⑥ 기타 (\_\_\_\_\_)

#### 10. 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조례 정비
- ② 다양한 통로의 주민참여 및 유대강화
- ③ 지역사회 위험요소 파악 및 시설보완
- ④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 ⑤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⑥ 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 ⑦ 예방교육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
- ⑧ 기타 (\_\_\_\_\_)

##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1.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상담기관 □②보호시설 □③센터(1366, 해바라기 등) □④기타(구체적으로: )

## 2. 현 직장에서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기관장 또는 시설장       ② 중간관리자(사무국장, 총무, 과장)  
 ③ 상담원(사회복지사)       ④ 기타(구체적으로: )

3. 귀 시설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외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해 주십시오

여성긴급전화 1366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잘 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잘 되지 않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② 잘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되고 있지 않음
여성폭력 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잘 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잘 되지 않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② 잘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되고 있지 않음
여성폭력 상담소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잘 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잘 되지 않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② 잘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되고 있지 않음
해바라기 센터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잘 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잘 되지 않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② 잘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되고 있지 않음
수사 · 법률기관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잘 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잘 되지 않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② 잘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되고 있지 않음
전담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잘 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잘 되지 않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② 잘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되고 있지 않음
행정기관(읍면동,시 도)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잘 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잘 되지 않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② 잘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되고 있지 않음

4. 다음은 귀 시설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공적기관(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1366, 해비리기센터, 쉼터, 상담소 등)	민간기관(법률, 의료, 심리 등 귀 시설과 네트워크가 형성된 기관)
----	---	---------------------------------------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1) 연계는 실무자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유지된다				
2) 연계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나 간담회가 있다				
3) 연계기관에 대한 책자나 정보를 비치해 놓고 있다				
4)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바로 연계할 수 있다				

5. 다음은 귀 시설이 외부기관과의 연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다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렇다
1)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나 지원이 부족하다				
2)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해 줄 조정체계가 부족하다				
3) 연계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방법이 부족하다				
4) 연계기관과의 합의가 부족하다				
5) 연계를 위한 소속기관의 예산이 부족하다				
6) 연계를 위한 소속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				
7) 소속기관의 의지 및 노력이 부족하다				
8) 기관 특성상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렵다				
9) 폭력피해여성을 위해 연계할 기관이 부족하다				
10) 연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굳이 연계할 필요가 없다				
11) 연계기관이 여성폭력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어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12) 연계기관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13) 연계기관의 가정(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14) 연계기관의 지원이 형식적인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15) 기타(_____)				

6. 귀 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여부와 지난 1년간 서비스 제공 건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한 사례에 대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신 경우에는 내용별로 건수를 중복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서비스 제공여부		□③ 서비스 제공 건수
	□① 있음	□② 없음	
1) 심리상담(개인)			_____건
2) 가족상담			_____건
3) 집단상담			_____건
4) 법률상담 및 지원			_____건
5) 수사기관 신고(고소, 고발)			_____건
6) 수사동행			_____건
7) 전담의료기관 안내			_____건
8) 다른 시설이나 기관 연계(의뢰)			_____건
9) 취업 및 직업 교육훈련			_____건
10) 생계보호 및 자활지원			_____건
11) 복지관이나 자활 등 복지서비스 연계			_____건
12)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_____건
13) 폭력대처교육			_____건
14) 양성평등교육			_____건
15) 사후관리			_____건
16) 기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_____건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폭력 피해자

1. 귀하께서는 성·가정폭력을 당한 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1) 경찰	<input type="checkbox"/> ①	☞ 문 2번으로 이동	<input type="checkbox"/> ②
2) 가족이나 친구	<input type="checkbox"/> ①	☞ 문 11번으로 이동	<input type="checkbox"/> ②
3) 여성긴급전화 ☎1366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4) 성폭력상담소 혹은 쉼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5) 해바라기센터(원스톱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①	☞ 문 8번으로 이동	<input type="checkbox"/> ②
6) 성매매 피해자 쉼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7) 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8) 아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 ## 2. 누가 신고하였습니까?

### 2-1. 언제 신고하였습니까?

① 피해 후 즉시(1일 이내)       ② 피해 얼마 후 (      일/주/개월/년)

#### 2-2.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①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② 직접 방문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다
  - ③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 ④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이 해결되었다
  - ⑤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다.
  - ⑥ 기타(\_\_\_\_\_)

☞ 문 2-4번으로 이동

☞ 문 2-3번으로 이동

☞ 문 2-4번으로 이동

2-3. 경찰에 신고 이후 사건처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가족해체를 원하지 않아서 | <input type="checkbox"/> ②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 <input type="checkbox"/> ③ 가해자와 화해했기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④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
| <input type="checkbox"/> 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

24.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로 불편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불편을 느낀적이 없다  
☞ 문 4번으로 이동
- ③ 질문에 불쾌감을 느꼈다  
☞ 문 3번으로 이동
- ⑤ 기타(\_\_\_\_\_) ☞ 문 4번으로 이동
- ② 조사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  
☞ 문 4번으로 이동
- ④ 경찰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했다  
☞ 문 4번으로 이동

### 3. 불쾌감을 느꼈던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_\_\_\_\_ )

### 4. 수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① 가해자가 처벌받았다  
☞ 문 6번으로 이동
- ③ 무고죄로 억고소 당했다  
☞ 문 6번으로 이동
- ⑤ 기타 (\_\_\_\_\_) ☞ 문 6번으로 이동
- ② 고소를 취하하였다  
☞ 문 5번으로 이동
- ④ 증거 불충분으로 폭력이 입증되지 않았다  
☞ 문 6번으로 이동

### 5.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해자와의 합의  
 ③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⑤ 가해자의 협박  
 ⑦ 수사과정이 힘들어서  
 ② 피해 입증의 어려움  
 ④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⑥ 경찰의 합의 권유  
 ⑧ 기타 (\_\_\_\_\_)

### 6.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하였다 ☞ 문 7번으로 이동
- ③ 만족한 편이다 ☞ 문 8번으로 이동
- ② 다소 불만족하였다 ☞ 문 7번으로 이동
- ④ 매우 만족하였다 ☞ 문 8번으로 이동

### 7.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

### 8. 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긴급보호나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③ 긴급현장 출동 및 이송  
 ⑤ 법률기관 연결(무료법률구조공단)  
 ② 경찰에 연결(경찰수사 관련)  
 ④ 전문상담기관 연결  
 ⑥ 의료기관 연결(응급치료, 법적증거확보)

⑦ 상담 및 심리지원

⑧ 기타 (\_\_\_\_\_)

#### 8-1. 관련기관의 조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대체로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 9. 귀하가 공공 서비스 시설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TV/라디오 공익광고

② 친구, 친지 등

③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

④ 여성단체 소식지

⑤ 버스/택시 광고

⑥ 구청 소식지

⑦ 인터넷 등 통신매체(SNS포함)

⑧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교육

⑨ 기타 (\_\_\_\_\_)

#### 10. 귀하는 폭력 피해 이후 처음 이용한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연계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11 번으로 이동

② 없다 ☞ 문 10-1 번으로 이동

#### 10-1. 기관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개를 받은 기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② 집을 떠나는 것이 불편해서

③ 해당 기관에서 불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④ 주위의 시선 때문에

⑤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⑥ 연계기관을 소개 받지 못했기 때문에

⑦ 기타 (\_\_\_\_\_)

#### 11. 귀하가 공공서비스 시설에서 도움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시설유형	서비스 내용		
1366 긴급전화	<input type="checkbox"/> ① 긴급보호나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input type="checkbox"/> ② 경찰에 연결 (경찰수사 관련)	<input type="checkbox"/> ③ 긴급현장 출동 및 이송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상담기관 연결	<input type="checkbox"/> ⑤ 법률기관 연결 (무료법률구조공단)	<input type="checkbox"/> ⑥ 의료기관 연결 (응급치료, 법적증거확보)
	<input type="checkbox"/> ⑦ 전화상담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_____)	
해바라기 센터	<input type="checkbox"/> ① 긴급보호나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input type="checkbox"/> ② 경찰에 연결 (경찰수사 관련)	<input type="checkbox"/> ③ 긴급현장 출동 및 이송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상담기관 연결	<input type="checkbox"/> ⑤ 법률기관 연결	<input type="checkbox"/> ⑥ 의료기관 연결

		(무료법률구조공단)	(응급치료, 법적증거확보)
	<input type="checkbox"/> ⑦ 전화상담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_____)	
상담소 혹은 쉼터	<input type="checkbox"/> ① 긴급보호나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input type="checkbox"/> ② 경찰에 연결 (경찰수사 관련)	<input type="checkbox"/> ③ 긴급현장 출동 및 이송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상담기관 연결	<input type="checkbox"/> ⑤ 법률기관 연결 (무료법률구조공단)	<input type="checkbox"/> ⑥ 의료기관 연결 (응급치료, 법적증거확보)
	<input type="checkbox"/> ⑦ 전화상담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_____)	

12. 다음은 여성폭력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의 인지나 경험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인지여부		이용경험	
	모른다	안다	없다	있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2) 상담소				
3) 해바라기 센터(원스톱 지원센터)				
4) 피해자 보호시설				
5) 무료법률구조				
6)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의료비 지원, 진단서 발급 등)				

13. 다음은 현재 폭력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의 인지나 경험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이용 경험		만족도			도움정도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거의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1) 온라인 상담										
2) 전화상담										
3) 대면상담										
4) 심리치료										
5) 집단상담 프로그램										
6) 법률상담, 지원, 연계										
7) 수사 동행 서비스										
8)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소개를										

통한 치료									
9) 폭력 대비 교육									
10) 피해자간 소모임 혹은 집단 활동									
11)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소개									
12) 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 등									
13) 가족면담 및 가족상담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성가정폭력 담당 경찰

1. 지난 1개월 동안 귀하께서 담당하신 여성폭력 사건은 총 몇 건입니까?

성폭력 \_\_\_\_\_건,

가정폭력 \_\_\_\_\_건

2. 다음은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가장 많이 다루신 유형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부폭력(동거폭력)     ② 아동학대

③ 노인학대

④ 기타  
(\_\_\_\_\_)

3. 지난 한 달 동안 성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신 후 체포로 이어진 사건 수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① 없다

② 3건 미만

③ 3건~4건

④ 5건 이상

4. 다음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렇다
1) 성폭력 사건은 까다롭다				
2) 성폭력 사건은 부담스럽다				
3)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 지 않다				
4) 성폭력 사건은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5)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6) 성폭력 사건은 법적 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다				
7)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한다				

5. 다음은 부부폭력(동거폭력)사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	-------------------------------	--------------------------------	-------------------------------	-------------------------------

	그렇지 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1) 부부폭력 사건은 까다롭다				
2) 부부폭력 사건은 부담스럽다				
3) 부부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4) 부부폭력 사건은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5) 부부폭력 사건은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6) 부부폭력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다				
7) 부부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한다				
8) 부부폭력 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6. 귀하께서 성·부부(동거)폭력 사건접수 후 출동하셨을 때 현장에서 느낀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가해자의 완강한 거부 및 조사 비협조       ②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의 어려움  
 ③ 피해자 보호 및 안전조치       ④ 성가정폭력 관련 지역사회 기관 연락 및 협조의 어려움  
 ⑤ 피해자의 입장 변화 및 조사 비협조       ⑥ 여성폭력 전문지식의 부족  
 ⑦ 기타 (\_\_\_\_\_)

7. 귀하께서는 부부(동거)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② 잘 알고 있으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④ 알고 있지 못하다

8. 귀하께서는 부부(동거)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② 잘 알고 있으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④ 알고 있지 못하다

9. 귀하께서는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 귀하는 제주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타 기관 연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되고 있다     ② 잘 되는 편이다     ③ 잘 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되지 않고 있다

11. 여성폭력 사건 대응 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한밤중에 연계할 곳이 없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위치 및 연락처를 몰라서 |
| <input type="checkbox"/> ③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실적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④ 음주 및 정신이상자의 경우 보낼 곳이 없어서 |
| <input type="checkbox"/> ⑤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불친절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⑥ 피해자가 연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_____ )       |   |

12. 귀하께서는 성·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12-1 번으로 이동

12-1. 아니라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사건의 경미함으로 불필요 | <input type="checkbox"/> ② 조사의 용이성을 위해  |
| <input type="checkbox"/> ③ 장소의 부족        |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 _____ ) |

13. 성 · 가정폭력 관련 사건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귀하께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가정폭력 사건 해결을 돋는 외부 전문가의 활용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 <input type="checkbox"/> ② 성·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
| <input type="checkbox"/> ③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                 | <input type="checkbox"/> ④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
| <input type="checkbox"/> ⑤ 경찰의 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명령 의무화                  | <input type="checkbox"/> ⑥ 전담 경찰관 인력의 증원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_____ )                             |   |

**폭력 행위자**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udy, please contact Dr. John Smith at (555) 123-4567 or via email at [john.smith@researchinstitute.org](mailto:john.smith@researchinstitute.org).

1.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법원의 위탁       ② 검찰의뢰  
 ③ 상담소 권유       ④ 경찰 권유  
 ⑤ 배우자 외 가족 권유       ⑥ 기타 (\_\_\_\_\_)

## 2 참여하신 프로그램은 수료하셨습니까?

- ① 종결(수료)       ② 진행 중       ③ 중도탈락

3. 귀하께서는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수하셨습니까?

#### 4. 프로그램 참가 후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좋아짐	<input type="checkbox"/> ② 다소 좋아짐	<input type="checkbox"/> ③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다소 나빠짐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나빠짐
☞ 문 6번으로 이동		☞ 문 7번으로 이동		

5. 귀하께서 참여한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방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음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음       ③ 별로 도움 안됨       ④ 전혀 도움 안됨

6. 귀하께서 프로그램 참가 후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① 표정이나 말 등 언어표현       ② 폭력적 행위가 감소  
 ③ 생활습관       ④ 자녀에 대한 태도  
 ⑤ 기타 (\_\_\_\_\_)

7. 프로그램 참가 후 행동변화가 없거나 나빠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의 노력 부족       ② 배우자의 노력 부족  
 ③ 교육효과 없음       ④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였음  
 ⑤ 기타 ( \_\_\_\_\_ )

8. 프로그램 참가 후 귀하의 폭력적 행위를 고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셨다고 생각하

- ① 매우 많이 노력하였음       ② 노력하는 편  
 ③ 예전과 같음       ④ 별로 노력 안함  
 ⑤ 전혀 노력 안함

십니까?

9. 프로그램 참가 후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전혀 폭력 안함       ② 폭력이 감소했음  
 ③ 예전과 같음       ④ 예전보다 더 폭력이 심함

10. 귀하께서 참여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① 개별상담       ② 집단상담       ③ 부부상담       ④ 기타 (\_\_\_\_\_)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 인식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제주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폭력예방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집계되어, '제주도민 %의견...'이라는 식으로 통계처리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5. 7.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 <조사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 이화진(064-710-4974, [howajin@hanmail.net](mailto:howajin@hanmail.net))  
(Fax 064-710-4979)

### \* 다음은 개인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SQ 1) 소속	<input type="checkbox"/> ① 초등학생 <input type="checkbox"/> ② 중학생 <input type="checkbox"/> ③ 교직원 및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_____)		
SQ 2)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SQ 3) 연령	_____ 세

### \* 다음은 폭력예방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폭력예방교육이란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폭력 예방교육의 의무대상 기관은 연 1회 1시간 이상(총 4시간) 시행해야 하며 통합교육시에는 각 교육의 합계가 최소 4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공공기관 통합예방교육 운영지침).

#### 1) 귀하가 받은 폭력예방교육은 년간 몇 회 입니까?

-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 ※ 2번 문항부터는 뒷장에 있습니다

#### 2) 귀하가 수강한 폭력예방교육 방식은 무엇 이었습니까?

- ①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기정폭력 예방교육  
각각 따로 수강함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함께 수강함
- ③ 세가지 예방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수강함
-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수강함
- ⑤ 기타 (\_\_\_\_\_)

3) 폭력예방교육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 ① 매우 어려웠다    ② 약간 어려웠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쉬웠다    ⑤ 매우 쉬웠다

4) 폭력예방교육이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본 폭력예방교육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세 가지만 고르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폭력의 원인                          ② 폭력의 유형 및 실태                          ③ 폭력의 개인적사회적 영향                          ④ 폭력의 후유증  
 ⑤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⑥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                          ⑦ 폭력관련법                                  ⑧ 인식변화  
 ⑨ 폭력과 소통관계                                  ⑩ 기타(\_\_\_\_\_)

6) 폭력예방교육은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영상 시청 위주                          ② 강의 위주                                  ③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의  
 ④ 역할극    ⑤ 토론 및 문답식 강의                          ⑥ 기타 (\_\_\_\_\_)

7) 폭력예방교육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규모 집합식 교육                          ② 소규모 토론식 교육                          ③ 강사와 교육생의 일대일 교육

※ 다음은 폭력예방교육 수강 이후 귀하의 생각 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그렇다	아니다
8) 어떤 사람이 성폭력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다		
9) 가정폭력은 타인에게 알려 해결하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보호받아야하는 범죄이다		
11) 성매매는 불법이자 인권침해이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 인식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폭력예방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집계되어, '제주도민 %의견...'이라는 식으로 통계처리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5. 7.

(재)제주여성기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 <조사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 이화진(064-710-4974, [howajin@hanmail.net](mailto:howajin@hanmail.net))

(Fax 064-710-4979)

### 중·고등학생용

#### ※ 다음은 개인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SQ 1) 소속	<input type="checkbox"/> ① 초등학생 <input type="checkbox"/> ② 중·고등학생 <input type="checkbox"/> ③ 교직원 및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_____)		
SQ 2)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SQ 3) 연령	_____ 세

#### ※ 다음은 폭력예방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 1) 폭력예방교육을 1년에 몇 번 받았나요?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 ※ 2번 문항부터는 뒷장에 있습니다

##### 2) 여러분이 받은 폭력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①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기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따로 수강함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함께 수강함
  - ③ 세가지 예방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수강함
  -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수강함
  - ⑤ 기타 ( \_\_\_\_\_ )

3) 폭력예방교육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 ① 매우 어려웠다      ② 약간 어려웠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쉬웠다      ⑤ 매우 쉬웠다

4) 폭력예방교육이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본 성폭력예방교육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순위 ( )

## 2순위 ( )

- |             |          |           |
|-------------|----------|-----------|
| ① 남녀의 생식구조  | ② 임신과 출산 | ③ 성병과 에이즈 |
| ④ 성폭력 예방 방법 | ⑤ 피임방법   | ⑥ 이성교제    |
| ⑦ 남녀의 성역할   | ⑧ 인간존중   |           |

6) 성폭력예방교육은 어느 시간에 실시되었습니까?

- ① 정규 성교육 시간      ② 수업 시간 중에 실시했음      ③ CA(개발활동시간)  
④ HR(자치활동시간)      ⑤ 외부강사를 통한 특강      ⑥ 기타 (\_\_\_\_\_)

7) 성폭력예방교육 시간은 한 회당 어느 정도 실시되었습니까?

- ① 20분                          ② 40분                          ③ 60분  
④ 1시간 30분                ⑤ 2시간                          ⑥ 기타 (\_\_\_\_\_)

8) 폭력예방교육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았습니까?

- ① 동영상 시청 위치      ② 강사의 강의 위치      ③ 역할극  
④ 묻고 답하는 강의      ⑤ 소집단 토론      ⑥ 기타 (\_\_\_\_\_)

9) 폭력예방교육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                   |                  |
|-------------------|------------------|
| ① 100명 이상의 집합교육   | ② 20명 내외의 소집단 교육 |
| ③ 선생님과 학생의 일대일 교육 | ④ 기타 (_____)     |

※ 다음은 폭력예방교육 수강 이후 귀하의 생각 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그렇다	아니다
10) 수업시간에 성차별적이거나 여성 비하적인 말을 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11) 아내구타는 사적인 가정문제이지 법적인 죄는 아니다		
12) 남자는 성욕을 참을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다		
13) 의사소통을 잘하면 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 인식조사

ID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학교 성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연구 이외의 다른 일에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평소 생각하고 느낀대로 솔직하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1. 질문 내용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시하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질문하세요
2.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며 보여주어서도 안됩니다.

2015. 7.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조사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 이화진(064-710-4974, [howajin@hanmail.net](mailto:howajin@hanmail.net))  
(Fax 064-710-4979)

초등학생용

※ 다음은 개인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SQ 1) 소속	<input type="checkbox"/> ① 초등학생 <input type="checkbox"/> ② 중고등학생 <input type="checkbox"/> ③ 교직원 및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_____)		
SQ 2)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SQ 3) 연령	_____ 세

※ 다음은 폭력예방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성교육은 1년에 몇 번 받았나요?

-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 2번 문항부터는 뒷장에 있습니다

2) 그 동안 받은 성교육은 어땠나요?

- ① 매우 좋음      ② 조금 좋음      ③ 보통      ④ 약간 나쁨      ⑤ 매우 나쁨

3) 성교육내용 중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가장 좋았던 점 ( )      두 번째로 좋았던 점 ( )

- |                 |                    |
|-----------------|--------------------|
| ① 남자와 여자의 몸     | ② 임신·출산            |
| ③ 성폭력 예방법       | ④ 이성교제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
| ⑤ 성폭력에 잘 대응한 사례 | ⑥ 서로 존중하는 법        |

4) 성교육은 어느 시간에 받았나요?

- |              |              |
|--------------|--------------|
| ① 수업시간       | ② 시간을 따로 정해서 |
| ③ 체육시간       | ④ 특별활동 시간    |
| ⑤ 기타 (_____) |              |

5) 성교육 수업 시간을 어느 정도였나요?

- |           |       |              |
|-----------|-------|--------------|
| ① 20분     | ② 40분 | ③ 60분        |
| ④ 1시간 30분 | ⑤ 2시간 | ⑥ 기타 (_____) |

6) 성폭력예방교육은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았나요?

- |                            |                  |       |
|----------------------------|------------------|-------|
| ① 동영상을 시청하고 설명해 주는 방법      | ②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방법 | ③ 역할극 |
| ④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선생님과 대화하는 방법 | ⑤ 기타 (_____)     |       |

7) 성폭력예방교육의 학생 수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 |                        |                      |
|------------------------|----------------------|
| ① 여러 반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교육 | ② 20명 정도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 |
| ③ 선생님과 학생의 일대일 교육      | ④ 기타 (_____)         |

※ 다음은 폭력예방교육을 받은 후의 생각 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구분별로 답해주십시오)

내 용	그렇다	아니다
8) 친한 사람이 내 몸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싫어도 가만히 있다		
9) 장난으로 이성의 몸을 만지거나 껴안는 것은 괜찮다		
10) 어른의 말을 안 듣거나 잘못하면 맞을 수 있다		
11) 내가 좋아도 친구가 싫다고 하면 그 행동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